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2012.09.

문화체육관광부

❖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3

 2. 연구 목적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3

 2. 연구 방법3

❖ 제2장 「예술인 복지법」 시행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7

제1절 조사 개요 9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0

 1. 응답자 속성10

 2.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12

 3.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식 및 평가15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인식 및 기대17

 5. 예술인 DB 시스템에 대한 의견32

❖ 제3장 예술인 범위 및 기준(안) 37

제1절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범위 39

 1.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39

 2.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40

제2절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 43

 1.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정의43

 2.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46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63

제1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방안 65

1. 미션과 비전의 설정 66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적 성격 및 기능 69

제2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 74

1. 주요 사업 74

2.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124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절차 및 정관·규정의 제정 137

제3절 운영 예산 및 자원 조달 방안 146

1. 중장기 운영 방향 및 로드맵 146

2. 재정 소요 추계 150

3. 자원 조달 방안 156

제5장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157

제1절 예술인 DB 시스템 개요 159

제2절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구성 및 운영 체계 161

1. 예술 활동 증명의 신청 절차 161

2.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의 구성 체계 163

3. 제출 자료 167

4. 타시스템 연계 운영 방안 168

5. 활용 방안 171

제3절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체계 173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특징 173

2. 추진 체계 174

3. 구성 체계 175

4. 타시스템 연계 운영 방안 176

5. 활용 방안 180

제4절 예술인 DB 시스템 추진 계획 182



❖ 제6장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185
제1절 「예술인 복지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분석	187
1.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경과 및 내용 체계	187
2. 「예술인 복지법」의 하위 법령 위임 조항 분석	188
제2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191
제3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192
❖ 제7장 결론 및 전망	197
❖ 참고문헌	201
❖ 부록	203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안)	205
2. 「예술인복지법」 시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214

〈표 1-1〉 연구 자문회의 추진 일정	4
〈표 2-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문항	9
〈표 2-2〉 응답자 속성	11
〈표 2-3〉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의견	12
〈표 2-4〉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중요도(5점 척도)	13
〈표 2-5〉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시급성(5점 척도)	14
〈표 2-6〉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지도	15
〈표 2-7〉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의견	16
〈표 2-8〉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	17
〈표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5점 척도)	18
〈표 2-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5점 척도)	19
〈표 2-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기대	24
〈표 2-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원 마련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25
〈표 2-13〉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33
〈표 2-1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이용 여부	34
〈표 2-1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입력사항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34
〈표 2-16〉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활용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35
〈표 3-1〉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을 활용한 예술인 직업 예시	42
〈표 3-2〉 예술인의 소득 분류(예시)	48
〈표 3-3〉 국세청의 업종코드에 따른 예술 단체	51
〈표 3-4〉 국세청의 업종코드에 따른 자영예술가의 분류	52
〈표 4-1〉 미션을 만들기 위한 사전 질문 예시(아름다운재단)	68
〈표 4-2〉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69
〈표 4-3〉 특수법인의 특성 개관	70
〈표 4-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사기관 현황	71
〈표 4-5〉 「예술인 복지법」 제4장 제10조(재단의 사업)	75
〈표 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77
〈표 4-7〉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개요	77



<표 4-8> 산재보험료 지원 방안(예시)80

<표 4-9>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에 따른 정책 수단의 구체화85

<표 4-1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진행 프로그램86

<표 4-11>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89

<표 4-12>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 현황92

<표 4-13> 한국영화인복지재단 생계보조금 지원 내역93

<표 4-14> ‘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 개요(안)95

<표 4-15> 금고 운영 사례1-영화진흥금고100

<표 4-16> 금고 운영 사례2-언론인금고101

<표 4-17> 금고 운영 사례3-한국출판금고(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101

<표 4-18> 「영화진흥법」 영화진흥금고 설치 및 재원 조성 조항104

<표 4-19> 금고운영기구 업무(안)105

<표 4-20>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구립 대학로 어린이집 운영 사례115

<표 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세제 혜택118

<표 4-22>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 현황122

<표 4-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일람129

<표 4-24> 세부사업의 배치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서 편제131

<표 4-25> 「예술인 복지법」 제9조(정관)138

<표 4-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규정 목록(안)145

<표 4-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단계별 추진(안)149

<표 4-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비 추계150

<표 4-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사업비 추계152

<표 4-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직접사업비 추계153

<표 4-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현황(2012년)153

<표 4-3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경상비 추계155

<표 4-3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재정 소요 추계156

<표 5-1>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관련 3단 비교159

<표 5-2> 예술활동증명시스템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비교160

<표 5-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별표1>의 예술 활동 증명 기준별 승인 방법163

<표 5-4> 예술장르별 세부 직종 분류164

〈표 5-5〉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의 예술 활동 실적 정보 입력 형식	165
〈표 5-6〉 저작물의 종류	166
〈표 5-7〉 저작인접물의 종류	166
〈표 5-8〉 분야별 증빙 자료 예시	167
〈표 5-9〉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 증빙 보관 자료의 형태	168
〈표 5-10〉 저작권 정보 DB의 내용	170
〈표 5-11〉 국립기관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DB	174
〈표 5-12〉 공립기관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DB	174
〈표 5-13〉 문화예술분야 인력 취업경로 비교	181
〈표 5-14〉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 증빙 용도	182
〈표 5-15〉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 로드맵(안)	183
〈표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90



[그림 2-1]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의견12

[그림 2-2]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중요도(5점 척도)13

[그림 2-3]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시급성(5점 척도)14

[그림 2-4]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지도15

[그림 2-5]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의견16

[그림 2-6]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17

[그림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5점 척도)18

[그림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5점 척도)19

[그림 2-9]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기대25

[그림 2-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마련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26

[그림 2-11] DB 시스템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33

[그림 2-1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이용 여부34

[그림 2-13]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입력사항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35

[그림 2-1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활용에 대한 의견(복수응답)36

[그림 3-1]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범위41

[그림 3-2] 예술 활동에 의해 얻은 예술가의 소득 구분49

[그림 3-3] 우리나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수입 추이54

[그림 4-1]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핵심 기능 비교72

[그림 4-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능73

[그림 4-3] 예술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실태76

[그림 4-4] 예술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실태81

[그림 4-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부서별 배치(안)131

[그림 4-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서 편제(3본부 9팀 1센터)133

[그림 4-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A안)134

[그림 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B안)135

[그림 4-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초기 운영 조직(2실 4팀)136

[그림 4-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초기 운영 조직(4팀)136

[그림 4-11] 재단 설립 절차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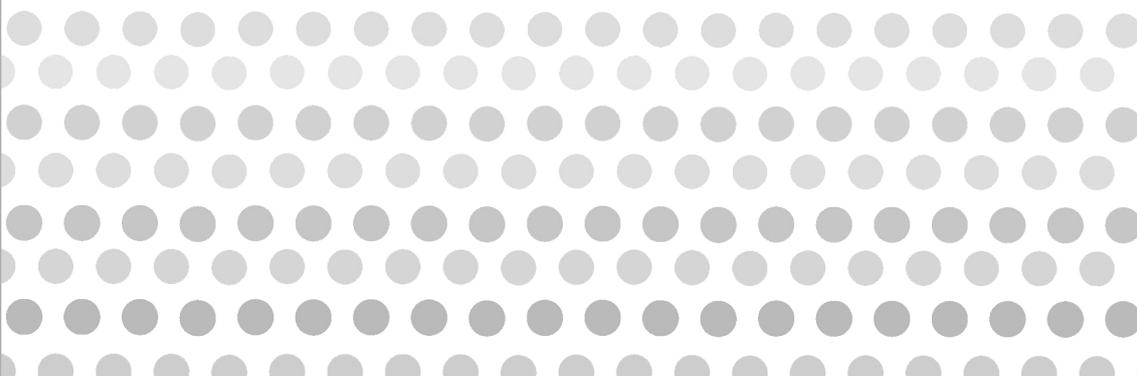


[그림 5-1] 예술활동증명시스템 신청 절차 개념도	161
[그림 5-2] 근로복지공단 고객관리 통합체계	169
[그림 5-3] 국고지원사업비 카드 특징	169
[그림 5-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화면	170
[그림 5-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추진체계	171
[그림 5-6]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절차 개념도	174
[그림 5-7]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177
[그림 5-8] 대학에 자체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177
[그림 5-9] 대학에 자체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178
[그림 5-10] DA-ARTs 목표 시스템 구성도	179
[그림 5-11] 2012 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 이용 현황	179
[그림 5-12] 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 추진체계	180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2011년 제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 동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안) 마련 필요
 - 동법 제2조와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앞서 동법 제8조~제15조에 의해 규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 마련 필요

2. 연구 목적

-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예술인의 범위 및 기준(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이번 연구의 대상 범위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공간적으로는 특정한 지역에 제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중장기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2021년까지의 10년간을 대상으로 함.

2. 연구 방법

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영화, 연예 등 예술계 각 분야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시안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

- 연구자문 추진 일정 및 참여자는 다음과 같음.

〈표 1-1〉 연구 자문회의 추진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참석
1	2012.07.30 14:00- 16:0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7층 회의실	최인석(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수석), 김윤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	2012.08.16 10:00-11:30	영화진흥위원회 회의실	이경철(영화진흥위원회 회계팀장)
3	2012.09.03 10:00-12:00	마포디자인취업센터	김능현(건축가협회 이사), 강흥구(사진작가), 신제남(한국전업미술가협회), 김윤환(민족미술인협회)
4	2012.09.03 14:00-16:00	"	박유승(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김정렬(한국연주자협회 사무국장), 김태호(방송코미디협회 총장)
5	2012.09.05 10:00-12:00	예술가의집	김석진(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계창(한국뮤지컬협회 이사), 김정희(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6	2012.09.05 14:00-16:00	"	김현수(정가악회 회원), 이희병(한국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김헌기(고래야 대표),
7	2012.09.10 14:00-16:00	마포디자인취업센터	문제갑(한예조 정책의장, 탤런트협회정책의장), 김원찬(가수협회)
8	2012.09.17 16:00-17: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산실	전병호(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팀장)
9	20012.09.24 14:00-15:3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동 KCDF 갤러리	전미연(경영전략본부 기획관리과장)

나.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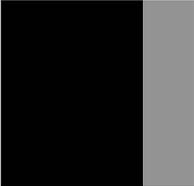
- 조사기간: 2012년 8월 9일 ~ 9월 17일
- 조사대상: 예술인 및 예술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100명을 목표로 실시
- 조사방법: 메일로 설문 안내문을 보낸 후 전문설문 시스템 (www.dooit.co.kr)으로 링크 되는 방식을 사용

2) 조사 결과

- 예술계 종사자 및 전문가 252명에게 메일을 보낸 후 회수된 설문 총 140부 중 결측값이 있는 40부를 제외한 100부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 실시
- 세부적인 자료 분석 결과는 본 보고서 제2장 참조

다. 공청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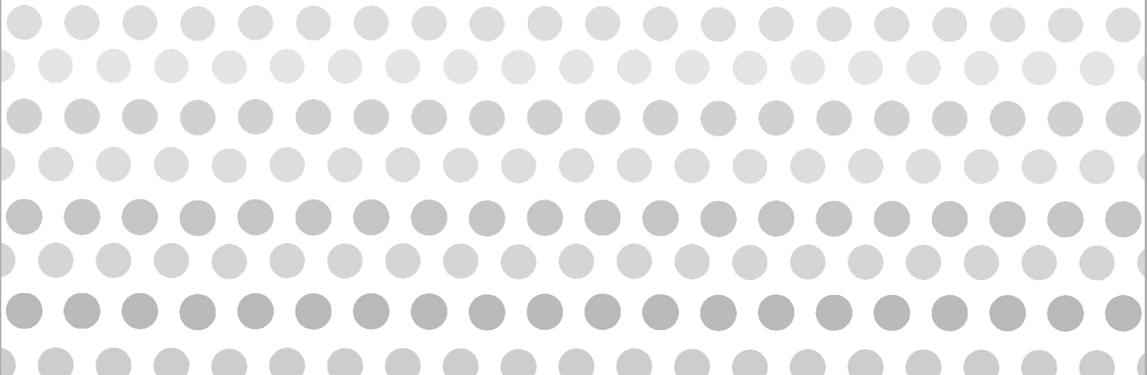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기간중인 201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 공청회 개요 :
 - 일시 : 2012.09.07. (금) 13:30-16:30
 - 장소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 발제Ⅰ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 발제Ⅱ : 「예술인 복지법」 세부 시행 방향에 대한 제언(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노동렬(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유승(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백가흠(소설가), 백기영(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오세곤(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 이희진(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 장인주(무용평론가),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황의철(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제2장 「예술인 복지법」 시행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 조사명칭: 「예술인 복지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2년 8월 9일 ~ 9월 17일
- 조사대상: 예술인 및 예술계 종사자 100명을 목표로 실시
- 조사방법: 메일로 설문 안내문을 보낸 후 전문설문 시스템 (www.dooit.co.kr)으로 링크 되는 방식을 사용
- 조사항목: 예술인 복지의 실태,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재원마련, 의견수렴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여 총 22문항

〈표 2-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문항

연구문제	내용	문항번호
예술인 복지 실태	예술인 복지 실태	Q1
	중요도, 시급성	Q2, Q3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지도 및 의견	Q4, Q5
	개정이 필요한 조항	Q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 우선순위, 추가 의견	Q7, Q8, Q9
	예술인 복지 향상 기여도	Q1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	Q11
	이용여부	Q12
	입력 정보 항목	Q13
	활용 방안	Q14
재원 마련	재원 마련 방식	Q15
의견 수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바라는 점	Q16
응답자 속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Q17, Q18, Q19
	활동 분야, 직업유형, 예술계 종사 경력	Q20, Q21, Q22

- 응답 회수율 : 예술인 및 예술계 전문가 252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회수된 설문 총 140장 중 유효하지 않은 응답 40장을 제외한 100장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실시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속성

- 응답자 성별은 남성 73.0%, 여성 27.0%로 나타남.
- 응답자의 활동 지역은 서울 51.0%, 경기 34.0, 부산 3.0%, 인천 3.0%, 전북3.0%, 광주 1.0%, 강원 1.0%, 충북 1.0%, 충남 1.0%, 전남 1.0%, 경남 1.0%, 대구 0.0%, 대전 0.0%, 울산 0.0%, 경북 0.0%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활동분야는 연극 24.0%, 기타 21.0%, 미술 17.0%, 문학 10.0%, 대중예술(연예) 7.0%, 음악(양악) 6.0%, 무용 4.0%, 음악(국악) 4.0%, 영화 4.0%, 사진 2.0%, 건축 1.0% 순으로 나타남
 - 기타에서 21.0%를 차지하는 것은 예술정책 전문가와 기획인력, 문화재단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응답자의 직업유형은 창작예술가(작가, 시인,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비평가 등) 22.0%, 기획스태프(공연기획가, 전시기획가,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등) 19.0%, 실연예술가(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수, 연출가, 지휘자, 감독 등) 18.0%, 교육자(교사, 강사, 교수) 15.0%, 관리 및 경영자 14.0%, 기타 10.0%, 기술스태프(조명, 음향, 무대기계, 분장, 의상 등) 2.0%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2.8세로, 최연소 25세부터 69세까지의 분포로 나타남.
- 응답자의 예술가로서의 활동경력은 평균 16.3년으로 최소 3년부터 최대 50년까지의 분포로 나타남.

〈표 2-2〉 응답자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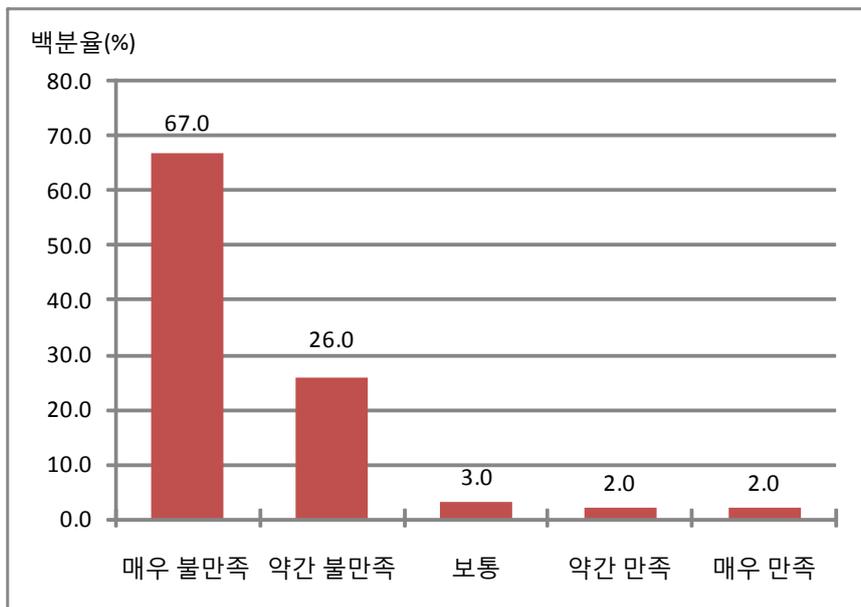
구분	항 목	빈 도(건)	백분율(%)
성 별	남성	73	73.0
	여성	27	27.0
	소계	100	100
거주 지역	서울	51	51.0
	부산	3	3.0
	대구	0	0.0
	인천	3	3.0
	광주	1	1.0
	대전	0	0.0
	울산	0	0.0
	경기	34	34.0
	강원	1	1.0
	충북	1	1.0
	충남	1	1.0
	전북	3	3.0
	전남	1	1.0
	경북	0	0.0
	경남	1	1.0
	소계	100	100
	활동 분야	문학	10
미술		17	17.0
사진		2	2.0
건축		1	1.0
연극		24	24.0
무용		4	4.0
음악(국악)		4	4.0
음악(양악)		6	6.0
영화		4	4.0
대중예술(연예)		7	7.0
기타		21	21.0
소계		100	100
직업 유형		창작예술가 (작가, 시인,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비평가 등)	22
	실연예술가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수, 연출가, 지휘자, 감독 등)	18	18.0
	기획스태프 (공연기획가, 전시기획가,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등)	19	19.0
	기술스태프 (조명, 음향, 무대기계, 분장, 의상 등)	2	2.0
	관리 및 경영자	14	14.0
	교육자(교사, 강사, 교수)	15	15.0
	기타	10	10.0
	소계	100	100

2.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

-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7.0%,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6.0%, '보통'이라는 응답이 3.0%,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2.0%,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2.0%로 나타남.
- 전체의 93.0%가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보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실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건)	백분율(%)
매우 불만족	67	67.0
약간 불만족	26	26.0
보통	3	3.0
약간 만족	2	2.0
매우 만족	2	2.0
합계	100	100.0



[그림 2-1]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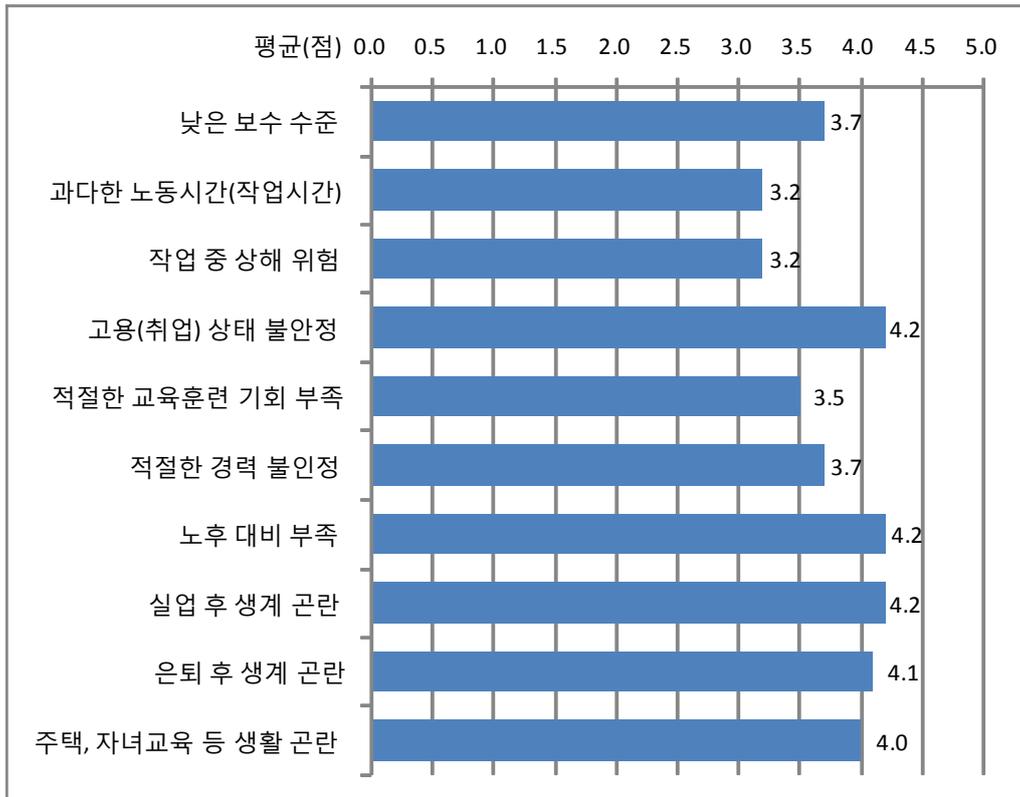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5점 척도)한 결과 '낮은 보수 수준' 3.7점, '과다한 노동시간(작업시간)' 3.2점, '작업 중 상해 위험' 3.2점, '고용(취업)상태 불안정' 4.2점,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부족' 3.5점, '적절한 경력 불인정' 3.7점, '노후대비부족' 4.2점, '실업 후 생계곤란' 4.2점, '은퇴 후 생계 곤란' 4.1점,

‘주택, 자녀, 교육 등 생활 곤란’ 4.0점으로 나타남.

- 전체 10개의 항목 중 8개의 항목에서 3.5점을 넘는 점수가 나타남.
- 고용 상태 불안정, 노후 대비 부족, 실업후 생계 곤란, 은퇴후 생계 곤란, 주택 및 자녀 교육 곤란 등에서 4.0을 넘어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과도한 노동시간이나 작업 중 상해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임.

〈표 2-4〉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중요도(5점 척도)

항목	낮은 보수 수준	과다한 노동시간 (작업 시간)	작업 중 상해 위험	고용 (취업) 상태 불안정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부족	적절한 경력 불인정	노후 대비 부족	실업 후 생계 곤란	은퇴 후 생계 곤란	주택, 자녀, 교육 등 생활 곤란
평균 (점)	3.7	3.2	3.2	4.2	3.5	3.7	4.2	4.2	4.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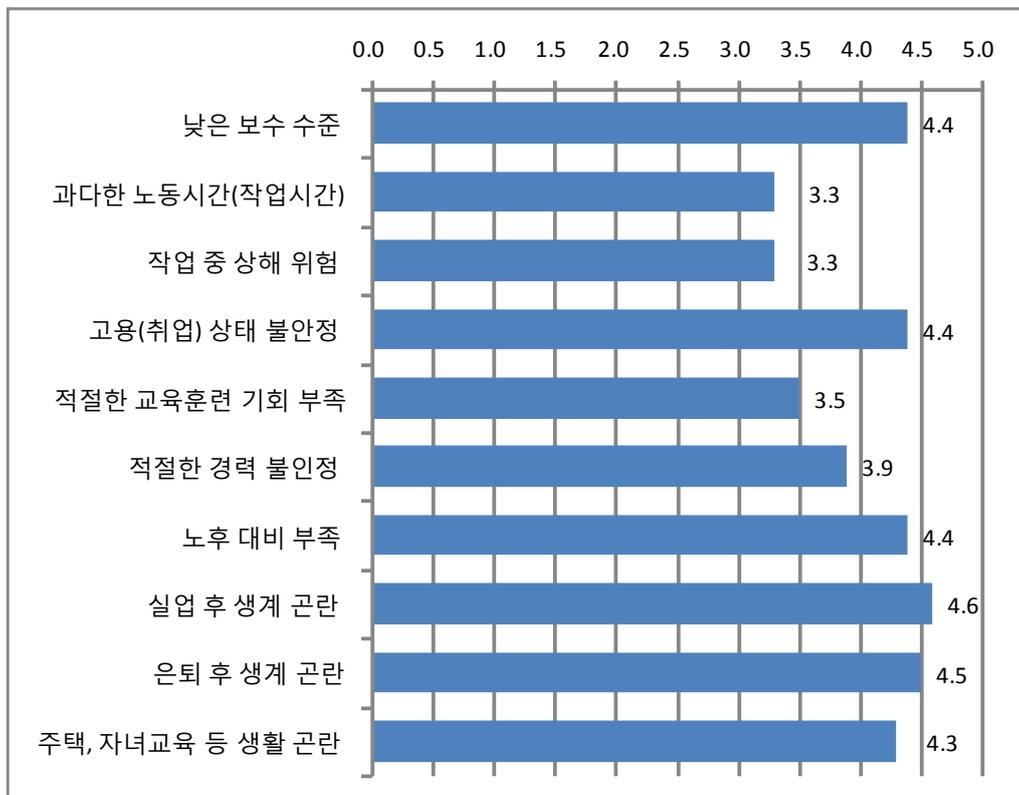
[그림 2-2]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중요도(5점 척도)

○ 다음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에 대해 질문(5점 척도)한 경과 ‘낮은 보수 수준’ 4.4점, ‘과다한 노동시간(작업시간)’ 3.3점, ‘작업 중 상해 위험’ 3.3점, ‘고용(취업)상태 불안정’ 4.4점,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부족’ 3.5점, ‘적절한 경력 불인정’ 3.9점, ‘노후대비부족’ 4.4점, ‘실업 후 생계곤란’ 4.6점, ‘은퇴 후 생계 곤란’ 4.5점, ‘주택, 자녀, 교육 등 생활 곤란’ 4.3점으로 나타남.

-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남.
- 실업후 생계 곤란과 은퇴 후 생계 곤란은 4.5점에 넘어 매우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시급성(5점 척도)

항목	낮은 보수 수준	과다한 노동 시간 (작업 시간)	작업 중 상해 위험	고용 (취업) 상태 불안정	적절한 교육 훈련 기회 부족	적절한 경력 불인정	노후 대비 부족	실업 후 생계 곤란	은퇴 후 생계 곤란	주택, 자녀 교육 등 생활 곤란
평균	4.4	3.3	3.3	4.4	3.5	3.9	4.4	4.6	4.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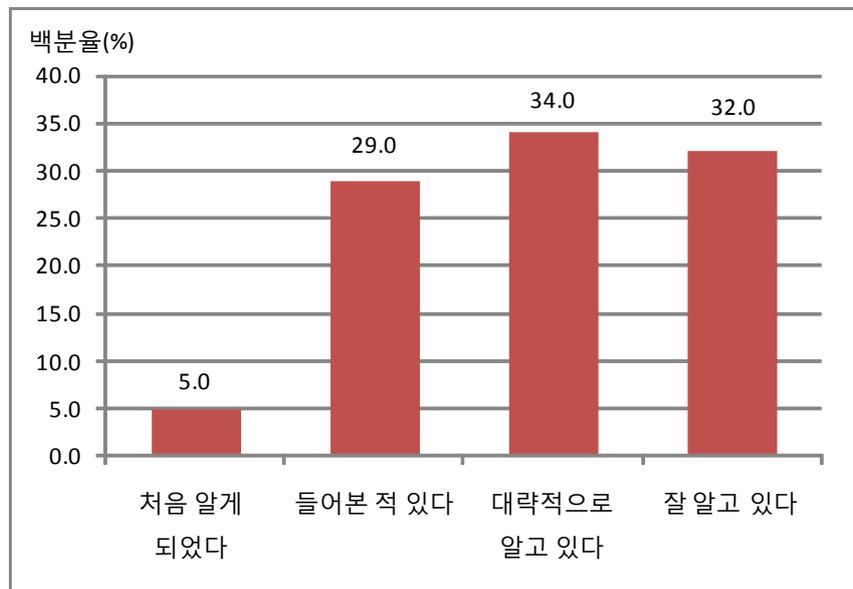
[그림 2-3] 예술인 복지 관련 해결과제 시급성(5점 척도)

3.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29.0%, 「예술인 복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대략적이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0%, 「예술인 복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0%로 나타남.
- 예술인 및 예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만큼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95.0%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표 2-6〉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지도

항목	빈도(건)	백분율(%)
처음 알게 되었다	5	5.0
들어본 적 있다	29	29.0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34	34.0
잘 알고 있다	32	32.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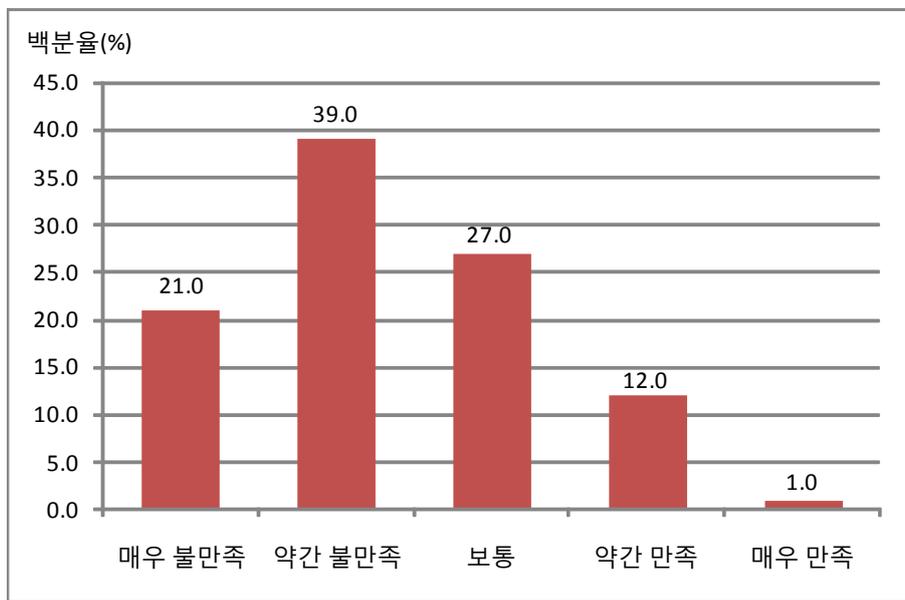


[그림 2-4]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인지도

-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불만족’이 21.0%, ‘약간 불만족’이 39.0%, ‘보통’이 27.0%, ‘약간 만족’이 12.0%, ‘매우 만족’이 1.0%로 나타남.
- 전체의 60.0%가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의견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21	21.0
약간 불만족	39	39.0
보통	27	27.0
약간 만족	12	12.0
매우 만족	1	1.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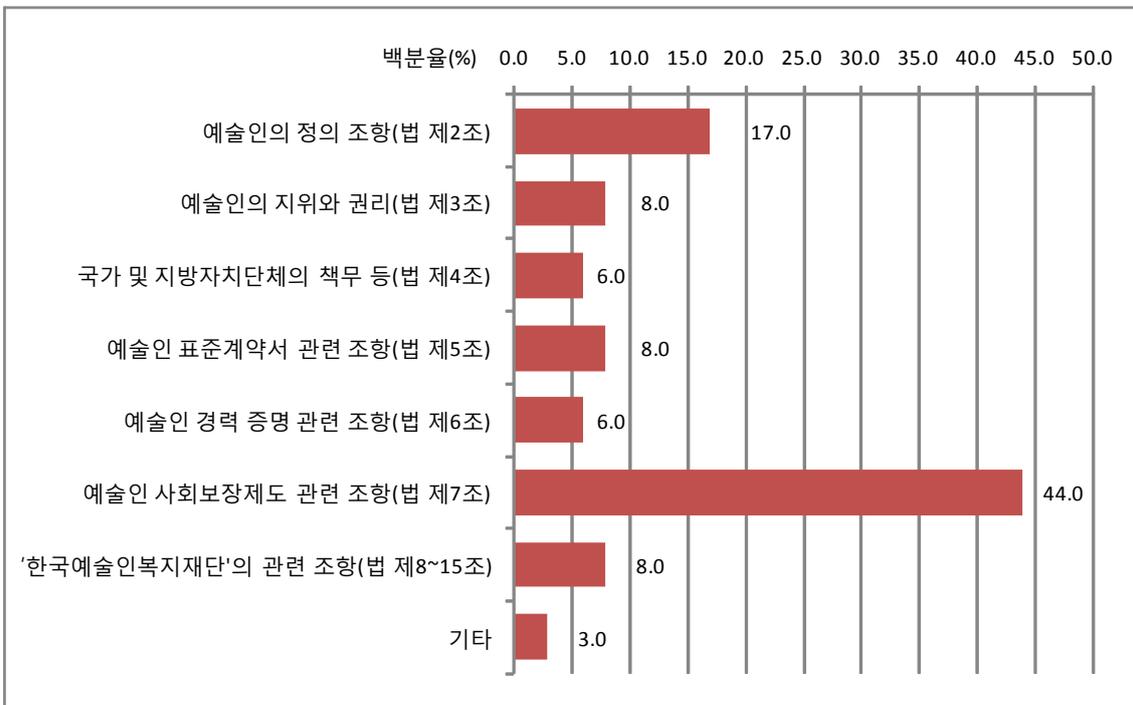
[그림 2-5]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의견

- 「예술인 복지법」에서 향후 3~5년 내 개정(수정, 추가,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예술인의 정의 조항(법 제2조)’ 17.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법 제3조)’ 8.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법 제4조)’ 6.0%, ‘예술인 표준 계약서 관련 조항(법 제5조)’ 8.0%, ‘예술인 경력 증명 관련 조항(법 제6조)’ 6.0%,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항(법 제7조)’ 44.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조직 운영 관련 조항(법 제8~15조)’ 8.0%, ‘기타’ 3.0%로 나타남.

- 전체의 44.0%가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표 2-8〉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

항목	빈도	백분율(%)
예술인의 정의 조항(법 제2조)	17	17.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법 제3조)	8	8.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법 제4조)	6	6.0
예술인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법 제5조)	8	8.0
예술인 경력 증명 관련 조항(법 제6조)	6	6.0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항(법 제7조)	44	44.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조직 운영 관련 조항 (법 제8~15조)	8	8.0
기타	3	3.0
합계	100	100.0



[그림 2-6] 「예술인 복지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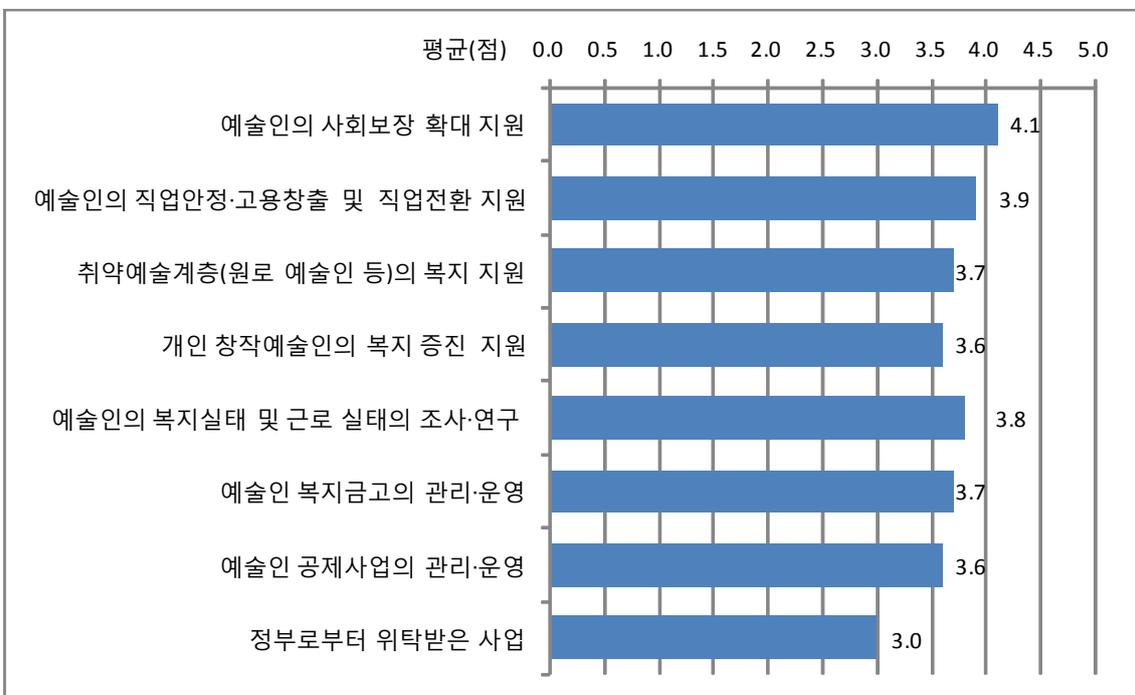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인식 및 기대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제시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5점 척도)한 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4.1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9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7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3.6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연구 3.8점,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3.7점,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3.6점,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3.0점으로 나타남.

〈표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5점 척도)

항목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 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 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예술인공 제사업의 관리·운영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평균	4.1	3.9	3.7	3.6	3.8	3.7	3.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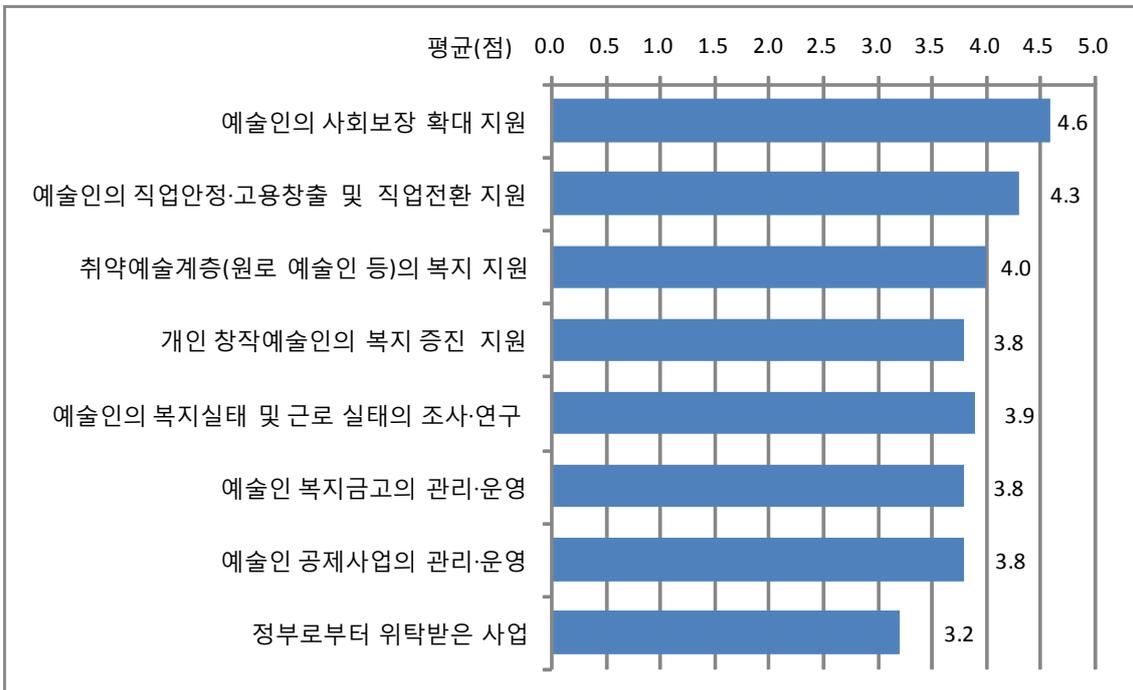
[그림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5점 척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

- 「예술인 복지법」 제 10조에 제시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5점 척도 응답 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4.6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4.3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0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3.8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연구 3.9점,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3.8점,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3.8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2점으로 나타남.
- 특히 예술인의 사회보장 지원(고용보험 등)이 4.6점으로 높게 나타나 예술인 복지에 있어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5점 척도)

항목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 계층의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 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예술인공 제사업의 관리·운영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평균	4.6	4.3	4.0	3.8	3.9	3.8	3.8	3.2



[그림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5점 척도)

-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매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예술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화 사업 (응답자 1)
 -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 형태의 생활자금 지원 사업 (응답자 2)
 - 각 분야별로 차별화된 관련분야와 연계되는 단기, 중기 해외연수사업,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분야별 심화재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 기타 복지와 관련되는 다양한 솔루션 개발 및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관리 사업 (응답자 3)
 - 예술인 복지카드 사업으로 면세의 혜택제공 (응답자 4)
 - 재단 소속 예술인들에 대한 4대 보험 실시 (응답자 5)
 - 현행법으로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음.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소속시키는 것이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생각함 (응답자 6)

- 자 6)
- 세금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응답자 7)
- 예술인의 재교육 사업 (응답자 8)
- 현장 예술인의 재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젊은 예술인들의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응답자 9)
- 지역별 예술인 등록, 지역 내 문화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응답자 10)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문화유적 고궁 상시무료입장 (단 한국미술협회, 전업미술가협회 회원일 경우), 작품을 검증하여 은행이나 문화예술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국가 기관에 작품을 기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예우 등을 추가하여야한다고 사료됨(응답자 11)
- 예술인의 내용 구분 (응답자 12)
- 자영업,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응답자 14)
- 실업급여제도 및 최저생활비 보장제도 (응답자 15)
- 소외예술인(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전도가 유망한 청장년 예술인)의 발굴 및 지원 사업 (응답자 16)
- 예술가 교육시스템 재검토 (응답자 17)
- 자기 예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가 가능하고 존엄을 느끼게 할 사업 등 (응답자 20)
- 예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예술인 관련 제도교육프로그램 실시 (응답자 23)
- 문화, 예술 공연 관람과 시설이용에 대한 폭넓은 할인 및 무료 사용 혜택 (응답자 24)
-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음 (응답자 27)
- 예술가들이 과거 복지와 고용사각으로 인해 중복 과잉 납부한 세금환급에 관한 사업, 건축물 조형물, 공공 미술 등 추천 및 공모식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청렴의무와 개인혜택을 위한 사업 (응답자 28)
- 예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 (응답자 29)
- 예술인 창작공간(작업실, 녹음 스튜디오 등)의 확보, 창작물의 상업적 성취도를 요구하지 않는 투명한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의 임원 구성 및 선출시 전체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응답자 31)
- 법률 지원 활동 (응답자 32)
- 지금까지 예술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4대 보험의 혜택을 주는 단체나 직장의 경력만을 인정하여 예술인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원한다거나, 자신의 직업을 증명할 때 자신의 개인 창작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경력을 관리하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력임을 보증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응답자 33)
- 예술인 의료복지 관련 사업 (응답자 34)
- 예술인들이 활동하려면 충분한 연습공간이 필요하다. 연습공간의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예술인들에게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습공간이 있더라도 운영자금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을 연습 공간 유지에 쏟아 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다양한 연습공간을 확보하여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역량강화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 생각된다. (응답자 35)

- 일자리 창출 (응답자 36)
- 예술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후 복지원이 필요 (응답자 37)
- 예술인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과연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스텝으로 참여하는 예술인들도 포함하는지 (응답자 38)
- 사회보장 범위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응답자 39)
- 예술인 의료보험가입 서비스 구축 (응답자 40)
- 장학재단 (응답자 41)
- 특별히 개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4대 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파악이 급선무일 것이다. (응답자 42)
-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전폭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캠페인 작업 (응답자 43)
-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를 위한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의대로라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예술인들 중에서도 등록예술인과 비등록 예술인의 구분이 생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혜택이 필요한 분들 중에는 지금의 규정을 채우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예술인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일지는 몰라도, 지역을 현장으로 활동하는 지역예술인의 경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술인들의 처우와 환경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필요하고 긴급한 것은 지역의 예술현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예술인 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면서 문제를 좁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술인이 자격증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기보다는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 역할과 훌륭하지만 경제적 삶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을 흡족 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모든 정책이 모든 예술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다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의 공공성과 수월성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비껴나가고, 오히려 지역예술현장을 둘로 나누는 기준으로 작동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응답자 44)
- 대출제도, 장거리 통행 할인 (응답자 45)
- 예술인 인명사전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답자 46)
-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불우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무료 쉼터제공 (응답자 47)
-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응답자 48)
-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개혁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예술창작지원, 예술인 복지 등 현장 형 예술정책 전반의 업무를 일원화해서 맡겨야 한다. (응답자 49)
- 예술인 창작 공간 (응답자 51)

-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52)
- 장애 예술인 보조 및 지원 사업 (응답자 54)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응답자 55)
- 제시된 사업이라도 잘해주었으면 한다. (응답자 56)
- 예술인 복지정책 개발, 저작권 관리 사업, 예술인 분쟁 조정 및 지원 (응답자 58)
- 민간예술단체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제도 마련, 개인이 있기 위해서는 민간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립예술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예술단체가 활동 할 영역이 줄어들고, 운영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국립예술단체의 자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또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술인 개인의 창작 및 예술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자 59)
- 재단 사업 관련 다양한 재원 방식 마련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응답자 60)
- 디자인 관련 사업의 확대 및 다양한 인력 고용 (응답자 62)
- "일반적인 생활인" 내지는 "비숙련 사무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중에서는 아직도 컴맹이 있고, 문자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 법, 기타 일반적인 사회 교양에서 예술인은 바닥입니다. 다른 분야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잡기에 불가능해지는 진입장벽으로 생각됩니다. (응답자 64)
- 비단 복지를 받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인들이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재능 나눔의 기회가 좀 더 구체적 방안으로서 제시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복지를 펼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복지는 더욱 보편화 체계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술인에 대한 처우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응답자 65)
- 예술인으로서의 사회 전반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응답자 66)
- 예술인 장학금 저이자 지원 (응답자 67)
- 예술인 증명(경력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술인의 공적인 권리 및 실적 관리 (응답자 69)
- 예술인 금고 및 공제회 등에서 세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함 특별한 사업에 대한 의견 없음 (응답자 70)
- 기존 문항의 사업으로도 충분한 듯 보임. 사업의 개체수를 다양하게 하는 것 보다 우선순위의 소수의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게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 (응답자 71)
- 대학로 등 공연장 예술 공간 밀집지역에서의 예술인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미취학연령 중심) 운영 (응답자 72)
- 예술인 휴양시설 운영, 예술인 전용 마을 조성 (응답자 73)
- 재단의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예술인의 정의와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여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범위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예술인의 사회보장과 직업안정 지원과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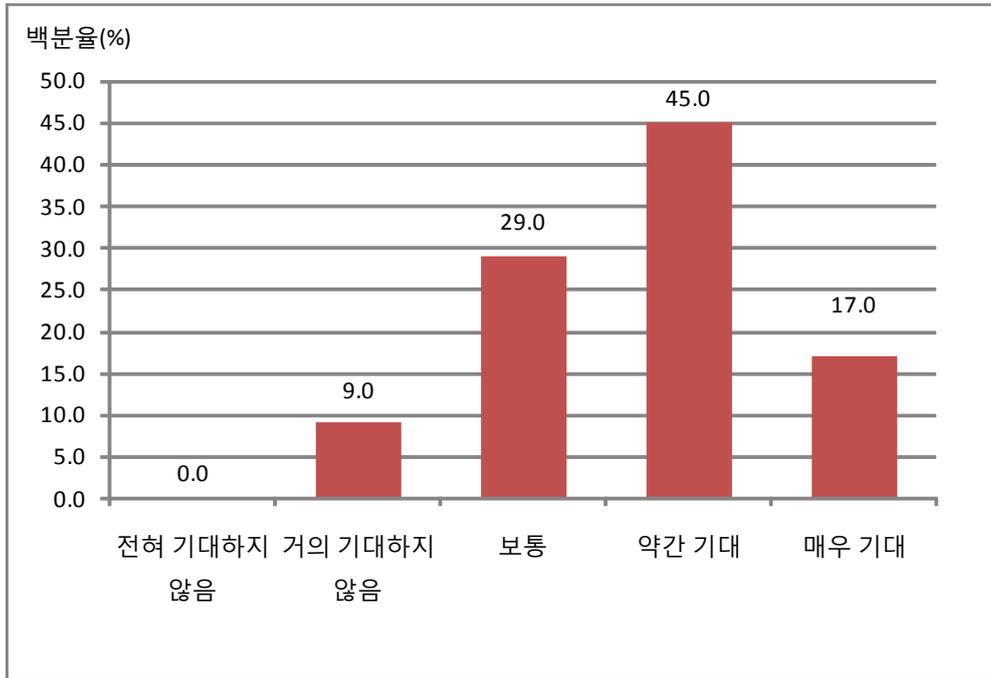
지원 등은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체계에 정식으로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임. 이와 별도로 예술인의 자기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는 별도 관리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어떨지. (응답자 74)

- 예술인을 위한 저리 대출. 예술인들은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및 작품개발, 전세자금 등에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응답자 75)
- 각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음악, 영화, 공연 등 하위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들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답자 76)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사업 또한 예술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정부가 예술인단체에게 사업의 일정부분을 맡겨야 한다. (응답자 77)
- 자체 사업은 지양하면 좋겠다. (응답자 79)
- 제시된 사업도 충분함 (응답자 82)
- 초중고 교육에서의 예술교육 확대 및 각 분야 예술가의 보다 심도 있는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었으면 함 (응답자 83)
-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함께 노동자로서 예술가의 법적 지위와 보장이 우선적으로 제도정비가 되었으면 한다. 질문 7, 8에 열거된 사업의 추진이 중장기적으로 기존에 전무했던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된다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 (응답자 84)
- 창작 조건 및 장기 창작을 위한 대출제도, 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 증진 (응답자 85)
- 제시된 것들만 충분히 시행된다면 굳이 다른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86)
- 사업과 관련은 없으나 거론되어야 할 것은, 복지재단이 예술가들의 자격을 따지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임.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음. 예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더 상의하고 무언가 부족하다 싶은 의견이 많다면 복지법 시행을 보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함. (응답자 87)
- 후속세대 교육 및 지원 (응답자 88)
- 신진 예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 모든 예술인에 대한 4대 보험 적용(특히 국민건강보험) (응답자 89)
- 예술인 사회 보장의 개념을 일반 산업과 등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예술 활동이 그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라고 할 경우 예술 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창작자는 그 작품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임. 그럴 경우 일반적인 사회 보장의 범위와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응답자 90)
- 복지법의 수혜대상 예술인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술단체들의 역할을 잘 만들어, 예술단체들의 진성회원을 정리하여 향후, 자생적, 자율적인 (분야별) 예술인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응답자 91)
- 예술인 안식년 및 그에 따른 재교육 활동 (응답자 92)

- 여성 예술인 산전, 산후, 및 육아 지원 (응답자 93)
 - 예술인 복지재단은 민간/공공이 합심하여 예술인 복지를 실현해 나갈 주체이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재정적 한계를 안고 출범하는 재단인 만큼,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보다는 우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추가하였으면 하는 사업보다는 심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술인 기준에 관하여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하니만큼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취미예술인이나 아마추어를 걸러내는 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할 것이며,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력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답자 94)
 -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술인복지카드 사업. 예술인들과 문화예술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복지카드(교통, 통신, 의료, 도서, 문화시설 등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여러 기업들과 협약체결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응답자 95)
 - 「예술인 복지법」 내용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응답자 96)
 - 예술인으로 인정된 예술인만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아닌 예술전공생의 생계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대학4연간의 학자금대출 빚에서 벗어날 기회가 얼마나 부족할지, 이미 예술가로서 자리를 잡은 사람도 중요하나, 예술새싹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응답자 97)
 - 예술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통로 마련, 예술인 강사파견제 등과 같이 예술인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 (응답자 98)
 - 표준계약서 보급 교육/관리/감독 기구 운영, 각 협회와 연계 연구 필요 (응답자 99)
 - 초중고 과목에 음악과미술은 있지만 연극수업이 정식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업을 개설해주세요. (응답자 1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질문한 결과, ‘전혀 기대하지 않음’ 0.0%, ‘거의 기대하지 않음’ 9.0%, ‘보통’ 29.0%, ‘약간 기대’ 45.0%, ‘매우 기대’ 17.0%로 나타남.
- ‘기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약간 기대 45% + 매우 기대 17%)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이 예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한 기대

항목	빈도(건)	백분율(%)
전혀 기대하지 않음	0	0.0
거의 기대하지 않음	9	9.0
보통	29	29.0
약간 기대	45	45.0
매우 기대	17	17.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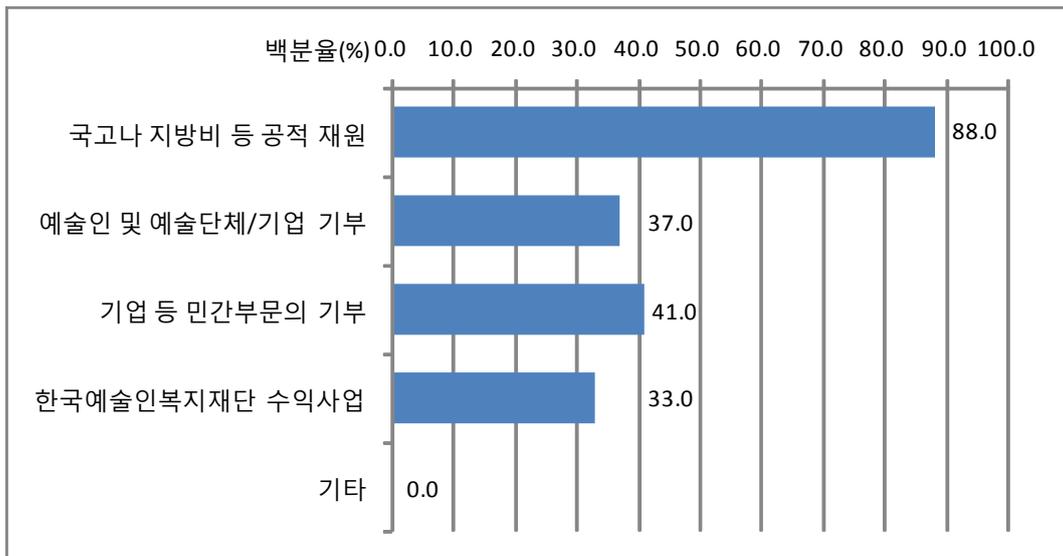
[그림 2-9]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에 대한 기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고나 지방비 등 공적 자원 88.0%, 예술인 및 예술단체/기업 스스로의 기부로 만들어진 자원 37.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기부로 만들어진 자원 4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원 33.0%, 기타 0.0%로 나타남.

- 국고나 지방비 등 공적 자원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음.

〈표 2-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원 마련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항목	빈도	백분율(%)
국고나 지방비 등 공적 자원	88	88.0
예술인 및 예술단체/기업 스스로의 기부로 만들어진 자원	37	37.0
기업 등 민간부문의 기부로 만들어진 자원	41	4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원	33	33.0
기타	0	0.0



[그림 2-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원마련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 예술인 복지재단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매우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음.

- 비리 없이 운영되면 좋겠다. (응답자 1)
-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예술계 전문인이 이사로 적극 참석하여 현실성 있는 재단운영이 필요함. 낙하산 인사 등으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는 허울뿐인 재단이 되지 않게 운영에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함. 특히,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원 투여가 절실히 요구됨. (응답자 2)
- 향후 지속성을 가지고 점차 예산을 확충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응답자 3)
- 사회 안전망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4)
- 엄격한 기준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자 5)
-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부 기구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 이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응답자 6)
- 제도의 바른 정립과 투명한 운영 노력하는 예술인에 대한 바른 혜택이 중심이어야 한다. (응답자 7)
- 재단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각 예술 장르간의 충돌도 우려 된다. 각 예술 장르의 기관들이 합심하여 합리적인 재단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예술인들의 대거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부디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 (응답자 8)
- 예술인들의 복지증진 및 직업안정, 사회보장 확대 등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대 (응답자 9)
- 저소득 예술인 및 원로 예술인에 대한 복지 사업이 우선 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기성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 자금은 무조건 국고나

- 기업의 기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 (고소득 예술인이 복지재단에 기부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등) 재원을 마련하여 창작 행위자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답자 10)
-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도와준다는 수혜의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술인은 국가적 자산이며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귀한 인적자산을 명심해야한다. (응답자 11)
 - 복지 혜택이 차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응답자 12)
 - 특별 법인으로 관료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비할 필요 있음, 재원 확보가 최우선과제이겠지만 이를 위해 과정과 절차 등을 무시할 수는 없음. (응답자 13)
 - 모든 예술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제도 정립 우선 추진 (응답자 14)
 -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응답자 15)
 - 조직의 공정한 운영(임직원 채용), 조직의 슬림화 (효율적 조직운용), 예술인에 대한 섬김의 자세,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응답자 16)
 - 예술인복지업무가 예술지원정책 주요한 부분인데 별도의 기관들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시 됨. 예술위원회 업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응답자 17)
 - 예술인의 범위 확대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함. (응답자 19)
 - 여느 복지재단과 같이 초기 미션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응답자 20)
 - 지속적인 설문조사 또는 심포지엄을 통해 예술인 의견을 꾸준히 반영했으면 합니다. (응답자 21)
 -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일지라도 정량적 성과위주로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인들의 창작-발표-향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바람.(응답자 22)
 - 재단이 어디에 설립되는지 모르지만 서울과 함께 지역거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응답자 23)
 - 취지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예술인복지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보장과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업 공연 및 영화가 아닌 이상은 가난한 예술인이다. 우리나라에 좋은 예술가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는 자들이 있어주기를 바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 강사의 경우도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것만으로 생활이 유지되기엔 힘들다. (응답자 24)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루 벌이가 힘들어도 쉬거나(휴직), 이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재취업도 힘들기 때문이지요. 예술인은 한국사회에 필요 없는 듯한 사회적 제도에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주 큼니다. 경력이 약한 예술인 마저도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요. (응답자 25)
 -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는 것을 일차로 하고, 예술인 복지 재단의 일을 그 다음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자 26)

- 지속적으로 설문과 토론 등 많은 사람들과 이 일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28)
- 모든 사업에서 중요한 인력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바라고 여러 예술단체들과 소통에 많은 배려와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답자 29)
- 지연, 학연, 혈연과 지원금 지급은 무관한 거 아시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투명, 공정한 지원. 그리고 소수자 지원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생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복지'일 것입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조건이 되고 돈을 받을만한 단체 혹은 예술인은 이미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전체가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예술인들, 그리고 지원받아 마땅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가길 바랍니다. (응답자 31)
-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 장르의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제적인 인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32)
- 다양한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각 장르에 적합한 복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사업성을 배제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금의 운영 등 재단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인복지재단을 자신의 든든한 보장보힘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자 33)
-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 (응답자 34)
- 탁상 행정이 아닌 어려운 예술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최대한 재단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응답자 35)
- 빠른 시행 (응답자 36)
- 예술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예술가에게 집중해서 지원 (응답자 37)
- 공정한 재단기금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응답자 38)
- 이런 제도에서 조차 소외되고 차별 받는 예술인이 없었으면 (응답자 39)
-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 (응답자 41)
- 나는 「예술인 복지법」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제일먼저 해야 할일이 예술가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법인이 설립된다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예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다. (응답자 42)
- 예술인 범위의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출범 초기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예술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복지재단이 역할을 한다면 예술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과 역할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복지를 위한 활동이 이제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폭과 범위를 넓히고 예술인 복지의 실질적인 내용을 향상시키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응답자 43)

- 우선 예술인복지재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민간재단이므로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낙하산 인사, 특정 예술단체 중심의 편향은 예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단체 간의 합의와 배려, 그리고 공감 등을 토대로 더욱이 예술단체에 속하지 않은 예술인들까지 배려하고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응답자 44)
- 예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권 마련, 잘은 모르지만 일단 복지재단의 설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예술가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자 46)
- 굶어죽는 예술인이 없도록 구석구석 두루 살피어 운영해 주시기를. 그 중에도 특히 힘없는 예술인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응답자 47)
- 누구를 위한 재단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예술위원회가 사실상 서울예술위원회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예술인 전체의 복지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또 하나의 중앙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응답자 48)
- 재단 최초의 이사장과 사무총장 선임은 정치적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예술인들의 우려가 매우 큰데, 만약 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선임되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첫 시작부터 영영 예술인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응답자 49)
- 많은 예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응답자 51)
-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응답자 52)
- 체계적인 운영과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응답자 54)
- 예술인들의 상부조직이 되지 않도록 지원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답자 55)
- 「예술인 복지법」을 현실과 지향 방향을 이번 설문자료를 통한 보다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 (응답자 56)
-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진 구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복지재단은 정파적 관점을 벗어나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해야 함, 복지재단은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지부를 구성하여야 함. (응답자 58)
- 한국 예술인들의 좀 더 적극적인 예술표현과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술인 또한 인정받아야 마땅할 직업군임에도 불가하고 사회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59)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와 국민이 인식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로 상정했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범주와 경력 증명 방법 등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은 국가의 보살핌에서 소외된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삶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의 자존심을 지켜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양보하며, 대화하는 자세로 단순하게 예술인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겸손하게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술인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혜택을 사양한 재능기부와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을 계기로 한국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응답자 60)

-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재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응답자 61)
- 투명한 운영 관리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답자 62)
- 제대로 된 운영으로 실제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창작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답자 63)
- 표준계약서 제정/개정/관리 및 대중화,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불이행시 대리집행 혹은 집행 최고. 예시)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급여에 대해 신고접수 후 이행강제/ 서울보증보험이 악성의 상매출에 대해 대리집행 (이후 채권추심)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이후 재단의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증수수료”를 최소한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음. (응답자 64)
- 예술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바뀌는 그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응답자 65)
- 운영자 중심의 사업 전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 66)
- 공식적으로 대표를 공모하고, 투명한 경영과 운영하기가 이루어 졌으면 함. (응답자 67)
-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길. (응답자 68)
- 초기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인 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답자 69)
-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자 70)
- 정부사업의 위탁 운영을 하지 않는 방향,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재원조성(민간기부금 확보 등)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 재단의 사업이 기존 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영역을 조정하여 운영(교육관련 등) (응답자 72)
-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예술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업무를 해야 함.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500억 원 이상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법령에 미비한 점은 사업을 통해 보완해야 함. 재단은 파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예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함. (응답자 73)
- 예술활동 증명기준의 애매모호함 개선 필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복지지원보다 예술인이 기존 공적 복지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 지역 예술인의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은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 (응답자 74)
-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조직구성 및 채용이 곧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위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겨 안전한 행정일자리가 생긴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며, 보수니 진보니 그러한 정치적 성향 또는 특정 학교출신 등 이러한 것들로 부터 벗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답자 75)
- 재단의 사업범위가 너무 넓은. 초기에는 조사연구 및 직업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재단의

- 역량이 확보되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복지법이 재단설립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사업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응답자 76)
- 좀 더 예술인의 입장에서 담당기관에서 연구해주길 바란다. 선진국의 법도 참작하고 지금까지 공무원의 탁상에서 이루어져 여론이나 지시에 의해 만들어져 쓸모없는 연구용역비나 낭비한 법이었다 제발이번엔 진정한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이 되었으면 한다. (응답자 77)
 - 투명 경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78)
 - 재단 수익 사업에 관심 갖기보다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사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응답자 80)
 - 공평 무사하게 집행 진행되기를 바램. 낙하산 절대 반대 (응답자 81)
 - 예술인복지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 항목과 취지에 동감한다. 다만, 나는 단 한 가지에 대해 매우 불만이 있다. 예술인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다. 시행령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마치 취업규정의 경력 산정처럼 된 예술인의 정의는 정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법이 그야말로 가난한 예술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문예술가'를 위한 것이라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나는 이 법이 전문예술가뿐만 아니라 좀 더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이 되기를 소망한다. (응답자 82)
 - 재단이 예술인들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학력이나 공공경력 위주가 아니라 예술 분야의 자유로움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응답자 83)
 -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예술가가 특별한 계층으로서 보호받는다 는 인식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창립되고, 많은 연극인들이 재단의 예산으로 일정정도의 혜택을 받으며 그 재단의 창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일정부분 수혜대상의 범위 설정은 물론, 재단을 이용하는 연극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도 실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은 일단 예술가로서 법적 인정을 이미 받은 대상자 외에 예술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예술가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예비 예술가(?)들에게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응답자 84)
 - 예술인(수혜자)중심의 세심한 복지프로그램 운용과 제 단체들과의 협약을 많고 다양하게. (응답자 85)
 - 예술인에 문학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예술과 상업예술의 구분도 이뤄져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복지정책의 기준도 세워져야 합니다. (응답자 86)
 - 예술인 개념 규정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 후 합의 필요, 예총 등 기존 예술단체를 통한 위임방식은 기존 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응답자 88)
 -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89)
 - 국가가 예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육체 즉 예술가에게 깃들어 있다는 철학 아래서……. 예술가 지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응답자 90)
 - 임원 구성 및 각 자문위원, 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 최대한 예술인(단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응답자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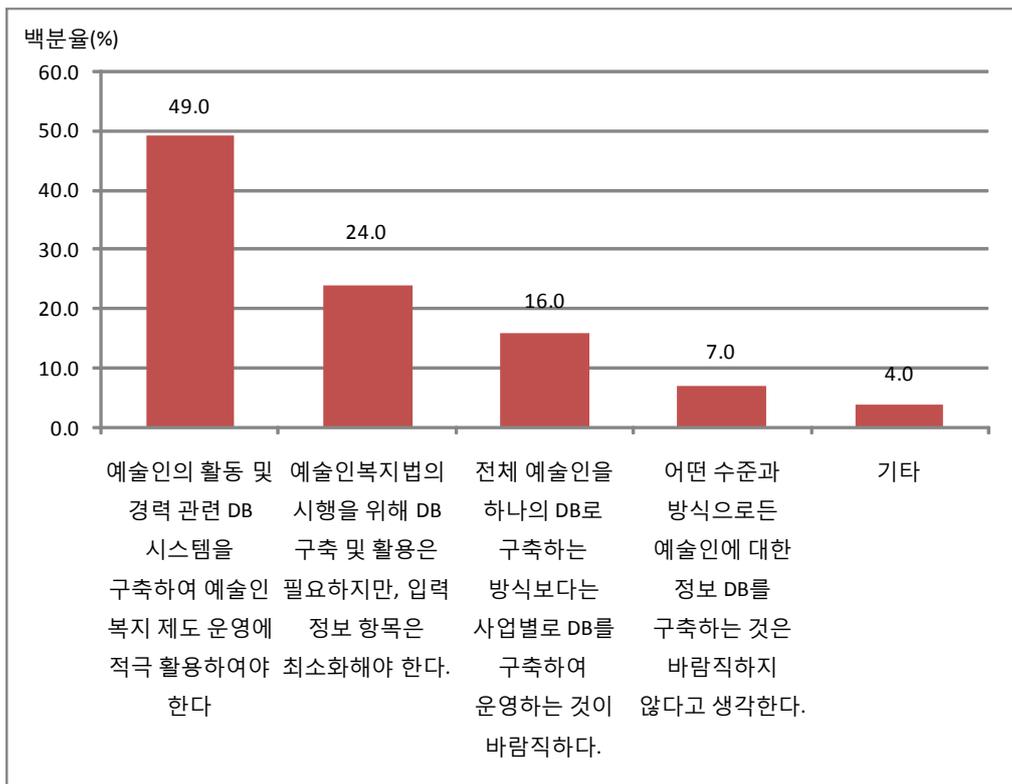
- 예술인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외국의 사례를 발굴해 예술인들에게 알려 예술인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홍보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직접 하는 것보다 각 예술단체의 인사들에게 잘 설명해 그들이 자기 매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지자체, 기업, 단체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응답자 92)
- 비리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길. (응답자 93)
- 편성재원이 너무 적어 걱정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초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자원, 작은 규모로 너무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인 만큼, 예술을 사랑하는 민간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응답자 94)
- 현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제도에 반영하는 쾌속충진시스템 필요 (응답자 95)
-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응답자 96)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예술인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정확히 안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답자 97)
- 현장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된 후에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정치적인 도구로 문화예술이 활용되는 도구이지 않기를 바란다. (응답자 98)
-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 설립을 목표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재원 확충 방안 수립 필요 (응답자 99)
- 현장에서 직접보고 예술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응답자 100)

5. 예술인 DB 시스템에 대한 의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서 필수 요소로 판단되는 예술인 DB구축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활용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예술인의 활동 및 경력 관련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49.0%,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을 위해 DB 구축 및 활용은 필요하지만, 입력 정보 항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4.0%, ‘전체 예술인을 하나의 DB로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별로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6.0%,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든 예술인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0%, ‘기타’의견이 3.0%로 나타남.

〈표 2-13〉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항목	빈도	백분율(%)
예술인의 활동 및 경력 관련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9	49.0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을 위해 DB 구축 및 활용은 필요하지만, 입력 정보 항목은 최소화해야 한다.	24	24.0
전체 예술인을 하나의 DB로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별로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16.0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든 예술인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7	7.0
기타	4	4.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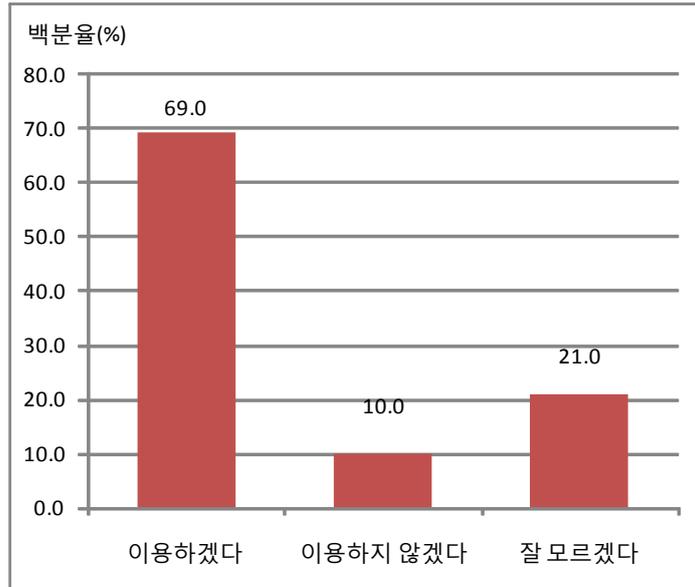


[그림 2-11] DB 시스템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69.0%,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10.0%,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1.0%로 나타남.

〈표 2-1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이용하겠다	69	69.0
이용하지 않겠다	10	10.0
잘 모르겠다	21	21.0
합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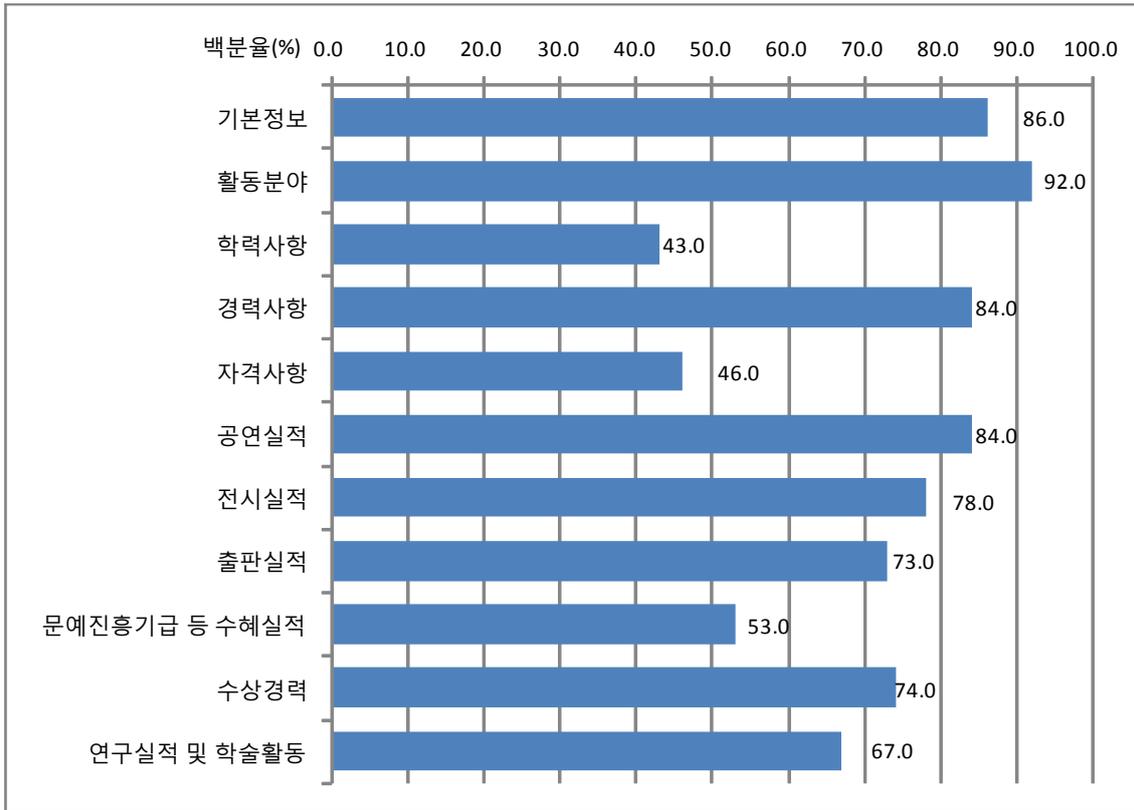


[그림 2-1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이용 여부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입력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본정보 86.0%, 활동분야 92.0%, 학력사항 43.0%, 경력사항 84.0%, 자격사항 46.0%, 공연실적 84.0%, 전시실적 78.0%, 출판실적 73.0%, 문예진흥기금 등 수혜실적 53.0%, 수상경력 74.0%,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67.0%로 나타남.

〈표 2-1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입력사항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항 목	빈도	백분율(%)
기본정보	86	86.0
활동분야	92	92.0
학력사항	43	43.0
경력사항	84	84.0
자격사항	46	46.0
공연실적	84	84.0
전시실적	78	78.0
출판실적	73	73.0
문예진흥기금 등 수혜실적	53	53.0
수상경력	74	74.0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67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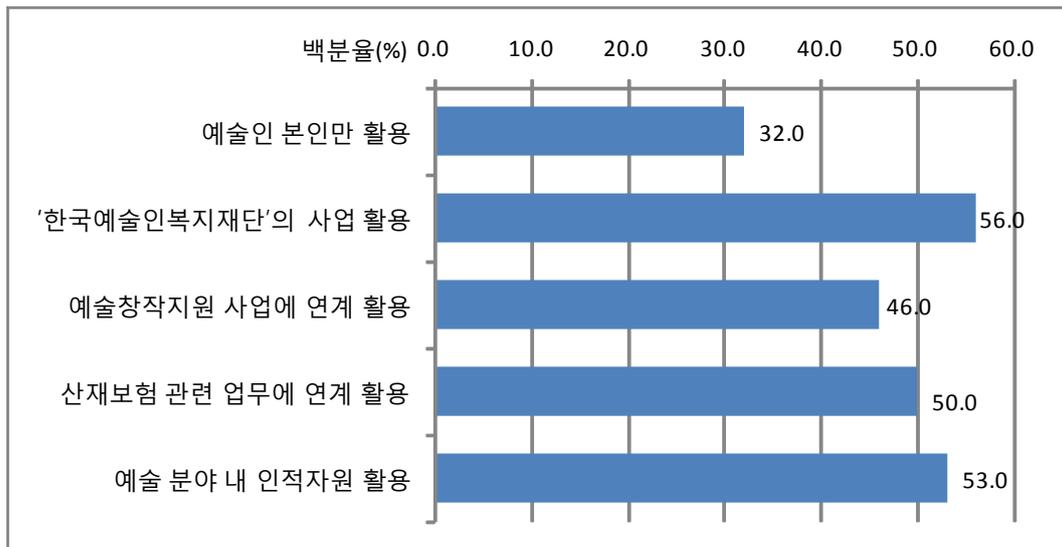


[그림 2-13]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입력사항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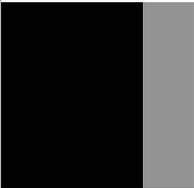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활용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술인 본인만 활용(DB 시스템을 이용, 본인의 간단한 이력서를 출력하여 활용)’ 3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운영 시 활용(사업 참여 신청 시 활용)’ 56.0%, ‘국고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연계 활용’ 46.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연계 활용’ 50.0%, ‘예술 분야 내 인적자원 정보로 활용(예술기관/단체 구인/구직 관련 정보로 활용 등)’ 53.0%, ‘기타’ 3.0%로 나타남.

<표 2-16>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활용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빈도	백분율(%)
예술인 본인만 활용 (DB 시스템을 이용, 본인의 간단한 이력서를 출력하여 활용)	32	3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운영 시 활용 (사업 참여 신청 시 활용)	56	56.0
국고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연계 활용	46	46.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연계 활용	50	50.0
예술 분야 내 인적자원 정보로 활용 (예술기관/단체 구인/구직 관련 정보로 활용 등)	53	53.0
기타	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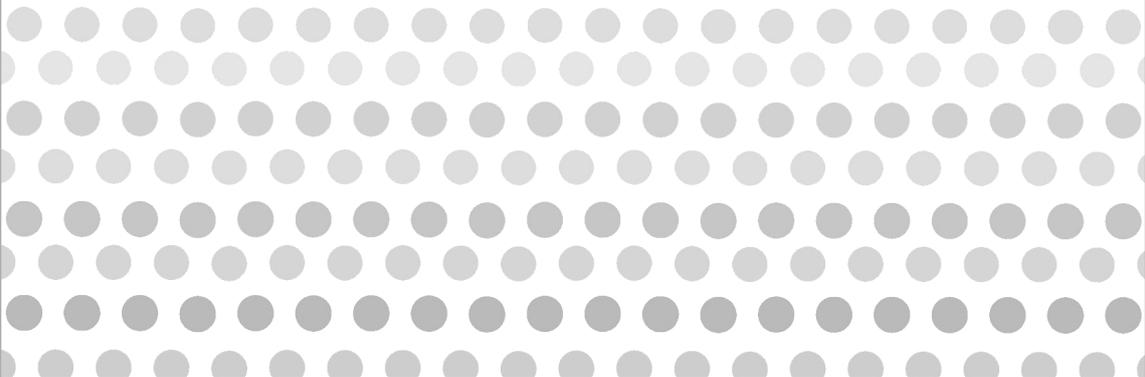


[그림 2-1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가칭)의 활용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제3장 예술인 범위 및 기준(안)

제1절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범위
제2절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



제1절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범위

1.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정의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먼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자”란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자를 의미함.
 -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예술 창조 자체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전업 예술인도 존재함.
 - 또한 경제적 목적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수입의 양만을 기준으로 하여 “업으로서 예술 활동”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도의 기준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음.¹⁾
- 다음으로 ‘예술 활동’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재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 12개 분야를 말함.
 - ‘예술 활동’이란 12개 분야에서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
 - 즉, 12개 분야에서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 활동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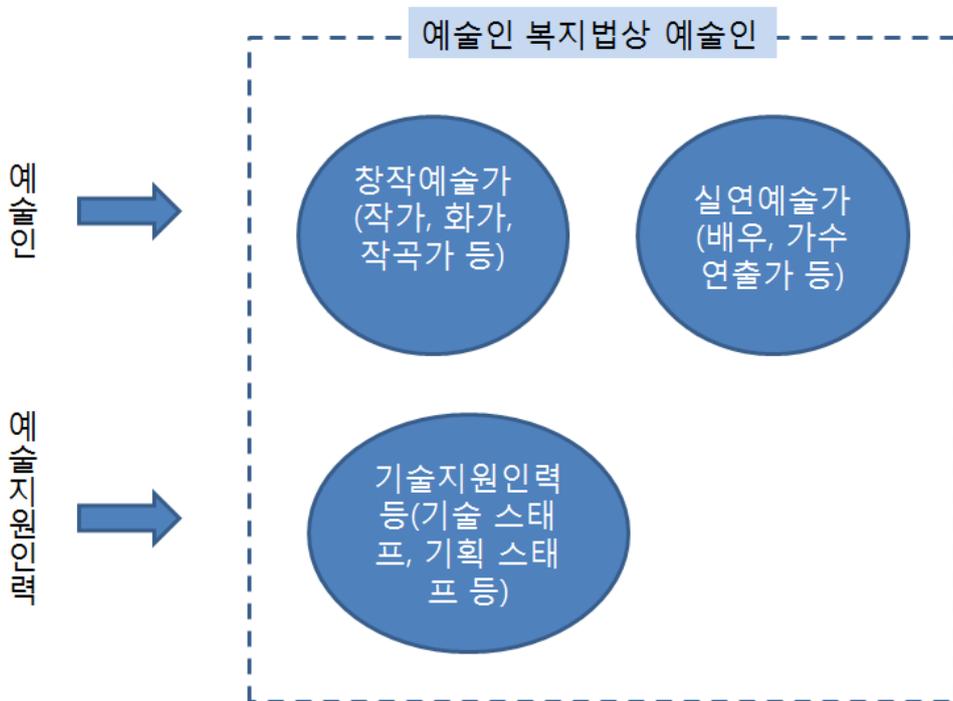
1) 예술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

2) 세부적인 증명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

2.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

- 예술인의 범위는 활동 분야(장르)와 직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음.
- 예술 활동 분야에 따른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의 12개 분야 가운데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과 결합되는 영역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분야라 할 수 있음.
 - 어문은 국어 및 한글 관련 분야이고 출판은 문화산업의 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과 유관성이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문제는 이 10개 분야로 한정한다 하여도 그 범위가 명료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의 ‘응용미술’에는 공예분야와 디자인분야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예와 디자인이 예술 활동의 영역의 속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임.
 - 또한 ‘국악’과 ‘음악’이 별개의 장르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악’=‘양악’이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용어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연예’라는 장르명에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별개의 장르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영화를 제외하는 대중예술분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개념적 불확실성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예 및 디자인 분야를 ‘응용미술’의 한 장르로 간주하여 ‘미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공예와 디자인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 분야가 ‘예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
- 다음으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이라 함은 그 활동의 특성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음.
 - 이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기술 지원 스태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기술 지원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기술 지원’과 같이 직접적인 예술 활동 참여자는 아니지만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기획 스태프, 예술 교육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과 실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의 ‘예술인’에 해당하며, 작가나 화가, 작곡가 등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예술가(creative artist)’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interpretive artist)’로 구분됨.
 - 그런데 예술의 생산과 유통에는 ‘예술인’ 외에도 기술 스태프, 기획·경영 스태프 등 다양한 인력군이 존재함.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이 아니라 기술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등”자를 통해 기획·경영 스태프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예술 교육 인력’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상 별도 규정이 없고, 앞서 “등”자에 이를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 예능학과 교수, 예능과목 교사, 예능학원 강사 등 직무상 예술교육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예술 교육 활동이 예술 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광의의 예술 활동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이 그룹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 다만 창작예술가나 실연예술가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예술 교육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창작’ 및 ‘실연’이라는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정도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1]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에서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 조제1항 제1호의 개정을 통해 ‘예술’의 범위를 좀 더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예, 디자인, 연예, 예술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의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활용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세부 직업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표준직업분류상 예술인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분류를 예술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1〉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을 활용한 예술인 직업 예시

구분	직업 그룹	표준직업분류(세세분류)	예시 직업
창작 예술가	작가	방송작가(28111), 작가 및 평론가(28112),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28119), 번역가(28120)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 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 작가, 작사가, 코미디 작가, 문학 번역가, 영상 번역가, 게임 시나리오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
	화가 및 조각가	화가(28411), 조각가(28412), 서예가(28413), 만화가(28431), 만화영화작가(28432)	화가, 조각가, 서예가, 단청원, 탕화원, 회화 복원가, 조각 식각가, 식각사,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가	사진작가(28421), 사진가(28423)	사진작가, 사진가 *사진기자 제외
	건축가	건축가(23111)	건축가, 건축사
	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28511), 가구디자이너(28512), 그 외 제품 디자이너(28519), 직물디자이너(28521), 의상디자이너(28522), 액세서리디자이너(28522),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28524), 인테리어디자이너(28531), 디스플레이어(28532),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28533), 광고디자이너(28541), 포장디자이너(28542), 북 디자이너(28543), 삽화가(28544), 색채 전문가(28545), 활자디자이너(28546), 웹디자이너(28551), 멀티미디어 디자이너(28522), 게임그래픽 디자이너(28553)	*디자이너 안에서 범위 재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
	공예가	도자기 공예원(79111), 조화 공예원(79112), 목 공예원(79113), 석 공예원(79114), 양초 공예원(79115), 종이 공예원(79116), 그 외 공예원(79119), 귀금속 세공원(79121), 보석 세공원(79122)	*공예가 안에서 범위 재설정 문제는 추후 검토
	작곡가	작곡가 및 편곡가(28452)	작곡가,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
	안무가	무용가(28471)	안무가
실연 예술가	무용수	안무가(28472)	발레 각색가, 무용수, 발레무용수, 대중 무용수, 백댄서
	연주가 및 성악가	연주가(28453), 가수(28461), 성악가(28462)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가수, 합창단원
	감독 및 지휘자	감독 및 연출가(28311), 지휘자(28451)	연극 연출가, 영화감독, 방송 프로듀서, 공연장 예술감독,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배우	배우(28321), 개그맨 및 코미디언(28322), 성우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구분	직업 그룹	표준직업분류(세세분류)	예시 직업
		(28324)	개그맨, 만담가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국악인(28441), 국악 연주자(28442), 국악 작곡 및 편곡가(28443), 전통예능인(28444)	국악 작곡가, 국악 편곡가,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자,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 *전통 무예인은 제외
	기타 실연예술가	마술사(28991),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종사원(28999), 모델(28323), 그 외 배우 및 모델(28329), 보조 연기자(28394)	곡예사, 마술사, 비보이, 모델, 보조연기자
기술 지원등 예술지원인력	기획 스태프	이벤트전문가(27352), 행사 전시 기획자(27352), 감정사(27412), 예술품 중개인 및 경매사(27443), 큐레이터(28211), 연예인 매니저(28912)	공연 대리인, 전시기획자, 미술품 감정사, 예술품 중개인, 예술품 경매사, 화랑 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기술 스태프	기술감독(28312), 촬영기사(28340), 음향 및 녹음 기사(28350),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28360), 조명기사(28371), 영상기사(28372)	편집감독, 조명감독, 촬영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 촬영기사, 영상기사, 조명탁조정원, 녹화기사, 편집기사
	그 외의 예술 스태프	무대의상 관리원(28391), 소품 관리원(28392), 방송영화연출 보조원(28393), 특수분장사(42242), 분장사(42243), 입장권 판매원(52123)	무대의상관리자, 소품담당자, 연출보조원, 분장사, 무대가발 담당자, 특수분장사, 입장권 판매원

제2절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

1.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정의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정의의 특징은 업(業)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업(業)’이란 ‘생업’의 의미로서 그 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예술인은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적인 직능(skill)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전문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화된 자격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직업 집단으로서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편임.

- 예술 활동은 근원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본성으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나 자격이 없어도 스스로를 예술인이라 부를 수 있고, 또 실제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도 있기 때문임.
- 핀란드에서 오랫동안 예술가 지위에 대해 연구해 온 사리 카투넨(Sari Karttunen)도 예술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한 글에서 예술가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예술가를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심지어는 정치적이기조차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선택된 정의가 가져올 치우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함. (Sari Karttunen, 1998:16-17).
-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예술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자기 정의와 타인의 정의,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 직업 기준과 산업 기준 등이 활용되고 있음(양중희, 2005:528).
- 직업으로서 예술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로는 프라이와 포머레네(Frey and Pommerehne)의 정의를 들 수 있음.
- 프라이와 포머레네는 저서 『예술과 시장(Muses and markets)』(1989)에서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을 정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p>① 예술 활동에 투입한 ‘시간’의 양(A mount of time devoted to artistic work)</p> <p>② 예술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Earnings from artistic work)</p> <p>③ 일반 공중으로부터 얻은 예술인으로서의 ‘평판’(Reput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p> <p>④ 다른 예술인들에 의한 인정(Recognition among other artists)</p> <p>⑤ 생산된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Quality of artistic work)</p> <p>⑥ 전문 예술인 단체나 협회 등의 구성원 자격(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rtists’ group or association)</p> <p>⑦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특히 교육 관련 자격증)[(Professional qualifications (especially educational credentials)]</p> <p>⑧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평가’(Subjective self-identification as an artist)(Bruno S. Frey and Werner W. Pommerehne, 1989:146-147)</p>

- 이 가운데 ①과 ②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 요소로서 생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투입한 시간의 양(①)과 그를 통해 얻게 된 소득의 양(②)은 흔히 센서스나 직업 통계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음.
- 공중의 평판(③)과 다른 예술인에 의한 인정(④), 그리고 생산된 예술 작품의 수준(⑤)은 예술인 단체나 협회의 구성원 자격(⑥)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계량적 측정 요소는 아님.
- 예술인이 예술 관련 협회의 가입 자격(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예술인들의 인정(④)이나 공중으로부터의 평판(③)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정이나 평판에는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⑤)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평판이나 예술 작품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예술인 정책에서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전문적인 자격(⑦)은 예술계 학교나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이나 훈련 성과를 입증하는 졸업장이나 수료증과 같은 '인증서'로서 그 자체가 전문 예술인 여부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제도를 통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 스스로의 자기 평가(⑧)는 가장 주관적인 성격의 기준으로서 예술인 관련 설문조사에서만 활용되고 있음. 그렇지만 예술 활동과 같이 자율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자기 평가야말로 제도적 틀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예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1980)」에 제시하고 있는 예술인 개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 예술 관련 협회 등이 입회 자격을 개방적 구조로 가져가는 경우 ⑧의 자기 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예술인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목표로 하지 않고, 특정한 용도나 목적 아래 시도된 실용적인 예술인 정의의 사례로는 이파카(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예술 정책 보고서 「세금 및 급여 관련 예술인 정의」가 대표적인 것임.
- 이파카 보고서는 세계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그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예술인 정의는 국가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예술인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국가들 사이에, 심지어는 국가 내에서도 다르며, 유럽연합 안에서도 일치된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
 -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국가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문 예술인에 대한 실용적 정의로서 국제 공통의 접근방식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음 (IFACCA, 2002:4).

① 멤버십을 통한 정의(Definition through membership) : 공인된 예술인 협회(예, 전문예술가협회)의 멤버십을 통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경우. 1992년 발효된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 법’(제18조)에서 독립 예술인의 직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예술인협회에의 가입 여부이다.

② 위원회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committee) : 전문가나 동료 예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예술인으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 네덜란드에서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예술인의 소득 규정에 관한 법’을 적용 받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해 결정하며, 멕시코에서는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금 대신 예술 작품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③ 당국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uthority) : 세무 당국이 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아일랜드의 예술인 면세 제도에서는 세무당국이 예술인의 자격을 결정한다.

④ 예술적 산출물(작품)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association with artistic output) : 예술 작품, 저작물 등 예술적 활동의 산출물에 의해 예술인을 정의하는 경우. 이 경우 예술인이라 예술(예술작품, 저작물 등)을 만들어 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의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연예술인보다는 창작예술인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⑤ 예술 활동의 본성에 의한 정의(Definition by the nature of arts activity) : 예술인에 의해 수행되는 예술적 활동이 ‘비즈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었을 때, 직업적인 예술가로 간주하는 경우. 이 경우 중요한 판단은 예술 활동의 목적이 영리 획득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하는 것들이다.

- 현실의 제도 속에서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성이나 경력을 입증할 만한 주요 기준으로는 일반 공중에 의한 예술인으로서의 평판, 동료 예술인에 의한 인정, 예술적 직업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의 양, 예술 활동에서 얻게 되는 소득의 양, 예술 활동의 직업적 성질,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 예술 관련 전문단체의 가입 유무, 스스로의 예술가 의식 등이 될 수 있음.
- 직업으로 예술인이라 예술 활동에 투여한 시간이나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 외 일반 공중의 평판이나 동료에 의한 인정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술 활동 실적의 양적 질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음.

2.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의 기준

가.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정의에서는 ‘업(業)’으로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를 뒤집어 보면 증명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실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다른 직업 집단과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에 의한 수입의 양 또는 그 수입의 획득을 위해 투여한 시간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만 예술 활동의 특성상 그러한 기준을 일괄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예술 장르나 직무 특성에 따라 시간이나 수입, 실적 등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준점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요소의 기준점을 제시하되,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에는 예술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을 다른 직업 집단과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실용적인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술인이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①예술 활동의 수입, ②예술 활동(작품) 실적, ③예술 활동 관련 자격 획득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적정한 기준을 찾아보기로 함.

나. 예술 활동 수입에 의한 증명 기준

1) 예술 활동 수입의 개념과 종류

- 예술인의 수입은 ①간헐적인 수입, ②적은 수입, ③수입원의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짐.
 - 예술인의 예술 활동 수입이 간헐적인 것은 예술인의 취업 형태가 단속적(斷續的)인 데서 기인함. 국공립 예술단체 등 고정된 급여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임.
 -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것 외에 전반적으로 예술 활동 수입이 적은 것도 특징임. 전체 예술인의 38.7% 정도가 예술 활동 수입이 전혀 없었고, 수입이 있다 해도 월 100만원(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26.3%에 달하고 있음.(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또한 예술인의 40% 가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 활동 이외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 활동 수입을 통한 예술 활동의 증명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수입 가운데 예술 활동 수입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가 관건임.
- 예술인의 개인 수입은 ‘예술 활동 수입’과 ‘예술 관련 수입’, 그리고 ‘비예술 수입’의 셋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예술 활동 수입이란 작품 창작이나 실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원고료나 인세, 작품 판매수입, 출연료 등이 여기에 해당함.
- 예술 관련 수입이란 예술 관련 강의 등 예술과 관련이 있는 제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강의료·자문사례비 등이 이에 속함.
- 다음으로 비예술 수입이란 예술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 일체를 말함.

예술가 개인 수입 = 예술 활동 수입 + 예술 관련 수입 + 비예술 수입
--

- 예를 들어 공연이 없을 때는 바텐더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연극배우의 경우, 공연에서 얻은 출연료는 예술 소득에 해당하고, 바텐더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은 비예술 소득에 해당하며, 그가 만약 예술강사로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그 사례비를 받았다면 그것은 예술 관련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예술가의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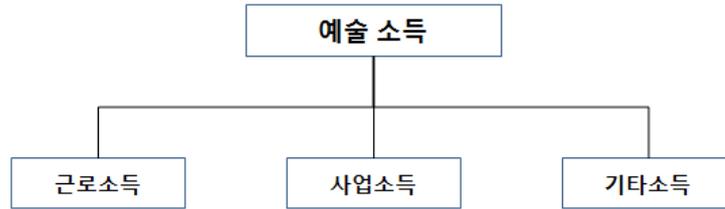
〈표 3-2〉 예술인의 소득 분류(예시)

구분		예술 활동 수입	예술 관련 수입	비예술 수입
창작예술가	작가	인세, 원고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화가	작품판매금, 전시참여사례금, 전속계약금,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작곡가	작곡료, 음원사용료, 전속계약금,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실연예술가	무용가	전속계약금, 출연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배우	전속계약금, 출연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가수	전속계약금, 출연료, 음반 및 음원판매료,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연주가	공연비, 전속계약금, 음반판매, 지원금, 상금	강의사례비, 교습비, 심사사례비 등	예술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

2) 국내 세제에 따른 예술소득의 종류

-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구분됨.
- 이 가운데 예술 활동에 의해 얻어진 수입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예술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그림 3-2] 예술 활동에 의해 얻은 예술가의 소득 구분

- 예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는 실연예술가가 직업적 예술단체에 단원으로 소속(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관계없음)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급여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경우, 이 예술가의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법 제20조).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예술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예술단체 등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나 자영예술가가 사업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이에 해당함(소득세법 제19조).
 - 그러나 사업소득에는 사업체의 운영에서 얻어진 소득이므로 그것을 좁은 의미의 예술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생략)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개인 예술가들의 예술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예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의 원고료, 인세, 작품 판매 수입 등의 예술 활동 수입이나 강연료, 심사사례비, 자문사례비, 용역 사례비 등 예술 관련 수입이 여기에 속함.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생략)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2011.1.1>

3) 국세청 소득신고에 의한 예술 활동 수입의 증빙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혹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증빙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됨.
 - 이외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세무당국에 신고되므로 그 신고된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그런데 한 예술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예술 소득과 비예술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
 - 근로소득의 경우, 전문 예술 단체 혹은 기관에 근무하는 예술인이 임금으로 지급 받은 근로소득은 모두 예술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예술 활동 참여 관계가 명기된 프로그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창작예술가나 실연예술가로 활동한 근거가 있고, 업종 분류상 전문 예술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 전부를 예술 소득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 국세청의 업종코드 분류에 따르면 예술 사업은 중분류 '92.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의 소분류 '921.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 산업'에 분류되어 있음.
 - 예술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사업체만을 선정하여 업종코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예술 단체로서 분류되는 업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악극단, 극단, 일반영화제작업의 네 가지뿐임.
 - 향후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 사업으로 예술분야 업종코드 정비, 구체적으로는 업종코

드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함.

- 그리고 그 후속 작업으로 국세청의 협력으로 매년 예술 사업체로 등록된 사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한다면, 예술단체에 근무하는 예술인의 예술 소득 파악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임.

〈표 3-3〉 국세청의 업종코드에 따른 예술 단체

(단위 : %)

코 드 번 호	종목 (세세분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92130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 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90.1	32.4
921402	악 극 단	·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인 상대 흥행활동 포함)	94.3	36.2
921403	극 단		96.7	36.2
921502	일반영화 제작	· 일반 영화 제작 -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 (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 - 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의 비디오필름 제작, 복제	89.0	27.8

* 출처 : 국세청(2009), 『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 책자(업종코드)』

○ 다음으로 사업소득을 보면 예술 단체 경영자가 얻는 사업소득은 예술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개인 작업을 하는 자영예술가의 경우 국세청 신고 소득을 예술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국세청의 업종분류에 의하면 중분류 '94. 인적 용역', 소분류 '940. 인적 용역'에 8개의 세세분류 업종이 자영예술가로 분류되어 있음.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 할지라도 작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배우 및 탤런트 등(코미디언 포함), 모델, 가수, 성악가 등(무용가, 연출가 포함), 연예 보조 서비스가 독립적인 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은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예술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자영예술가의 경우,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 사업으로 국세청 업종코드에 좀 더 세부적인 예술인 분류 체계를 반영한다면, 개인의 예술 소득 증빙은 물론이고 국세청을 통해 개인 예술가 소득 현황 전반에 관한 자료도 획득할 수 있을 것임.

〈표 3-4〉 국세청의 업종코드에 따른 자영업자의 분류

(단위 : %)

코 드 번 호	종목 (세세분류)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940100	저술가	· 작 가 ○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69.2	56.9	37.6
940200	화가 및 관련 예술가	· 화가 및 관련 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73.6	63.0	24.7
940301	음악가 및 연예인	· 작 곡 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 각색영화편집	74.5	64.3	39.8
940302		· 배 우, 탤런트 등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56.1	38.6	26.4
940303		· 모 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59.9	43.9	26.4
940304		· 가 수 ○ 가수	62.8	47.9	28.1
940305		· 성악가 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자,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68.4	55.8	29.8
940500	연예보조 서비스	· 연예보조 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79.3	71.1	32.9

* 출처 : 국세청(2009), 『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 책자(업종코드)』

- 개인의 기타소득액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렇지만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타소득의 종류 가운데 ‘예술 소득’을 따로 구분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
 - 그렇지만 원고료나 인세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출판사나 잡지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자 상호만으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미술작품의 경우 음성적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술작품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당사자인 예술인이 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미술 작품 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사본을 건별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 외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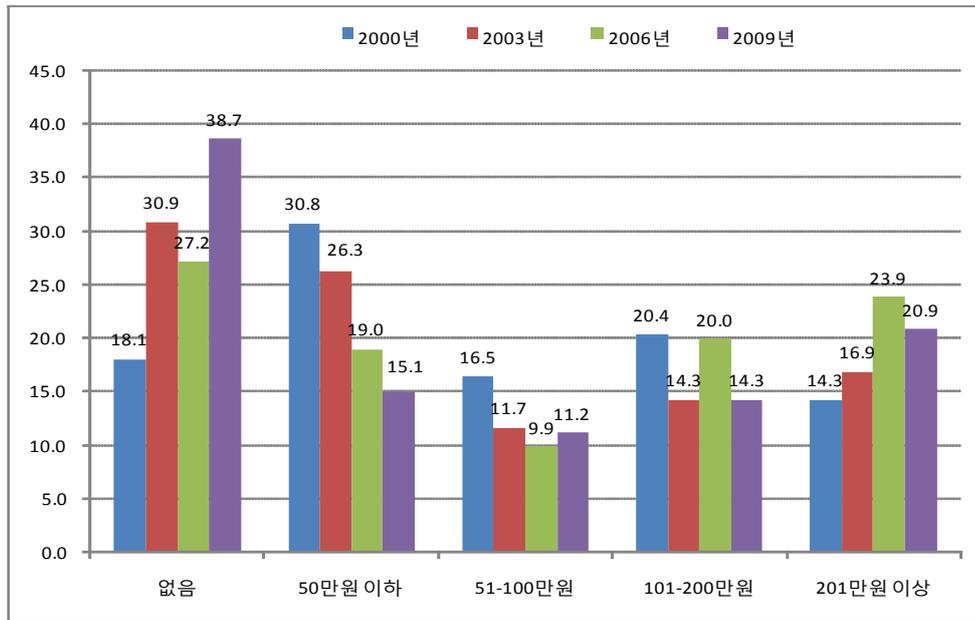
4)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 수혜 실적에 의한 수입의 증빙

-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문예진흥기금이나 국고 보조를 받은 경우는 그 자체가 개인 예술가의 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전액 예술 활동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개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단체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에 참여한 개인별 지원금 수혜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단체에 기금이 지원되고, 그 단체에서 출연수당 등을 받게 되는 개인 예술가의 경우 별도의 증빙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단체에서 기획한 프로젝트가 기금이나 국고 등 공적 재원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건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 받은 개인 예술가에게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에서 해당 단체에 발급하는 '지원사실확인서'(단체용)를 함께 구비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임.
- 이 부분은 기금이나 국고 보조금 지급시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하고 DB 시스템을 개선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예술가의 소득 증빙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예술 활동 수입의 증명 기준

- 수입액을 기준으로 예술인 증명을 하고자 할 경우 최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함.
-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월액이 957,220원(주 40시간 기준)이므로 연간 11,486,640원이며, 단순히 수입을 기준으로 직업성 유무를 판별한다면 최소 연간 1,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수입'은 절대 수준이 극히 낮은 편임.
 - 2009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서 얻은 월평균 수입액을 살펴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8.7%나 되었음.
 -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5.1%, '51~100만원'인 경우가 11.2%로 수입이 있다 하여도 전체의 26.3%가 월 100만 원 이하에 해당
 - 월 101만 원 이상인 경우는 35.2%에 불과하였음('101~200만원'14.3%, '201만 원 이상'20.9%).
 -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기준 시점인 2008년도 월 최저임금액이 787,930원(주 40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수입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부터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없음'이 2배로 증가한 반면 '50만 원 이하'가 2배로 줄어들었고, '51~100만 원 이하'도 큰 폭의 하락 추세를 보여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수입은 전반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함.



*출처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0~2009에서 재구성. 무응답자 제외

[그림 3-3] 우리나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수입 추이

- 따라서 예술 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예술 활동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월수입액을 101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전체 예술인의 64.8%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예술 활동 수입의 특성을 고려 그 기준액을 대폭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이 불규칙하고 낮다는 점에서 ‘예술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사람”(제3조 제1항 제2호),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사람”(제3조 제2항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직업 집단과 비교할 때 매출액 기준 120만원은 매우 낮은 금액이지만, 당해 연도에 해당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소 기준으로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의 경우에도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사람이 38.7%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최저액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어업인의 사례를 준용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을 정할 경우 “연간 예술 활동 수입 120만 원 이상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농어업인은 ‘계절적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입이 불규칙하긴 하지만

매년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술인의 경우 연단위로 보았을 때도 불규칙한 수입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즉,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전혀 없는 해도 있을 수 있음.
- 예술 활동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연간 수입 12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최근 3년간 수입 360만 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3년 중 어느 한 해에 36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다른 2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보다 완화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예술 활동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기간 개인 총수입 가운데 예술 활동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경우에도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 경우 개인 총수입이 3년간 720만원(연간 240만원) 이하의 저소득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에게도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다. ‘예술 활동 실적’에 의한 증명 기준

1) ‘예술 활동 실적’의 개념과 의미

- 그런데 예술인들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경우에도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예술 활동 수입만으로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 여부를 증명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술 활동이 전혀 없지만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 범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앞의 ‘예술 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한 예술 활동 증명 방안 외에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이 필요함.
- ‘예술 활동 실적’이란 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로서 흔히 ‘예술 작품’ 등의 성과물로 나타나게 됨.
 - ‘예술 작품’이란 예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개인이나 사회의 예술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정신적 풍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결과물을 의미함.
 - 다만 취미나 오락으로 하는 예술적 활동의 결과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런데 ‘예술 활동 실적’을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예술인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중에게 공개된 결과물로 한정할 필요

가 있음.

- 전통적으로 문학은 ‘출판(出版)’을 통해서, 공연예술은 ‘공연(公演)’을 통해서, 시각예술은 ‘전시(展示)’를 통해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방송(放送)’이나 ‘전송(電送)’ 등의 방식으로도 예술 활동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만약 어느 화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지만 하고 ‘전시’를 하지 않았거나 시인이 자신의 노트나 컴퓨터에 작품을 창작하여 저장하여 놓은 경우에는 공개된 ‘예술 활동 실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공개된 ‘예술 활동 실적’이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표(公表)’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연·전시·공중송신·발행 등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공표의 세부 방법으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발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에 의하면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되어 있음.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술 활동 실적의 증명 기준

- 「예술인 복지법」의 수혜 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인정 여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의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을 건수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
 - 예술의 정의나 예술 활동의 범위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
 -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을 위한 실용적 기준으로 객관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개된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개별적인 예술 활동의 건수를 증빙하는 방식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프로그램, 영화나 드라마 등의 경우 엔딩 크레딧, 문학의 경우 발표된 매체나 출판된作品集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기준은 ‘경력자’가 아닌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소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소한 1년 동안 1건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현직’을 나타내는 방식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나 예술 활동의 경우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그 산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적 활동을 특성으로 하는 배우, 연주자 등 실연예술가는 3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술 활동 실적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화가, 소설가 등 창작예술가는 산정 대상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산정
 - 다만 양적 기준에서는 ‘1년 동안 1건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되, 실연예술가는 ‘3년 동안 3편 이상’, 창작예술가는 ‘5년 동안 5편 이상’으로 대상 기간만 확대된 기준을 적용
 - 이는 1년 1건 이상이라는 양적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대상 기간 동안 합산 실적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는 1년 1건 이상보다 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3년 동안 3건 이상보다는 5년 동안 5건 이상이 더 완화된 기준의 효과가 있음.
 - 1차년도에 3건이 충족되는 경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다만, 문학作品集, 개인전, 음반 등 여러 작품이 엮여 있는 실적의 경우에는 그 기준량 자체를 낮추어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5년 동안 1권 이상’의 실적이면 개별 작품 ‘5년 동안 5건 이상’의 실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연극이나 영화의 연출, 음악회의 지휘 등 활동량 자체가 많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량 자체를 낮추어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실적 산정 대상 기간 내 1건 이상의 실적으로 완화

3)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수혜 실적에 따른 기준

-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 예술 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조의 경우 국고, 지방비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복권기금, 토토적립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다양한 재원이 운용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재원에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대부분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 경력을 요구하므로 수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예술 활동 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특히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은 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소정의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므로 이미 객관적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공적 재원을 받아 수행한 예술 활동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관으로부터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증빙 가능
 - 지원 기관에는 국가(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이 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증빙 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경우 개인 예술가는 35,000여 명, 단체는 25,000여 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 단 공연과 같이 단체 단위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프로젝트 참여자는 별도의 증빙 과정이 있어야 함.
 - 한 편의 공연에 참여하는 인력은 배우나 연주자, 무용수 등 출연자만이 아니라, 연출이나 안무, 음악, 미술, 조명, 음향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인력군이 있음.
 - 다만 공적 재원에 의한 지원 체계에서는 개별 인력의 참여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
 - 단체 단위로 해당 프로젝트가 공적 재원 수혜 프로젝트임이 확인되고, 개별 예술인이 그 프로젝트 참여자임이 확인되면 동일한 수준에서 실적으로 인정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의한 증빙 기준

- 대부분의 창작예술가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에 해당하며, 창작 예술가가 생산한 예술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저작자가 창작예술가에 해당하지는 않음.
- 또한 대부분의 실연예술가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에 해당하며, 실연예술가가 참여한 예술 작품과 관련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음.
- 「저작권법」 제4조에 제시된 9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예시 가운데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은 예술 저작물

에 해당하고,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비예술 저작물에 해당함.

- 같은 법 제4조 제1호의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서 논문, 강연, 연설 등의 저작물은 예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보다 상세한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과 제7호 서식에 ‘분류표’가 제시되어 있음.

○ 한편 「저작권법」 제53조와 제90조에 의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저작권법」 제53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저작권의 등록 시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居所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저작권등록부 및 저작인접권등록부에 의해 관리되고, 신청인에게는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인접권등록증이 발급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은 ‘공표’되기 이전의 저작물(창작 시점 기준 등록 가능)도 일부 포함되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일단 등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그 권리가 사후 50년까지 지속되므로 별도 대상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 3건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등록신청 후 발급되는 저작권등록증이나 저작인접권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통해 그 증빙도 매우 간편하다고 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5호 저작권등록증과 제27호 저작인접권등록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2.2>

제 호

저작권등록증

1. 저작물의 제호(제목)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 성명
(법인명)
4.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5. 창작연월일
6. 공표연월일
7. 등록사항
8.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7.24>

제 호

저작인접권 실 연 자
 음반제작자 등록증
 방송제작자

1. 저작인접물의 제 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저작인접권자 성명(법인명)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5. 등록사항
6. 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라. 자격에 의한 증명 기준

- 예술 활동은 본성 때문에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는 성립할 수 없음.
- 다만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자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예술학과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직업으로서 ‘예술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예술인’의 정의 가운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은 「공연법」 제14조에 근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부여됨.
 - 무대예술전문인의 종류는 무대기계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이 있으며, 기술 지원 스태프에 해당함.
- 그런데 ‘무대예술전문인’의 대부분(특히 2급과 1급)은 예술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경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격에 의한 실적 증명의 방식은 추후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활용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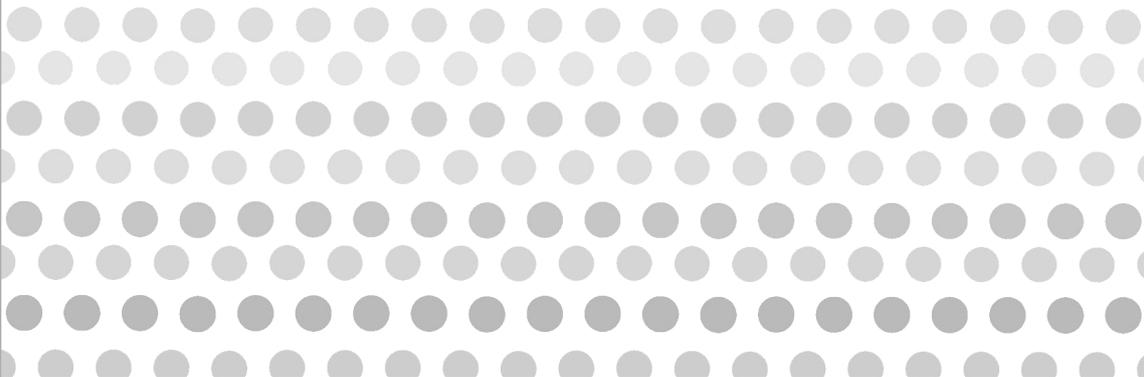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제1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방안

제2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

제3절 운영 예산 및 자원 조달 방안



제1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방안

- 2011년 10월 28일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년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한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들의 사회 보장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 현행 법제도 내에서 예술인의 법적 지위는 열악한 상황임.
 - 예술활동이 국가의 문화·사회·경제·정치 등 모든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지위와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 4대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 근로시간과 작업장이 보장된 근로자 위주의 제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인의 직업활동은 일반 근로자처럼 ‘고정된 직장’이 있지 아니하고, 단속적(斷續的) 고용 관계 등 특수성이 강함.
 - 때문에 기존의 4대보험 제도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대다수 예술인들은 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취업상태는 ‘무직·은퇴’ 23.8%, ‘자유전문직’ 26.4%, ‘자영업·고용주’ 16.4%, ‘임시 고용직’ 10.4%, ‘정규 고용직’ 23.0%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의 4대보험 가입비율도 건강보험(의료보험) 98.4%, 국민연금 59.2%, 산재보험 29.4%, 고용보험 28.4%로 나타남.
 - 이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스태프 등 많은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들이 사실상 정부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조각가 구본주, 작가 최고은의 사례는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으로부터 누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자 「예술인 복지법」 제정 촉구의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사례들은 예술가의 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함.
- 이에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고도 함)을 설립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법의 시행은 재단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과 집행의 주체이자 책임지는 존재임.

- 재단은 예술인들이 해당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운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님.
 - 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재단의 역할을 바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예술인들에게 복지지원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 더불어 예술인들의 근로환경과 창작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재단 관계자, 정책 결정자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함.
-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술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 준비기간과 설립 초기에 관련 분야 예술인, 예술 단체(협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함.
 -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각 예술분야별 단체(협회) 실무관계자나 회원,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실적인 고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재단 복지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예술인들이 직업유무, 소속, 그리고 소득의 차이로 인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발전적 논의와 실천을 통해 예술인들은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예술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재단은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확충해야 함.
- 재원마련 방안은 물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1. 미션과 비전의 설정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을 설정하기에 앞서 설립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과 그 ‘효율적 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효율적 운영’이란 기능적인 면에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규정하는 표현이므로 결국 ‘예술인

복지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필요로 함.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설립 목적은 법 제10조의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인 복지'의 실현을 주된 임무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예술인 복지법」의 실행 주체는 국가이며, 재단은 그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목적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은 직접적으로 ①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②예술인 복지 지원을 하며, 궁극적으로 ③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④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법 제정 목적 가운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①과 ②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 목적 가운데 ①과 ②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목적은 예술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이라는 국제규약(A규약)과 예술인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대한민국헌법(제34조 제2항)이 지향하는 가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라 함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약칭 A규약)에서 정립된 것으로 통칭 사회권이라고도 함.
 -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맥락을 같이함.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인 예술인에 대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추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 설정에는 재단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재단 존재성을 드러내는 핵심 가치가 잘 반영되어야 함.
- 또한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 타깃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표 4-1〉 미션을 만들기 위한 사전 질문 예시(아름다운재단)

-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들은 무엇인가?
- 우리 조직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인가?
- 우리 조직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 누가 우리의 미션기술서의 청중인가?
- 우리 조직만이 제공하는 특화된 혜택은 무엇인가?
- 무엇이 우리 조직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 출처 : 정현경, 『모금을 디자인하라』, 2010.

- 앞서 살펴본 바대로 재단의 설립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방향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본 임무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목적에서 찾아야 함.
- 네 가지 제정 목적 가운데 예술인 복지사업의 실행 기구로서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본 임무는 ①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②예술인 복지 지원의 두 가지 목적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③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④예술 발전에 이바지라는 목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의 고유한 목적이라기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공유해야 할 일반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미션 설정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는 공공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재단의 중장기 비전은 “모든 예술인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정적 생활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음.
 - 모든 예술인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별, 인종별 차별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한다는 의미
 - 안정적 생활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은 물론 다양한 생활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 활동만으로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예술인의 사회 기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의미
 - 선진 복지국가의 실현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특정 직업 집단으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통해 예술인 복지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는 의미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적 성격 및 기능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적 성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근거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해당함.

〈표 4-2〉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는 것은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일반법인에 해당하고, 특별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이 특수법인에 해당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므로 특수법인에 해당
- 특수법인은 국가가 정책 집행상 필요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로서 적정 수준의 업무 감독을 전제로 설립된다고 할 수 있음.
- 특수법인 자체가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함으로써 순수한 민간조직도 아니므로 중간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조직보다는 업무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책임성에 있어서는 정부조직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 받는다고 할 수 있음.

〈표 4-3〉 특수법인의 특성 개관

구분	내 용
정의	특수법인은 국가가 그 행정작용에 속하는 국책적·공공적인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단독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³⁾
목적	특수법인은 원래는 국가 자신이 행하여야 할 공공적, 공익적 사업을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
임무	국가는 어떤 공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하지 않는 대신, 각종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특수법인에게 당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기기도 함.
조직법 체계	특수법인제도는 민영화에 수반하는 사업의 효율화(자유의 확보)와 국가의 직영에 의한 업무실시의 확실성(규율 내지 제한)과의 사이에 그 장점만을 제도적으로 채용하는 현대형 조직법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조직과 운영	조직과 운영상의 중요한 부분은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 등에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임원은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음
운영비용과 자원	특수법인은 국가가 행하여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자금,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또한 기금모집, 경비징수 등에 있어서 법령상의 특전을 부여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규정	설립조건 면에서 특수법인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보다 공익상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설립 근거법률에서 설립목적·운영재원·목적사업·이사 및 정관의 필요적 기재요건 등에 있어서 민법보다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201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법 제8조 제4항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줌.
 - ‘재단법인’은 공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사단법인’과 달리 ‘회원’에 의해 운영되지 않음.
 - 재단법인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재단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확정된 ‘정관’을 토대로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재단법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 목적 및 그 실현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이므로 「예술인 복지법」에 재단의 ‘정관’의 주요 내용과 ‘사업’,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능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하게 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핵심 기능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3)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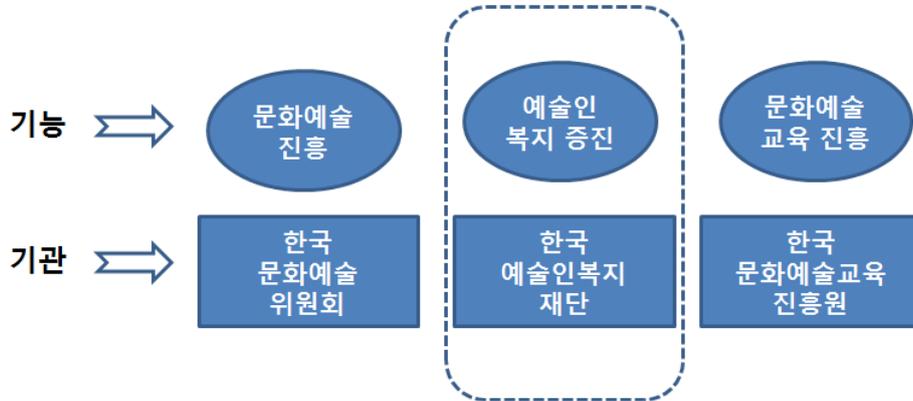
-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예술인 복지 정책’의 개발 및 계획의 수립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부에 의해 기획된 예술인 복지 정책의 일부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책 대행기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수립과 관리의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고, 재단은 그 정책 사업의 일부를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이와 유사한 위상을 가진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창작 지원 정책과 문화복지 정책 관련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단체의 예술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정부 정책을 담당하면서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을 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예술교육과 등임.
- 예술인 복지 정책의 경우 현재는 예술정책과가 주무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도 담당하게 되어 있음.
-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별도의 ‘예술인복지과’가 설치되어 운영될 수도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부의 예술인 복지 정책 개발을 지원하면서 현장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

〈표 4-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사기관 현황

법인·기관명	설립 목적	법적형태	설립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적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특수법인	197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 국민이 일상적 삶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06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기관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국제교류, 인력양성, 정보지원, 컨설팅 분야의 다양한 매개지원 사업을 추진	재단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06

- 핵심 기능은 명확히 구분되지만, 정책 수혜 대상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상호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므로 ‘예술인’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중첩이 발생함.

- 그러나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기능, 각 기관에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정책 서비스의 종류가 확연히 다르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기능 설정 및 사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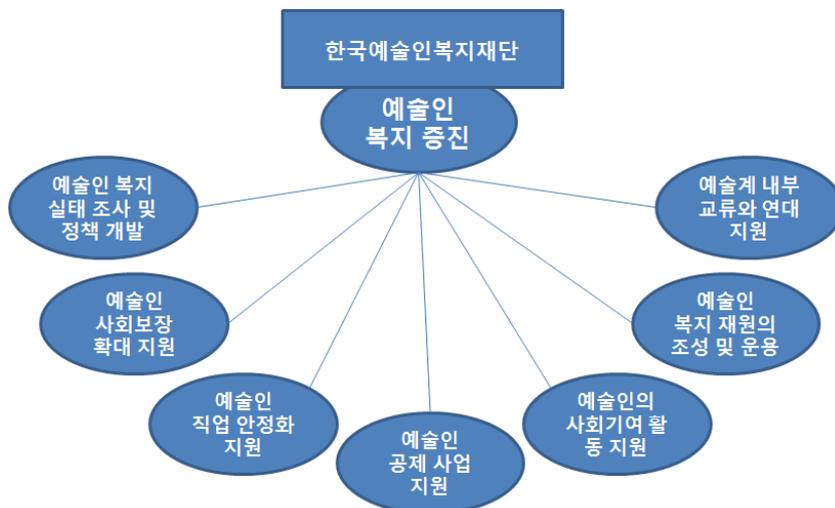


[그림 4-1]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핵심 기능 비교

-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정책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을 토대로 하위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체가 연구기관의 기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예술인이 가진 직업적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예술인 복지 체계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형 예술인 복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예술인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②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일반적인 사회보장 체계에 보다 많은 예술인이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제도의 경우 ‘근로자’ 지위를 갖고 있는 국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프리랜서가 많은 예술인의 경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함.
 - ③ **예술인 직업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술인의 취업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개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프리랜서형’ 직업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예술인들이 ‘근로자’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공적 지원과 예술인의 직업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발은 예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업 활동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예술인이 프리랜서나 단속적인 방식의 직업 활동에 종사하면서도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④ **예술인 공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형 특수법인으로서 예술인 스스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예술인공제회’와는 성격이 판이하나 현실적으로 ‘예술인공제회’가 별도로 조직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본다면 재단이 ‘예술인공

제회'가 담당할 예술인 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개인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구성하는 '공제회'와 달리 재단에서는 재단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 복지법」에 명시된 '예술인복지 금고'의 운영과 같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공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⑤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활동 활성화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은 공적 자원 및 법적 지원에 의한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인 또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 할 수 있음. 예술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술인의 사회 기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함.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예술 또는 예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예술인에 대한 공적 지원도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음. 사회에 대한 예술인의 책임이 먼저 제시되어야 예술인에 대한 사회의 책임도 강화될 수 있음.
- ⑥ **예술인 복지 재원의 조성 및 운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술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재단 설립 초기에는 공적 자원(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재원의 확보, 특히 예술계 내부에서의 자원 조성을 통한 자생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또한 재단에서는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⑦ **예술계 내부의 교류와 연대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들로 구성된 자구조직이 아니므로 직접 예술계 내부의 교류와 연대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예술인들이 상호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임. 예술계 내부의 협회나 조합 등이 활성화하고 상호 교류 및 연대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예술인의 날'이나 '예술인 주간', '예술인상'의 제정 등 예술계와의 협력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그림 4-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능

제2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

- 「예술인 복지법」은 취약계층이 아닌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목적에 맞춰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으로부터 협조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인 복지를 추진해야 할 것임.
 - 국가가 지원하고 설립하는 재단은 그만큼 정부의 책임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온 복지사업과는 차별화를 지닐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함.
 - 재단 사업과 운영은 기존의 자체 복지재단, 문화예술 관련 법인, 정부 산하 예술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유관 단체, 기관들과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1. 주요 사업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에서는 재단이 수행할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음.
 -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법에서 명시한 재단의 주요 사업에는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예술인 복지 및 근로실태조사,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음.
 - 특징적인 것은 복지금고의 관리·운영과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 대개의 복지재단은 특정계층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와 다르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기존의 복지사업 외에도 복지금고라는 소규모 금융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금융 편의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제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종의 유사 보험업과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함.
- 법 제10조 제2항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고 있음.

〈표 4-5〉 「예술인 복지법」 제4장 제10조(재단의 사업)

<p>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

○ 여기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제시된 재단의 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제안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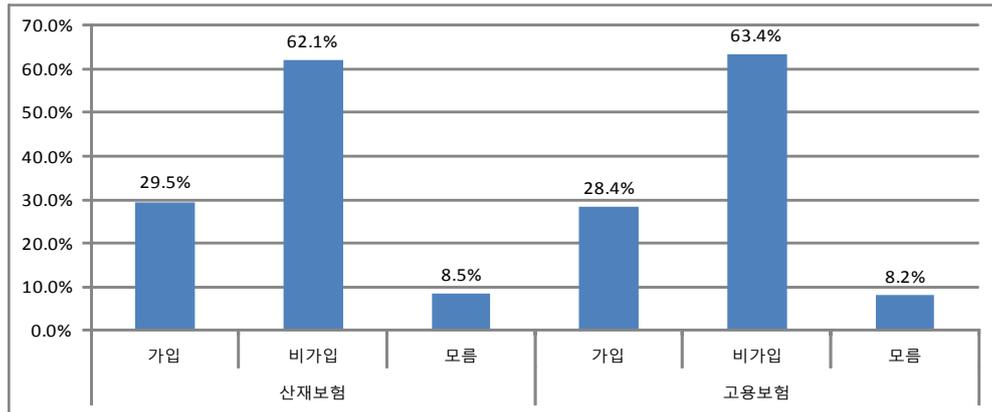
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사업임.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이란 현재 시행중인 사회보장 체계에 보다 많은 예술인이 편입되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함.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많은 예술인들은 직업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4대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 가능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 가능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주로 법제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수입이 낮은 예술인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예술인은 프리랜서가 많고, 일부 고용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적인 경우가 많아서 전체 예술인의 60% 이상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이 가능하므로 제도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문호가 열려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예술인의 경우 가입 유예 등을 통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사회보장제도가 요구하는 자격이 미달한 경우에는 특례를 활용한 자격 부여,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이 유보된 경우에는 보험료 보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예술인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상태임.
- 2009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경우 비가입자가 62.1%, 고용보험은 63.4%로 예술인 세명 중 두 명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허은영(2009),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4-3] 예술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실태

-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사회보험료 보조,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산재보험 관련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재단 내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안)

□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17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음.
-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때문에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함.
-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법 제7조)이 포함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처음 「예술인 복지법」 국회 발의 당시 원안에는 ‘예술인 근로자 의제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방안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산재보험 적용만 통과됨.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 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예술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예술인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 대상으로 함.

〈표 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생략) 1.~ 2. (생략) 가.~라. (생략) <신 설>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임의가입 형식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표 4-7〉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퀵서비스기사 ○ 산재보험 적용방법 : 임의가입 ○ 보험료 부담 :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 적용 ○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

- 예술인의 경우, 출연·도급계약을 통한 단기·중복계약이 일반화되어 있고 계약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 특성상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한 예술인 직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사용자

특정 없이 예술인 스스로 선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임의가입 방식)

- 그러나 임의가입 방식의 경우 일부 위험도 높은 분야를 제외하고 산재보험 가입 동기가 약할 것으로 전망됨.
- 산재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산재보험 제도가 실행되더라도 관련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예술인들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관련 업무대행 기관으로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재단은 위와 같은 산재보험 대행서비스를 통해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들 사이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근로자’ 아닌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이에 대한 예술계의 비판여론이 높음.
 -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을 5만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⁴⁾
 - 주로 공연예술인 즉, 연극·무용·뮤지컬배우·무술연기자 등이 가입하고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도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함.
 -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산재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에 화가나 작가를 비롯한 창작예술인들은 산재보험 관련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함.
- 이처럼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산재보험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모든 예술인에게 통합적으로 가동 가능한 보험이 아니라 일부 특정 예술장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한편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여부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관련 확인 절차를 담당하여야 함.
 -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며, 이 때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자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여부를 확인하게 됨.
- 예술인의 산재보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종영된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가 첫 산재 인정을 받음.
 - 이 사례는 고용노동부에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특례방식의 산재보험 가입 이전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될 수 있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 줌.

4) 아시아경제, 2012.8.17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도입

- 많은 예술인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이 주로 경제적 요인 때문임.
- 사회보험료의 보조는 모든 예술인에게 일괄 보조하는 방식과 저소득 예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조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자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재정 소요가 크고 다른 직업 집단과의 형평성 시비가 클 것이므로 후자의 방식을 우선 제안함.
 - 후자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전액을 보조해 줄 것인지 아니면 부분을 보조해 줄 것인지 구분될 수 있음.
- 또한 4대 보험 전체에 대해 보험료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재정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산재보험 관련 보험료 보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보험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보조

-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도입될 예정인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예술인들이 본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모든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음.
 - 그러나 예술인에 적용되는 특례방식의 산재보험은 100% 예술인 본인부담으로 설정됨.
 - 그 이유는 예술인들은 대개 사업주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여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농어업인들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받고 있으며, 모든 재원이 농어촌특별세를 통한 중앙정부 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 예술인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보조는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수 아이টে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보다는 저소득 예술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임.

〈표 4-8〉 산재보험료 지원 방안(예시)

· 예술인들을 위한 산재보험료는 연소득 1,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임.
 · 저소득 예술인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연 소득 1,200만원의 50% 수준인 6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할 수 있음.
 ·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방식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60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	600만원 이상 ~ 1,200만원 이하 저소득 예술인
이미 소득이 매우 낮은 상태로 복지재단을 통한 지원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 이를 통해 예술인 가구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즉 100만원 단위 또는 200만원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예술인들의 소득과 산재보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사업들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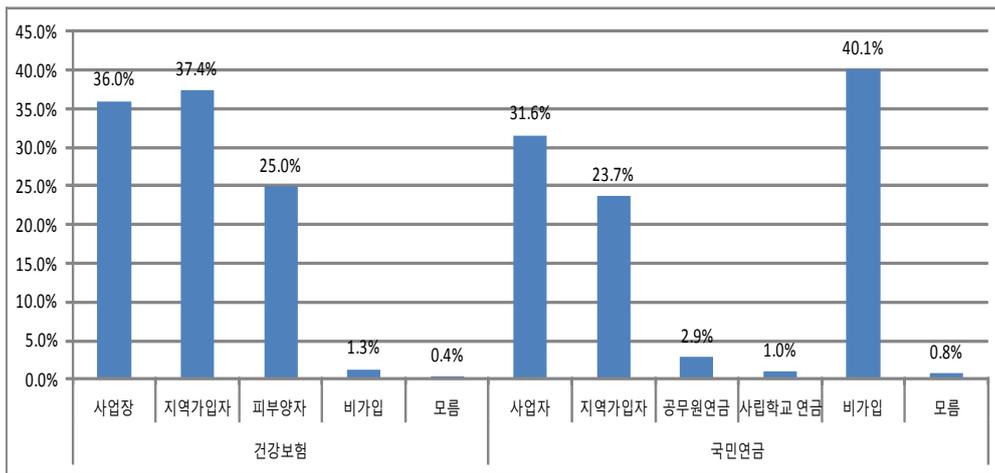
(2) 고용보험료 보조

- 최근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일차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함.
 -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했지만,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있음.
 -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로 본인이 희망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이후 휴·폐업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 법 시행일(2012.1.22)전에 미리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하며,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수준임.
- 많은 예술인들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자영업의 형태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함.
-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자영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준보수 2.25%의 50%인 1.125%를 일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보험료 보조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화 할 수도 있음.
- 향후 법제 개선을 통해 가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보조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보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강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 사회보험제도임.
-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은 많은 자영업종사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유예상태에 있으며, 이외에 전업주부, 학생 등이 적용제외 되어 있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제도 역시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2009년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98.4%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가입형식으로는 지역가입자(37.4%), 사업장 가입자 36.0%, 피부양자 25.0% 등 사업장 가입자 비율이 낮은 수준임.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는 59.2%이었으며, 그 가운데 사업장 31.6%, 지역가입자 23.7%, 공무원 연금 2.9%, 사립학교 연금 1.0%의 순이었음.



*출처 : 허은영(2009),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4-4] 예술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실태

-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많은 예술인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 유예 상태에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비가입 예술인이 40.1%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노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 종사자에 한해 보험료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업종사자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정액지원,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음.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28% 국고 지원, 농어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22% 경감되어 50%를 감면해주게 됨.
 -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의 예산은 농어촌특별세를 통한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약 2,6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건강보험 402천세대, 국민연금 230천명)
- 예술인들에 대한 의료 안전망과 노후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의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낮은 소득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그 방식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용하여 보험료의 일부분을 대납 혹은 지원해주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예술인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외에 여건이 가능함에도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 설계 등 다양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필요
 -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지원, 보험료 납부·관리 및 산재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처리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현행 수준에서의 가입유도 등 민원업무를 수행함.

□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 예술인을 대상으로 작업 중 안전 관리에 대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협력 사업으로 추진
- 공연장, 공연연습장, 시각예술 스튜디오, 음악 스튜디오 등 다양한 창작공간의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공연장 안전진단센터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으로 추진

□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이상의 제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할 수 있게 함.
-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4대보험 보험료 지원과 기타 관련 상담·컨설팅 업무, 민원업무 등 예술인 사회보장 전체 서비스를 담당
- 이외 스튜디오, 작업실과 같은 개인 창작·연습공간 안전진단 매뉴얼 제작, 개인 창작·연습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대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가 있음.
- 콜센터는 재무관리사나 법무상담을 연계하여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접수하고 이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사업임.
- 예술인이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적 노동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도 직업으로서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
- 또한 예술 활동 과정에서 장애를 얻었거나 무용수처럼 직업적 활동 기간이 짧은 분야의 경우 다른 직업으로의 직업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경력 관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안)

□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

- 그동안 예술인들은 단속적 계약, 구두계약, 무계약과 같은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한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연체, 체불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보상받지 못했음.
- 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처한 불합리한 계약방식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써 예술가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표준 계약서’의 보급과 적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함.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작품 창작은 창작활동 시간(연습기간과 공연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연장 혹은 사전 동의 없는 해고나 배역의 변경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작품창작을 위해 노력한 금전적 대가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없고 그 약속에 대한 이행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음.⁵⁾
- 또한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급여대장·취업규칙 등의 작성 지원, 합법적인 임금관리 방안 설계, 합법적인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운영방안 설계 등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무관리 지원 필요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개인 예술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또한 예술인을 위한 각종 계약이나 노무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해결이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 계약 관련 불이익을 당하는 예술인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음. 그 이유로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고 여겨 현실적 순응을 하거나 법적, 행정적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임. 또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과 그 외 문제 제기시 예술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법률 지원 서비스는 예술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 체불임금 요구, 부당한 해고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법무 상담 등의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또한 예술분야에 따라 정년 개념 없이 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가도 있지만, 생애주기 중 일정기간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도 존재함.
 - 이 경우, 다른 직종으로 전환 시 연령이 높거나, 전환을 위한 준비나 정보가 부족하고, 혹은 전환시점이 늦어져 새로운 분야로의 전직이 어려워 질 수 있음.

5) 2008 연극인 실태조사,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08.

- 직업전환 교육은 무용분야에 있어서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이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 교육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영화, 연극 등의 스태프들 역시 예술작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종사자들이 작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직업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직업전환교육과 더불어 교육기간동안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의 하나로 교육비용과 교육기간 동안 생활유지비용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임. 생활비 및 현물지원(교통비, 식비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또한 직업전환 알선 및 상담, 다른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멘토링 서비스 등의 컨설팅 지원이 연계되어야 함.
 - 컨설팅과 취업정보 지원은 직업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음. 단순한 '상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직업전환의 첫 시작이라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영국 DCD(Dancers' Career Development)에서는 무용수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직업전환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 '심리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함. 전문상담사를 고용하여 1대1 상담, 심리측정,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조연자 그룹과의 네트워킹, 인생코칭 세미나 등을 통해 무용수들이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함.⁶⁾
- 직업전환 교육과 컨설팅이 1차적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일자리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예술 직종 일자리 전망 연구 및 예술분야 유망 일자리 박람회 개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4-9〉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에 따른 정책 수단의 구체화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 경로		취업 정보지원 및 컨설팅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지원
재취업	무용계 내	공적네트워크 구축	위탁교육기관과 연계망 구축	재교육 보조금 지원
	무용계 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재교육프로그램 세부정보망 구축	
창업	무용계 내	공적네트워크 구축 직업창출프로그램	창업 교육 지원	창업자금 지원
	무용계 외	부처 간 협업		

* 출처 : 장인주,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2 심포지엄

6) 장인주,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12 심포지엄.

- 재취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 직후 일정기간 집중적인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관련 경비의 부분 또는 전체를 보조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취업알선 및 자격증 취득,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
 - 또한 기업문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이력서 작성양식, 면접방식 등 취업 요령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 새로운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어학, 컴퓨터,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용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 경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도출되는 능력이나 전공을 통해 받아들인 교육 중 새로운 직업군들에 활용가능한 것들을 목록화 하는 한편, 이를 다른 예술 직업 영역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한편 경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완전히 새로운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창업의 경우는 업종분석, 입지분석 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짐.
 - 무엇보다 재정지원, 즉 창업자금에 대한 용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재취업의 경우와 차별화됨.
 - 따라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창업상담을 지원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거나 은행과 연계하여 저리대부의 형식으로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무용수가 재단의 특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특정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처 간 협약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직업 전환과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표 4-1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진행 프로그램

구분	내용
취업지원	- 취업상담 : 온라인상담 - 이력서 / 면접 : 정보제공 - 취업뉴스 : 최신 취업관련 뉴스 제공 - 워크숍 / 특강 : 일정 및 내용 안내, 과정별 수강 - 순회상담 / 구직행사 / 공지 - 제대군인직업정보시스템 ⁷⁾ - 직업심리검사

7) 군특기, 군교육, 사회자격별로 구분하여 제대군인의 직업목록을 검색하여 해당 직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
<http://vnow.vnet.go.kr/>

구분	내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상담 : 온라인 상담 - 사이버교육 : 취업 창업에 필요한 사이버 무료강좌 - 보훈교육연구원 교육 : 전직기본교육 / 소자본 창업교육 - 대학 /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 전국 주요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 직업훈련비 바우처제도 : 민간 사설학원, 공공 직업훈련기관 등에 개인별 수강시 지원 - 직업훈련정보 - 고용노동부 HRD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제공 - 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증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상담 : 온라인 상담 - 창업교육 : 창업워크숍 / 소자본창업교육 - 창업실무 체험 : 생생 성공창업 현장 탐방, 사회적기업 탐방, 업종별 실전체험, 귀농체험, 인턴십 - 창업칼럼 - 창업정보 - 창업자료실 - 소상공인진흥원 연계
선후배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상담 : 12개 분류, 30개 전문분야 온라인 상담 - 취업 창업 성공수기집 - 선후배기고모음

*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경력관리 지원 사업

- 많은 예술인들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예술 분야의 현실에 맞을 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보를 담보로 한 경력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필요
 - 경력 인증은 관련 경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형태이지만 예술인에 대한 경력인증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함.
 - 실제로 연극인 부부가 자녀를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할 때 경력인증이 모호하여 맞벌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생
 - 향후 많은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재단에서는 예술활동 경력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가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본 보고서 제4장 참조)을 구축하여 예술인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이 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 예술인을 위해 일원화된 예술인 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인이 자신의 활동경력을 직접 기록, 관리하여 취업 시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에 기여

- 예술 활동증명 시스템 연계는 경력관리의 편의성을 증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및 공공부문 문화예술 DB와 연계하여 편의성 및 경력사항의 객관성 확보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술인 교육 프로그램 개요

- 예술인 경력 개발, 재교육(역량 강화), 직업 전환 등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하게 함.
- 프로그램 수강 시 교육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출석 확인, 참여도를 비롯한 수강 예술인에 대한 관리 필요
- 교육 프로그램은 예술인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력 개발 및 전환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이론, 워크숍, 실습 등 교육 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실용적, 현장 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직영 방식보다는 위탁·협력 방식이나 교육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운영이 바람직함.

- 교육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유관 기관 프로그램·교육자를 위탁 및 협력하거나, 예술 협회나 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모 신청 등을 통해 분야별 심화 교육 운영 및 교육 수혜자의 폭을 넓힘.
-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시청각 교육실과 같은 적절한 장소선정과 교육인원, 분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고려되고 다양화, 다원화, 분권화된 형태가 적합할 것임.

○ 여러 예술 지원 단체에서 예술인들의 분야별 교육,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영아카데미(①현장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군별 프로그램 강화, ②핵심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 함양)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력양성 및 연수사업,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창의예술학교 및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표 4-11〉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구분	프로그램
예술경영지원센터	교육·컨설팅	-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대상에 따라 기초실무교육, 직무역량 및 경력개발관련 교육 등이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	- 아르떼 아카데미 : 문화예술교육 핵심리더 양성과정, 문화예술교육 기획 연수과정 - 학교·사회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연수 : 학교·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총8개 분야), 사회 예술강사 기본연수(총 11개 장르) -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 다문화교육 이해 연수,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 등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 서울창의예술학교 교육프로그램 : 공교육지원, 전문가 양성, 창의시민 육성, 창의거버넌스 구축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교육	- 연예인·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청소년 연예인 부모대상 교육, 매니저 대상 교육
* 기타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역실업자 훈련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 훈련비용 일부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 훈련비용 일부 지원

○ 이와 같이 대상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예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강자와 재단이 적극적이고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 예시 사업 :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목적
 - 예술인 전문성 제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열악한 예술인의 복지 향상 및 창작 활성화
 - 무용수 등 예술 활동 기간이 비교적 짧은 예술인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안정화에 기여
- 사업대상 : 비정규직 예술인, 자유전문직 등 창작·실연예술가, 예술 스태프
- 교육 추진 절차
 -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취업 및 경력전환에 대한 도전의식 및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 선발 진행
 - 분야별 대상자의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



- 선정방법 및 기준

- 경력개발, 경력전환, 재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발
-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향후 취업 및 경력전환 가능성 있는 예술인
- 신청 서류 심사 및 최종 선발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⁸⁾

- 중장기적으로는 재단 예술인고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예술 노동시장 내부의 수요-공급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 예술인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은퇴 및 직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해외 사례 중 직업무용수전환지원센터 등과 같은 경우나 프랑스의 국립고용안정센터인 ANPE 산하의 공연영상예술인 고용안정센터 등을 참조해볼 수 있음.
 -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기존 국립고용안정센터 중 예술인 및 예술시설이 밀집해있는 파리 지역의 국립고용안정센터를 공연영상예술인 고용안정센터로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다.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사업임.
-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 예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원로 예술인 복지 관련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8) 이규석 외,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2007.

-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소득활동이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계
 - 복지지원의 대상자는 연령, 분야별 산업에의 종사기간(경력),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함.
 - 예술분야에 대한 종사기간은 분야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단 차원의 조사 연구를 통해 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규정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발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로예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원로예술인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행 서비스 제공
- 원로예술인 이외의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프로그램은 복지 실태 조사 및 복지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취약예술계층별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예술인 명예의 전당 제도 도입,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안)

□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 원로 예술인들은 오랜 기간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문화산업 진흥에 크게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있을 때 생계유지조차도 어려워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원로 예술인 복지지원은 원로 예술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 도모와 예술계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원로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적고 선정기준이 까다로우며 많은 원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라 하더라도 생계비 보충정도의 금액에 그침.

〈표 4-12〉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 현황

구분	내용
대한민국예술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공로가 인정된 예술인들에게 상장 및 상금(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시상분야로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 부문이 각 1명만이 해당됨.
한국영화인복지재단 공로금 및 위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인복지재단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원로영화인을 위한 지원제도임. - 만6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 독립영화 예술인으로 활동한 자로 심사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로금 및 위로금(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한국영화인복지재단 생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인원 : 100명 내외 - 우선 지급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로부터 극빈자로 지정된 자 · 노부모 부양자 · 본인 질병에 대한 증명가능한 자 · 만 65세 이상이고 30년 이상 영화 종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예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만 65세 이상 문화예술인으로서 30년 이상 해당 분야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복지지원 - 지원규모 : 월 60만원 정액지원 - 일몰제 사업으로 실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대중문화예술 공연단(중견, 원로) 운영

- 이미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 기존 프로그램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
- 원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생활비 위주의 지원을 강구할 수 있음. 우선적으로는 원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주거비 등의 원로 예술인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원규모는 복지재단의 예산과 선정 원로예술인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
 - 지원대상자 개인에게는 1인 최저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의 사례를 보면, 생계보조금의 경우 대상자수가 많은 반면에 지원금액은 낮은 수준임.
 - 생계보조금의 경우 매월 지급이 아닌 대상자에 따라 1~3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수준은 2007년 기준 1인당 연평균 343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3〉 한국영화인복지재단 생계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명, 천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
대상자수	194	75	78	102	110	136	110
지원금액	90,800	22,200	30,210	46,560	43,200	39,100	37,700
1인당 지원액	468	296	387	456	393	288	343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화인 노후 복지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 예술인 명예의 전당 제도 도입

- 명예의 전당은 각종 스포츠,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이라 할 수 있음.
- 201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중문화 예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K-POP 전용 공연장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임.
- 재단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가칭 ‘예술인 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시설로서의 ‘예술인 명예의 전당’은 장기 사업으로 추진
-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인 예술인 기념관들의 네트워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개인 기념관 사이에 예술인 관련 자료 교환 전시 등

□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 예술인의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장애인 예술인의 작업공간, 예술 발표시 보호 지원 등의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에이블 아트’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지원
 - 다만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
- 주요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회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 예술인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정책 제안 및 자체 사업화 필요

라.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사업임.
- 작가, 화가 등 개인 작업 위주로 활동하는 창작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창작 환경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 안전망’의 구축
- 창작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개인 창작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레지던시 정보 지원 등 재정 보조, 현물 보조, 정보 지원 등 다차원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에 창작 예술인을 파견하는 등 창작예술인들이 직접 독자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확대
 -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으로 창작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활동 확대
-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창작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안)

□ 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

- 작가, 화가 등 개인 활동을 하는 창작예술인들에게 관객이나 독자들을 직접 만나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창작 준비금’ 성격의 재정 보조를 해 주는 프로그램
- 창작예술가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지역 공공문화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예술 활용 서비스(책 읽어주기, 독서 지도, 문학 및 미술 창작지도 등)를 제공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창작 준비금’을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스스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비고용 예술인(개인 창작예술인)에 대한 창작 준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뜻함.
- 이 지원은 예술인 생활안정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표 4-14〉 ‘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 개요(안)

구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자격 요건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분야	- 문학, 미술
서비스 대상	-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 문학관, 작은 도서관 등 지역 문화시설 이용
서비스 내용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센터 활용 1:1 서비스 지원 - 지역 문화시설 활용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

□ 창작 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 창작예술인들이 작업하는 개인 창작 공간(스튜디오 등)에 대한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을 통해 물리적인 창작 환경을 개선해 주는 제도
- 현물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대료 지원과 같은 재정 지원은 배제
- 개인 작업실에 필요한 비품이나 기자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되,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
 - 장기적으로는 재단 직영의 ‘창작 기자재 창고’를 통해 중고 물품의 기증을 받은 후 수리 후 재활용
 - 일반 비품의 경우 ‘아름다운 가게’ 등과 협력하여 추진
- 신규 작업실의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지원
- 장기적으로는 물감, 캔버스 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창작 재료에 대한 지원도 고려
- 재단 홈페이지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창작예술인들이 직접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마련

□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다양한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 예술인이 레지던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재단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협력으로 예술인과 창작공간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시 관련 행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
- 재단에서 지역 문화시설이나 기업, 시민공동체 등에서 ‘상주 예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주 예술인 제도’를 개발하여 운영
 - 특정 문화시설이나 기업 등과 접촉하여 ‘상주 예술인’ 활용 수요를 발굴하고, 그 수요에 적합한 예술인을 연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

- 예술인이 고정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월정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창작준비금 제도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가능
-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창작공간의 경우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마.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5호와 관련된 사업임.
-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예술인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와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연구 기능을 갖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예술인 복지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
 - 재단 조사연구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활용
 - 예술인 복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어려우므로 재단에서 조사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조사연구 수행
- 조사·연구 사업이 일회성, 단기성, 소모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연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예술인 복지 및 근로 실태 조사,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방안 연구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안)

□ 예술인 복지 및 직업 실태 조사

- 예술인 복지 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 실태 및 직업 실태에 관한 객관적 통계 자료 수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9년 조사에서부터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 현황과 관련된 조사문항이 포함되면서 단편적이거나 마 예술인 복지 실태 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함.

- 기존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를 창작 활동 실태 조사의 성격으로 유지하면서 그와 별개로 복지 실태 및 직업 활동 실태에 관한 체계적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현황 등 예술인 복지 실태 및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복지 실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주기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예술인의 직업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직업 활동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필요로 함.
 - 따라서 복지 실태와 마찬가지로 직업 활동 관련 제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함.
- 예술인들은 활동 장르나 직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직업 활동 및 생활 방식을 보이고 있어서 각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원로 예술인, 여성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등
- 조사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병행하여 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하지 않은 전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재단 예술활동 증명 신청 예술인이 전체 예술인의 50%를 넘는 시점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통합 검토
- 조사 사업 주제(예시)
 -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4대보험 가입, 주택 보유 형태, 수입 현황, 지출 현황, 노후 대비 등)
 - 예술인 복지 욕구 조사(복지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 예술인 직업 활동 실태 조사(고용 형태, 근속기간, 수입, 겸업 현황, 직업 변동 현황, 직무 현황 등)
 - 원로 예술인 생활 실태 조사(경제 활동, 연금, 주택, 부양가족 등)
 - 창작 공간 안전 실태 조사
 -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현황 조사
 - 외국의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사례 조사(국가별, 분야별 등)
 - 예술계 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 조사
 - 예술계 대학 졸업자의 직업 경로 조사(패널 조사)
 - 글로벌 유망 예술 직업 전망(사례 조사 통한 주기적 발표)

□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의 시작에 지나지 않음.
- 이후 연차를 거듭하면서 보다 많은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 우리나라가 예술인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직업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면 2009년 발의되었던 「예술인 복지법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를 조기에 추진하여 향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의 근거 자료를 제공
- 원로 예술인 복지 정책 관련 세부 시행 방안 연구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예술인 복지법」 시행 초기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연구를 통해 개발·제안되는 예술인 복지 정책 과제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를 통해 재정사업 또는 입법 활동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거나 외국의 예술인 복지 기관과의 협력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
- 정책 연구 주제(예시)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
 -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 원로 예술인을 위한 요양보호 지원 방안 연구
 - 예술인 거주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예술인 명예의 전당 추진 방안 연구
 - 작고 예술인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예술인 의료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방안 연구

- 앞서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연구와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복지 프로그램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렵고, 또한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은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특히 내부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전설계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함.
- 또한 사회적 환경 및 예술인 복지 실태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세부 사업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5년 주기로 재단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중기 목표의 재설정 등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속에서도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해야 함.

○ 세부 사업 연구 주제(예시)

- ‘예술인 복지 금고’ 세부 운영방안 설계 연구
- 원로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술인연금’ 세부 운영방안 설계 연구
- 예술인 직업전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술인 경력 관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재단 운영 복지 프로그램 성과 평가 체계 개발 연구
- 재단 운영 복지 프로그램 성과 평가 연구
- 예술인 복지 재원 확충 방안 연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신진 예술가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여성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술인의 재능 기부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입문 이전 예비 예술인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예술인복지타운’ 건립 기본 구상 연구
- ‘예술인복지타운’ 건립 기본 계획 연구

바.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라운영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사업임.
-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하에 설치하는 비영리 금융 기관이라 할 수 있음.⁹⁾
- 다만 ‘예술인 복지금고’의 경우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금융 사업(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액을 조성하여 별도로 ‘예술인 복지금고’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되 그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

9) 금고(金庫)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 돈, 귀중품, 중요 서류 따위를 화재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쓰이는, 쇠붙이 따위로 만든 껍나 창고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국가 정책 또는 공공 목적에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 비영리 금융 기관을 의미하기도 함. 금고의 운영형태로는 서민금고, 신용금고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고로는 새마을금고를 들 수 있음.

에 별도 부서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

- 금융 서비스에는 여·수신이 모두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상되는 재원 조성 규모가 작고, 전반적으로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점, 그리고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금 등 수신 상품보다는 소액대출 등 여신 상품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복지 성격의 지원 사업과 금고사업(신용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복지금고의 지원이 ①순수하게 무담보·무신용을 전제로 할 것인지, ②일반 은행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을 가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사업의 형태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이 중요함.
 - 첫째, 무담보, 무신용 대출 형태는 손실액 발생 위험이 있음.
 - 둘째, 담보나 신용 보증을 필요로 하다면, 이용 가능한 예술인에 제한이 주어질 수 있음. 즉,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어느 경우이든 대출 이자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인데, 금리상의 혜택이 높으면 무분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금리상의 혜택이 크지 않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재단 출범 이후 연구사업을 통해 금고재원 조성 및 세부 상품 설계 연구를 수행한 후 금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 타 재단이나 정부 관련 기관의 금고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금고 운영 규정을 비롯한 사업전반 사항,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연구하고 이를 재단의 복지금고 설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사 금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화진흥금고는 한국영화의 제작을 위한 재원조달, 단편 및 예술영화 제작지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

〈표 4-15〉 금고 운영 사례1-영화진흥금고

○ 영화진흥금고는 1994년 2월에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재원조성은 2000년 3월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이루어짐. 2000년대 영화시장 개방을 위한 스크린 쿼터 축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성	
설치근거	영화진흥법 33조~35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영화진흥법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이 신설되면서 영화진흥금고도 영화발전기금으로 대체
주요사업	①한국영화의 제작을 위한 재원 조달, ②단편 및 예술영화 제작지원, ③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정부 출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초기인 1994~1998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출연금으로 170억 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후 1999~2003년까지 정부가 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 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1,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

- 언론인금고는 현재 언론인금고 회원사에 재직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주택자금을 지원

〈표 4-16〉 금고 운영 사례2-언론인금고

○ 언론인금고는 언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1974년 설립된 금고로 금융지원을 통해 언론인들의 생활향상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음.

설치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주요사업	언론인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을 융자
정부 출연금	10억원
용자한도	생활자금 1천만원, 중도금과 전세자금은 2천만원, 주택구입자금은 4천만원(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근거당 1순위가 될 경우 6천만원)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¹⁰⁾에서는 출판계 종사자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사업 실시

〈표 4-17〉 금고 운영 사례3-한국출판금고(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 출판사에는 양서출판자금을, 출판계종사자에게는 주택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출판사의 양서출판 의욕 고취 및 출판계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 용자종류는 양서출판자금융자인 일반출판용자, 기획출판용자, 어음할인이 있고, 이외 복지재단의 금고사업과 관련된 주택자금용자로 구분할 수 있음.

주요사업	양서출판자금융자, 주택자금용자
용자한도	2억원 담보물 :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소유 부동산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 「예술인 복지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단 정관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 방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투명성 등을 확보 필요
- ‘예술인복지금고’ 관리 및 운영에서는 소액 대출 서비스,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금고 재원 조성 및 관리, 금고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 설계 연구 등으로 세부 사업이 이루어짐.

10) 1985년 12월 (재)한국출판금고 설립, 2012년 12월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2) 세부 사업(안)

□ 소액 대출(Micro Finance) 서비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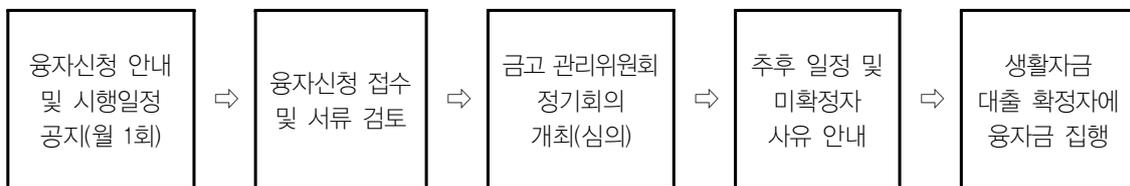
- 소액 대출이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액의 대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안적 금융라고 정의할 수 있음.¹¹⁾
- 저소득층 및 저신용계층은 긴급한 생계자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요구될 때, 일반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 또한 탈 빈곤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생계형 창업을 수행하고 싶어도 저신용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움에 따라 위와 같은 저신용계층의 생활안정과 창업을 통한 탈 빈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 소액대출 또는 미소금융사업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금고’를 통해 소액의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소액대출 상품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인 개인별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규모는 1회 200만원 한도, 개인 최대 300만원 한도 소액으로 제한함.
 - 소액으로 한정하는 대신 무담보 신용 대출로 하되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규정을 통해 대출 우선순위 기준을 공표하여 운영
 -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여 예술인들의 대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함.
 - 재원 고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 총액 관리 및 상환 미환수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금으로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예술 작품으로 대납하는 간접적 상환방식도 고려. 그러나 현물 상환방식이 적용된다면 작품 보관을 할 수 있는 수장고를 비롯하여 작품심사, 가격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함.
- 그러나 무담보 신용 대출로 하는 경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액 대출의 경우 무담보 무신용 대출 서비스로 검토해 보아야 함.
- 다만 대출금 회수율이 목표치 이하보다 낮거나 금고 자산 소진율이 목표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함.

□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안)

- 그런데 소액 대출의 경우 대출금 한도액이 낮아서 실질적인 생활 자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11) 사회연대은행박종현(2010),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이해와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 따라서 이용자 규모에는 제한이 있더라도 소액 대출보다는 큰 규모의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가 필요함.
-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대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예술인복지금고’의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에서는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면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인 최대 대출 한도 : 5,000만원 이내
 - 담보 여부 : 담보 또는 보증보험 활용(예술 작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 고려)
 - 금리 : 생활 자금 대출 서비스의 경우 무이자보다는 저리가 바람직함.
 - 대출 서비스 절차(안)



□ 금고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운영하게 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금고에 출연할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인복지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조성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예술인복지금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관리하지만, 재단 회계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로 구분계리 해야 함.
- 금고의 최초 자본금 300억원이 조성되어야 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까지 가능하나 소액 대출의 경우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자체 설계한 후 적정 수준에서 자본금 확정하여 운영 가능
 - 보험업 개시 자본금 기준은 300억 원이며(보험법), 은행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임(은행법).
 - 따라서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위해서는 300억원 수준의 기본 재원 필요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자본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금고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움.
- 재원 조성의 방향은 초기에 국고 등 공적 재원에서 출연하여 금고사업을 출범시킨 후 투자 수익 창출이나 기부금 출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이후 3년 이내에 국고 등에서 300억원 정도의 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금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예술인 복지법」 조항에 ‘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 조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원 조성에서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나 기업 등의 후원이 없다면 금고 재원 조성과 금고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할 것임을 말해 줌.
- 참고로 지금은 폐지된 「영화진흥법」 제34조에서는 영화진흥금고의 조성에 명시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¹²⁾

〈표 4-18〉 「영화진흥법」 영화진흥금고 설치 및 재원 조성 조항

제33조 (금고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금고는 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금고의 조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등

- 영화진흥금고와 언론인금고의 재원을 참고하여 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영화진흥금고 재원은 국고와 문예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기타(과실금)¹³⁾으로 구성됨.
- 이중 과실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성된 기금의 자본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임. 그 다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사업수익으로 용자사업 용자이율 3.5%와 용자금액 관리수수료 1%로 구성¹⁴⁾
- 언론인금고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금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금고의 과실, 기타 금고 목적으로 제공받은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됨.
- ‘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 조성을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 조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관이나 금고 운영 규정으로만 규정하는 것으로는 그 집행력에서 한계가 있음.

12) 현재 「영화진흥법」은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기능을 승계하고 있다. ‘영화인금고’ 또한 ‘영화발전기금’ 바뀌었으며, 같은 법 제24조(기금의 조성)에서 제24조 (기금의 조성)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은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문화산업진흥기금, 국고 지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실행한 사업의 수입과 자본운용 수익으로 구성된 내역이 과실금이 됨.

14) 김도학, 「문화산업 투자지원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영화진흥금고의 성과와 개선방안」, 문화경제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5.

- 특히, '예술인복지금고'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재원 조성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금고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예술인 복지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예술인복지금고'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에는 ①'예술인복지금고'의 설치, ②'예술인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안, ③'예술인복지금고'의 사업, ④'예술인복지금고'의 관리 기구 구성 및 운영, ⑤'예술인복지금고'의 운영 규정, ⑥'예술인복지금고'의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단, '예술인복지금고' 세부 운영 방안 설계가 이루어진 후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창립시 「정관」에는 설치, 재원 등 최소한 조항으로만 구성하고 추후 금고 출범 시점에 정관 개정을 통해 보완하든지, 아니면 금고 운영 규정을 통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
 -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규정으로는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 규정」, 「예술인복지자금 용자 규정」등이 있음.
- 금고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무국과 별도의 금고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기구에서는 용자 대상 심사, 용자 상품 등을 관리하게 되며, 금고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금고의 운영 규모가 작을 경우 사무국 내의 한 부서나 업무담당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표 4-19〉 금고운영기구 업무(안)

구분	내용
전산정보 업무	- 금고 가입, 징수, 확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재단 업무 시스템과 연계 필요 - 유기적인 용자금 납부로 인해 장기적인 대출금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필요
회원관리업무	- 금고용자금 납부, 연체 등 관리
용자 대상 심사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여부 확인 - 용자 상품에 따른 자격 심사
금고 운용 관리	- 전문적인 금융 및 재무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하여 금고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 금고 자산운용 총괄, 자산운용 전략 기획 및 신규투자처 발굴, 주식운용, 투자기획, 대체투자, 자금 및 실적 관리
금고 사업에 대한 기획 홍보	- 금고 운용계획의 수립 - 가칭 '금고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운영기구 최고책임자가 '금고관리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 ‘예술인복지금고’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재단 사무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가칭 ‘금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에 대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심의, 의결
 - 구성 : 재단 이사장 및 임원을 포함하여 재정관리·금융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기능 :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
 - 금고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술인 복지 자금 용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용자조건, 대상자 선정, 용자 인원 및 용자금 조정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 발굴, 추진 관련 사항
 - 기타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 언론인진흥재단의 ‘금고관리위원회’ 참조

□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 설계 연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초기 최우선 연구 과제로 ‘예술인복지금고’ 운영방안 세부 설계 연구가 필요
- 금고 사업(용자 상품 등) 세부 설계(용자 상품 이용 자격, 이율, 용자금 규모, 관련 규정 제정안 등), 가칭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관련 규정 제정안 포함), 금고사업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안), 금고 재정 소요 추계 및 재원 조성 중장기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함.
- 이 연구 이전의 「정관」에는 ‘예술인복지금고’ 설치에 관한 조항 등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이 연구를 토대를 「정관」의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 필요

사.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와 관련된 사업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제회’와는 조직 성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재단의 핵심 기능이 예술인 복지의 증진에 있는 만큼 다양한 ‘공제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요
- 이명박정부에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고, 그 과업의 상당 부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면,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공제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본격 시행 후 자산 운용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업운영 시스템이 정착될 시점에, 실질적인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함.
- 복리후생 관련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재단의 지속적인 연구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들과 MOU 등의 연계를 통해 복지재단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소액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의료 및 건강 지원,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생활 부조금 지원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안)

□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¹⁵⁾

- 예술인들을 위한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상품으로는 두 가지 보험상품을 검토해 보아야 함.
 - 예술인들이 노후에 안정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립형 공제상품(연금 상품)과 예술작업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형 공제상품임.
- 적립성 공제상품은 노후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본인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더하여 향후 60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상품임.
- 보장성 공제상품은 사망,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고, 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공제사업의 보편적 공제상품임.

(1) 적립형 공제상품-가칭 ‘예술인 연금’ 상품

- 적립형 공제사업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인(무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예술인(무연금),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권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낮은 신고소득으로 인한 적정한 연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술인(저연금)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운영할 수 있음.

15) 공제상품의 주요내용은 김태완 외(2009)의 연구를 기초로 재정리.

- 가입자 확대차원에서 위의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이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예술인들까지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상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보험의 성격상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위험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상품 명칭은 '예술인 연금'으로 설정하여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운영
- 지원방식은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형 상품을 운영하고, 국고나 예술인복지재단이 마련한 재원을 통해 개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제상품을 운영하도록 함.
- 예술인들은 소득이 낮아 실제 공제부금을 모두 부담할 수가 없음. 따라서 복지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제부금에 대해 정부나 복지재단에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¹⁶⁾
 - (1안) 국민연금의 기준소득(35등급)이하 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이 커지도록 하는 방식
 - (2안) 국민연금의 기준소득(35등급)이하 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
 - (3안) 국민연금 전체 소득등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높게 하되 보조율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하는 방식
- 1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5등급 이하자의 경우 45.0%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14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84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12.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33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51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2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분석결과 5등급 이하자의 경우 25.2%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79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73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19.8%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520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85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3안에 따른 개인별 연금수지의 분석 결과 5등급 이하자의 경우 5.6%의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20년 가입기간 동안 매년 17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61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 보조금 지원 기준소득인 35등급자는 4.4%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116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510천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됨.

16) 2010년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보수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였으며, 동 공제회에 매년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사회복지사들이 간접적으로 보험상품에 있어 일정한 인센티브(보험료중 관리운영비 부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최고소득등급인 45등급자는 4.0%의 보조율에 따라 20년간 매년 173천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0세 이후부터 20년간 매월 835천원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2) 보장형 공제상품

- 예술인들을 위한 보장형 공제상품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과 소득을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보장 항목이 많으면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인들이 가입하기가 쉽지 않음.
 - 너무 낮은 보장수준은 가입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보험료와 보장상품의 수준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측면에서 예술인들의 보장성 공제상품은 상해사망은 유지하되, 예술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종류를 확대하여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상해의료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보장수준은 상해사망은 2천만원, 상해후유장애는 1천만원, 상해의료비는 50만원, 100만원과 150만원 세 종류로 구성됨.
- 보장성 공제상품의 첫 번째 상품은 상해사망금 2,000만원과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 50만원을 보장하는 것임.
 - 동 상품은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33천원(연간)수준이며,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한 기초적 상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할 것임 .
- 보장성 공제상품의 두 번째 상품은 첫 번째 상품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3천원수준으로 첫 번째 상품과 비교시 보험료가 만원 정도 인상된 수준임.
- 보장성 공제상품의 세 번째 상품은 첫 번째, 두 번째 상품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5천원수준으로 세 가지 상품중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보장성 공제상품은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예술인들의 경우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 보장성 상품에 대한 욕구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극, 무용수 등 활동이 많은 예술인들은 상해활동지원비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는 반면에 미술가, 작곡가, 시인 등은 상해활동지원비보다는 상해사망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첫 번째 상품을 기준으로 상해사망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시 보험료는 33,791원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며, 상해사망금을 4천만원으로 좀 더 높일 경우 1인당 보험료는 37,791원으로 늘어남.

(3) 공제 상품 관리·운영 방안

- 공제상품 사업의 관리·운영에는 먼저 인력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보험계리, 공제상품 및 사고위험 관리전문가, 기금운용 전문가 등)와 일반행정 담당 등 공제사업 관련 인력이 많이 요구됨.
 - 특히 보험상품, 계리 및 기금운용 관리 전문가는 높은 보수 등이 요구됨에 따라 초기 복지재단 재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안적으로 외부 전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는 공제상품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함.
 - 먼저 공제상품에 가입할 예술인들의 가입자 규모와 가입상품별 규모 등을 위한 전산구축과 더불어 어디서든 쉽게 접근해 본인의 가입부금과 향후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함.
 - 전산구축에 있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함께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공제사업의 경우 예술인들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며, 저소득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해약, 환급에 있어 과도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초기에는 다소 완화된 규정을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가입자규모가 확대되고 기금에 대한 누적액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해약과 환급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제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설계시 공제 상품 관리·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한 후 프로그램 시행

□ 소액 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 소액 보험(Micro Insurance)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질병, 사망, 장례 등)에 대비할 수 없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¹⁷⁾
 -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드림스타트의 하나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에 대한 소액보험사업(2009년 말 약 만여 명)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상품을 통해 소액보험 사업(2010년 10만2천명)을 실시하고 있음.
 - 소액보험은 예술인들과 같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장성 상품(순수보장형)의 형태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액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17) 생명보험협회의 조사(2009년)에 의할 경우 연소득 2,400미만 가구 중 생명보험 비가입 비중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구 중 80%가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이석호 (2010),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지원 대상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소득(예,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 이하의 저소득 예술인과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 보장 수준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우정사업본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보험상품에 기초하여 보장 수준을 설정
- ‘만원의 행복’의 경우 15~65세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최대 3년(초기 1년에서 2012년 확대)에,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며, 상해입원의료비로 보상대상의료비의 90%를 5천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연계 방안

-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원의 행복’과 같이 복지재단의 재원을 통해 별도로 소액보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 먼저 직접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운영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음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만원의 행복상품에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MOU 등을 체결함.
- 가입을 원하는 저소득예술인에 대해 연간 보험료 만원 또는 그 일부를 복지재단에서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의료 및 건강 지원

(1) 건강 검진 지원

- 보건의료는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보다는 사전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증진의 방안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센터), 병원 등과의 MOU 등을 체결하여 예술인 및 그 가족, 원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시행
 - 건강검진 사업은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시행하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이후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설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진 대상의 설정, 협력 가능한 병원 및 건강검진센터 현황, 실시 주기, 소요 예산 등
 - 예를 들어 ‘근로자’ 지위가 있는 예술인을 제외한다든지, 원로 예술인을 우선 실시한다든지 하는 세부 방안 마련 필요

(2) 원로 예술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로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장기 치료중인 원로예술인의 의료비 보조

- 희극인 배삼룡, 영화배우 트위스트 김 등은 은퇴 이후 질환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바가 있음.
- 원로 예술인들 가운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예술인,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 원로 예술인 우선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 병의원을 통해 무료 또는 할인된 비용에 의해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관절염, 시력 저하, 치아능력 감퇴, 청력 저하 등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며, 이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호공단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

○ 동호회 활동 및 사회체육시설 활용 지원

- 신체 나이에 맞는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체 건강한 원로 예술인들이 등산, 스포츠 댄스 등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수영, 게이트볼 등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경비 일부를 보조
- 개별적으로 복지회관 프로그램 및 사회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바우처' 활용 지원

(3) 재활 서비스 지원

- 실연예술인의 경우 신체부위를 활용하여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상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신체활동 기능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상해 치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의 재활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재활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

□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 예술인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의 창조자이면서도 자신 및 가족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및 예술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제휴사업으로 추진하여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문화예술시설 이용 지원

- 예술인 및 그 가족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공연전시영화 등 예술 관람, 프로야구프로축구프로농구프로배구 등 스포츠 관람, 음반도서 구입 등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예술 관람의 경우 예술인 본인 및 동반 1인에 한하여 ‘예술인 특별 할인제도’를 개발하여 운영
 - 현재 공연예술의 경우 ‘공연 관계자 할인’으로 50% 할인율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전국의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공연단체, 공연제작사 등 해당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협약 체결
 - 예술인이 포함된 관람에 한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증빙 방안은 가칭 ‘예술인카드’ 발급 등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
-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기존의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2)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

- 예술인들의 재충전과 그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휴양시설과의 협약에 의해 제휴 서비스로 제공
- 휴양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재원과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휴양시설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예술인들이 저렴한 비용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휴양시설을 제공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재단의 기획에 의해 예술인의 행사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

(3) 예술인 여행 지원 및 ‘예술희망캠프’ 운영

-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례 행사로 국내 여행에 대한 지원과 문화체험캠프 운영
-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위한 재충전과 취약계층의 예술인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술인이 현장 취재를 위한 자유여행이나 단체 탐방 프로그램 지원
 - 여행사와 협약하여 국내 문화유적 탐방 및 문화시설 관람 등으로 구성된 국내외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가 현장 취재를 위해 자유여행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지원

- 예술인이 국내외 순회 공연이나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 활동지역을 떠나 이동하는 경우 현지 숙박시설 이용 지원
-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여행비 일부 보조도 고려
- 해당되는 예술인의 경우 ‘여행바우처’ 활용하여 연계 가능하도록 지원
- 가칭 ‘예술희망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인 및 그 자녀들에 대한 문화 정서적 소양을 함양
 - 예술인 및 그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예술희망캠프’를 기획하여 예술인 자녀들의 문화생활 개선에 기여
 - 매년 방학기간 일정규모(100명 이내)의 예술인 초중고생 자녀를 초청하여, 문화 예술 및 환경 체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
 - 개최지 문화시설 및 예술인의 참여로 프로그램 구성

(4) ‘예술인 문화복지카드’ 제도 도입

- 예술인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가칭 ‘예술인 문화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예술인 및 그 가족이 문화시설 이용만이 아니라 스포츠 관람, 사회체육활동, 문화상품 구입, 여행상품 구입 등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원 상당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 예술인, ‘근로자’ 아닌 예술인 등에 제한하여 시행한다 하여도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문화바우처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등이 있으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전 연구를 통한 타당성 검토 후 시행

□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1)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 30~40대의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라 할 수 있음. 동연령대의 예술인들 역시 예술활동 과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부담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
-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 활동 참여가 불규칙함으로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즉, 평소에는 거주지역의 보육시설을 활용을 하다가 연습 및 공연 기간 동안에는 그 활동 지역 보육시설을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거지역 보육시설에서는 이용 자격 등에서 지속성을 담보해 주고, 활동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
-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보육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문화예술단체 또는 시설에서 설립·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대학로와 같이 예술인 활동 밀집지역이나 예술의전당과 같은 대규모 예술시설에서는 직원 및 프로그램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표 4-20〉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구립 대학로 어린이집 운영 사례

내용	대학로어린이집은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연극인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로 연극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보육시간으로 운영
대상	〈대학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대상은 연극인 가정의 자녀 * 연극인의 범주에는 극작, 연출, 배우, 기술 및 행정 스태프와 기획관련 종사자 * 연극인확인을 위해 협회회원증 혹은 비회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극 활동 증빙자료(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첨부

* 출처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홈페이지

(2)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 저소득 예술인 가구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우수학생에 대한 예술분야 해외연수 프로그램 제공
- 예술인 본인 또는 예술인 자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니면서 낮은 소득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청계재단 등 민간 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문화나눔사업 등의 협력을 통해 동 재단이 예술인 자녀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유도
- 예술인의 자녀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비 예술인’에게 해외의 예술분야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
 - 해외연수의 지원은 일회성으로 지원과 예술분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비예술인’에 대한 장기 지원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지원
 -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생활 부조금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게 될 공제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예술인들을 위한 소규모 생활부조사업이 필요함.
- 생활부조사업은 예술인 및 가족의 혼례 및 장례 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생활부조사업은 예술인 스스로 운영하는 ‘상호부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에서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

- 예술인들의 경우 기업보다는 개인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험부족 등으로 생활부조가 필요시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복지재단의 공제사업중 하나로 생활부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대상 범위에 있어서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제상품 가입자로 한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세부 운영 규정 마련 필요
- 제공되는 복지 지원 내용은 크게는 현금과 현물로서 현금서비스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가입서비스를 토대로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현물 서비스는 부조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현물(결혼 및 장례지원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사업초기에는 인프라와 인력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함으로 외부의 상호대행 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인력과 인프라 확충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생활부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아. 자원 개발 사업

1) 기본 방향

- 예술인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예술인의 실질적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원 소요가 예상된다.
- 그러나 그 가운데 대부분은 다른 재원이나 국고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사안들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및 운용,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연구, 예술인 복지 홍보 및 교류 사업 관련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보험료 보조나 창작안전망 지원 제도 등은 국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산재보험 운영 지원의 경우 산재보험체계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운영 가능
- 크게 나누어 보면, 향후 소요되는 주요 비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사업비 및 재단 운영비와 독립 계정으로 운영되는 ‘예술인복지금고’ 출연금 및 운영비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단을 통해 예술인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분의 재원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가장 중요한 재원은 국고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복권적립금(토토기금) 등 공적 재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재단이 주관하여 조성해 나가는 자주 재원이 될 것임.
 - 대체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단기적으로는 공적 재원의 출연 등 구성비가 높을 것이고, 2018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자주 재원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여기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해 볼 만한 자주 재원 발굴 사업을 다양하게 제안해 보고자 함.
 - 자주 재원은 재단에서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과 민간부문을 통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조성
 - 조합이나 공제회 같은 회원 조직이 아니므로 예술인들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화 수준의 부담금 등은 자주 재원 조성에서 고려하지 않음.
 -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제휴사업 개발도 재원 조성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세부 사업으로는 수입 사업을 통한 재원의 조성, 기부금품 모금을 통한 재원의 조성, 제휴 사업의 적극 개발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

□ 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의 조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다양한 수익 사업 운영을 통해 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함.
- 다만 재단의 기본임무가 예술인 복지의 증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의 일부를 자주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수익사업의 의미가 있음.
- 재단의 기본재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는 초기에는 예술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기획해 나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형 수익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산의 마련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재단과 예술계가 공동으로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회를 기획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 기획, 작품의 제공, 출연 등 모든 분야에서 노 개런티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음.
 - 미술 작품의 경우 작품 판매 수입을 작가와 배분하되 작품 자체를 기부금품으로 받을 수도 있음.
 - 대관에서 홍보까지의 기본 경비를 재단이 부담하여 주최
 - 예술인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조건에서 무리하여 '재능기부'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예술계 내외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기능도 고려
- 예술인들의 애장품을 기증 받아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운영하여 그 판매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 일반 사회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원 조성 방안이지만, 예술계 내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예술인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

□ 기부금품 모금을 통한 재원 조성

- 기부금품 모금은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재단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모금 사업’을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임.
 - 재단 내 모금 사업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관련 사업비를 사전에 편성해야 함.
- 제도적으로는 기부금 모금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행위에 대한 기부자의 ‘비물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금 사업이 추진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음.

〈표 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세제 혜택

기부금 성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기부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기부하실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서 기부자에게 세금을 감면 * 법인기업은 소득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되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이 인정 안되는 경우〉
기부자	기부자	기부자	기부자
기부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 지정기부대상단체	기타임의단체 및 개인
기부방식	지정, 비지정, 실명제 기부	직접 기부	직접 기부
손비/소득공제 처리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손비처리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손비처리 • 개인 :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비처리 되지 않음.
	↑ ARKO에 기부하시면	↑ 인허가 단체에 기부하시면	↑ 비인허가 단체에 기부하시면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참고

- 기부금품 모금 사업은 크게 예술계 모금과 비예술계 모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모금의 경우 세제 혜택 상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
- 기업으로부터의 모금 활동은 초기에는 삼성,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재단과 예술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규모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 기부는 공적 재원과 함께 예술인 복지 재원의 축이 되어야 함.
 - 현금만이 아니라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의 기부도 적극 고려
 - 중장기적으로는 중기업이나 소기업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의 등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협의 채널 마련
- 개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추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이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의 모금 사업을 벤치마킹
 -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 특정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 크라우드 펀딩 방식 등 다양한 방법론 개발 필요
 - 세제 인센티브를 앞세우지 말고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예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은 자유 기부와 상시 기부로 나누어 운영
 - ‘예술인이 예술인을 돕는다’는 것은 내외부에 반향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에 해당
 -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함.
 - 화가, 조각가, 사진가 등 시각 예술인들은 작품을 기부할 수도 있음.
 - 작품을 기부 받은 경우 재단에서는 별도의 전시회를 기획하여 작품 전시후 판매할 수도 있고, 재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개인 판매도 가능
 - 작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작가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분류 가능
 - 인세, 저작권료 등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제공하거나 출연료 등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기부하는 방안(세부 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개발)
 - 월단위나 연단위로 일정액을 약정하여 기부하는 상시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재단에서는 예술인의 기부 행위를 끌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 개인에 가장 적합한 기부 방식을 컨설팅하고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예술 단체 및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은 보다 면밀한 준비 후에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
 - 기획사, 영화제작, 출판사, 방송사, 극단, 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방송국, 극장

등이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함.

- 다만 영세한 문화예술기관이 많은 만큼 예술인 복지 재원 모금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제휴 사업 적극 개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외부 기관 및 기업 등과 제휴 사업을 성사시켜 활용해 나가는 것도 예술인 복지 재원 마련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업임.
- 제휴 사업을 활용하면 자산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예술인이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단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비용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제휴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기관이나 기업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
 - 예술 및 예술인의 재능을 활용한 결합 모형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아트뱅크’ 사업을 활용하여 제휴 기관에 아트 인테리어를 지원 또는 공연 행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함.
- 제휴사업의 대상은 휴양시설, 문화체육시설, 병의원, 재활치료기관, 교육시설 등 매우 다양

자. 홍보 및 교류 사업

1) 기본 방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예술계 내부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함.
- 특히 예술계 내부의 인식 제고가 있어야 재단에서 진행하는 제반 복지 프로그램에의 예술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음.
 - 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단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수적임.
 - 예술인들이 재단의 사업과 목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을 알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재단의 사업을 알리는 좁은 의미의 홍보 사업 외에 예술계 내부의 교류 프로그램이나 예술인 복지 분야 국제 교류 사업도 넓은 의미의 홍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예술과 사회의 교류에 해당하며, 궁극적으

로 예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세부 사업으로는 홍보 및 출판 사업,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지원 사업, 국내외 예술인 복지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 예술인의 사회 기여 활동 지원 등이 있음.

2) 세부 사업

□ 홍보 및 출판 사업

○ 예술 행사를 통한 홍보

-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므로 다양한 예술 행사(공연, 전시, 축제 등)를 활용하여 홍보
- 예술인 복지 사업 홍보를 위한 특별 기획 행사로 후원금 모금 콘서트, 홍보대사 위촉 활동 등도 중요
- 예술계 내부 협회들의 행사도 그 성격에 따라 후원 등의 방식으로 활용

○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홍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해 재단 및 재단 사업에 대해 알리고, 실제 예술인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이트로 활용
- 홈페이지와 별도로 재단 소식 및 예술인 복지 관련 정보를 담은 웹진을 제작하여 공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구인·구직 정보 게시판을 연계하여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 재단 차원의 SNS 계정을 설치하여 연계 운영
- 예술인 가운데 SNS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SNS 공간에서 재단 사업에 대한 수평적 홍보를 담당할 수 있게 함.
- 또한 재단 소식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대중매체 광고를 통한 홍보

- 재단이 주최하는 대형 행사가 있거나 재단 공제상품 등의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도 검토

○ 재단 CI 제작 및 홍보 자료 출판을 통한 홍보

- 재단 CI 및 로고를 제작하여 재단 출판물 및 온라인 매체에 활용
- 「예술인 복지법」 및 재단 예술인 복지 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 재단 안내 브로슈어 제작
-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별 안내 리플릿 제작

○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 재단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의 결과물을 발간하여 보급

- 같은 보고서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보급

□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지원 사업

- 예술계 내부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직접 주최하는 프로그램과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 고려
- 가칭 ‘예술인의 날’ 또는 ‘예술인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
 - 예술인 축제, 체육행사,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의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음.
 - 가칭 ‘한국예술인상’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
 - 예술계 내부의 결속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및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향상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의 기회로 활용
- 재단에서 직접 기획하지 않고 예술계 내부의 협회들의 공동 행사로 기획하고, 재단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예술계 협회 조직들에서 추진하는 교류·연대 사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

□ 국내외 예술인 복지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

- 한편, 이미 활동 중인 예술인 복지 관련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재)한국영화인복지재단,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등이 있음.

〈표 4-22〉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설립년도
한국영화인 복지재단	영화 예술인간의 상호협동 및 친목을 도모하고 영화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및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등을 추진	· 공로금, 위로금 등 지급 ·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영화인 자녀 장학금 · 영화인 연금 및 보험제도 운영 · 불우영화인의 생계보조사업 등 기타설립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 · 위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 · 명예의 전당 설립 및 <위대한 영화인> 선정에 관한 사업	1984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연극예술인들 사이의 상호협동과 친목 도모 그리고 연극예술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	· 지원사업 : 무료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장학사업 · 정책연구사업 : 연극인 사회복지제도 연구 · 연극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2005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전문무용수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무용수 복지 및 무용예술 발전을 도모	· 상해재활 및 예방 : 상해재활, 상해예방, 진료비할인 · 댄서스 잡마켓 · 한마음축제&심포지엄	2007

기관명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설립년도
대중문화 예술인지원 센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 : 전속계약, 수익배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률 컨설팅 · 심리상담 : 전문의와 연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 교육지원 : ①연예인,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②청소년 연예인 부모대상 교육, ③매니저 대상 교육 · 원로연예인공연단 : 원로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 대중문화예술상 	2011

○ 이들 네 기관은 분야별 대상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네 기관의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 필요시 재단 사업의 일부를 이들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

○ 이 네 기관 외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계 내부의 단체나 협회, 조합 등과도 적절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 필요시 재단 사업의 일부를 이들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

○ 또한 유네스코, IOTPD(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Transition of Professional Dancers) 등 예술인 복지 기구나 외국의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의 국제 연대 강화

- 국제기구 참여 활동 강화
- 예술인 복지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예술인 복지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예술인 복지 실태 공동 조사 실시
- 해외 활동중인 한국 예술인의 현지 복지 체계 적용 방안 강구

□ 예술인의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

○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제도화된 수준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사회에 대한 예술인의 책임’이 필요한 시기이며, 그 구체적 방식은 예술인의 사회 기여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사회 기여 활동 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직접 코디네이터가 되어 사회 기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술인의 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연계할 수 있는 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예술 활동, 예술 교육 등 자신의 재능을 직접 활용하는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강연이나 노력봉사 등 비예술활동을 통한 봉사활동도 예술인의 사회 기여 활동에 해당

2.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가. 기본 방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업무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의 기본 성격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술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재단의 조직구조 또한 ‘복지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단법인체가 아니므로 예술계의 의견을 모으는 구조보다는 서비스 업무 효율성을 중심으로 고려
- 재단의 조직 규모는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요 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슬림화를 지향해야 함.
 - 기본적인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한 초기 조직 규모에 출발하여, 업무 대상 예술인이 늘어나는 단계에 맞추어 조직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함.
 - 초기 조직 구조는 업무 대상 예술인 규모를 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구성
 - 또한 사업면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 사업이 모두 실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조직 규모를 최대치로 하되, 초기에는 실행할 수 있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설계
- 그러나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 업무로 하는 ‘복지 서비스 센터’로서의 특성상, 재단 인력 규모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작으면, 결국 단순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어 적극적인 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단의 인원 규모 최소화는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 됨.

나. 주요부서 및 기구

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임.(「예술인 복지법」 제13조 제1항)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법 제13조 제2항)되며, 전체“15명 이내”로 구성함.(「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1항)
 -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수는 13명 이내임.
-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13명 이내의 이사는 「예술인 복지법」에 별도 규정이 없고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재단 이사에는 ‘예술인복지금고’ 등의 재원 관리 투명성 및 예술인 복지 사업 시행의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술계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할 수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신망이 높은 인사로 구성
 - 반드시 예술계 내부의 안배 논리로 구성할 필요는 없음.
 - 예술인 복지 재원 조성에 직·간접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 1인을 비롯하여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 임원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
- 이사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한 법조항의 내용에 준하여 해석해 보면, 정관에 위임될 이사 선임에 대한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운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사장 단독 임면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술인 복지법」 제13조에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재단 정관을 통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재단 정관을 통해 규정
 - 재단 정관에 포함될 이사회 관련 중요 사항은 이사회 구성, 이사회 의장, 회의 소집, 의결 사항, 의결 방식 등임.
 - 이 가운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결 방식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법 제13조 제3항과 제5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단 정관에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 조항이나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규정이 중요

- 이사회 소집에서 이사장 이외 일정 규모 이상의 이사들의 요구에 의해 소집 가능하도록 보완
- 의결 방식의 경우 법인의 해산에 관한 조항이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인 의결 조건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재단 정관에 담아야 할 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출장소, 부설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1.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결한 사항

○ 한편 재단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사회 운영 관련 세부 조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토록 함.

2) 재단의 대표

○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사장의 상임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게 되어 있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장이 상임이 되거나 상임에 준하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법에 의하면 이사장의 상임에 준하는 역할이 요구되나 이사장과 별도로 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는 이사장이 맡도록 하되, 실질적인 업무의 총괄은 상임이사가 담당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재단 정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 경우 이사장은 비상임으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상임이사가 실질적인 재단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관상의 근거 마련 필요
- 이를 위하여 상임이사의 재단 조직 내 명칭을 “대표 이사”로 호칭하는 방안 검토

3) 예술 활동 증명 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재단 정관에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

(1) 심의위원회의 기능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실적 이외의 실적을 가지고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단의 “심의”를 거쳐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예술인 복지법」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술 활동 실적을 그에 준하는 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임.
 - 탈장르적 예술 활동 등에 대한 심의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의해 실적물로 제출된 실적 가운데 재단 사무국에서 판정하기 어려운 실적물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판정 필요

(2) 심의위원회의 구성

- 예술 활동 증명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 활동 경력 10년 이상의 경륜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1년 임기에 연임 가능
 - 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저작권, 예술지원 업무 담당자 등도 포함
 -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정관에 규정
-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르별 또는 탈장르 ‘심의소위원회’를 운영
 - ‘심의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등 10개 분야와 탈장르 및 복합장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50~60명 정도의 인력풀을 구성
 - 심의 사안에 따라 3~5명으로 구성된 ‘심의소위원회’를 운영
 - ‘심의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의 추천에 의해 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

(3)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

- 심의위원회는 월 2회의 정기 심의회를 통해 실적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재단에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참여로 성립하며, 심의 결과는 참석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확정
 - 만장일치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심의 안건이 많은 경우 분야별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는 '1차 심의'로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도록 해야 함.
 - 심의소위원회는 주 1회 개최
 - 심의소위원회의 세부 심의 기준은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로 작성하여 활용
- 심의위원회 및 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재단 직원이 간사로 참여하여 심의 결과를 기록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 및 심의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재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마련

4)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함.
- 금고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가칭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이하 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금고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재단 정관에 마련하고,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재단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 규정하도록 해야 함.
- 금고관리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대표이사 등 7인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함.
 -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유사 기금관리 책임자, 재원 관리 전문가 등 예술인복지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견과 책임성이 있는 사람으로 재단 이사장이 위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 등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의 경우 그 임기를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함.
- 금고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금고 운영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고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술인복지자금 용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용자 조건, 대상자 선정 기준, 용자 인원 및 용자금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산재보험업무 대행

-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근로자 아닌 예술인들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음.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기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될 예정임.
 - 가입 신청, 보험료 징수,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 보상 처리 등 제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 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시 신청인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
- 재단 내에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6) 사업의 배치와 사업부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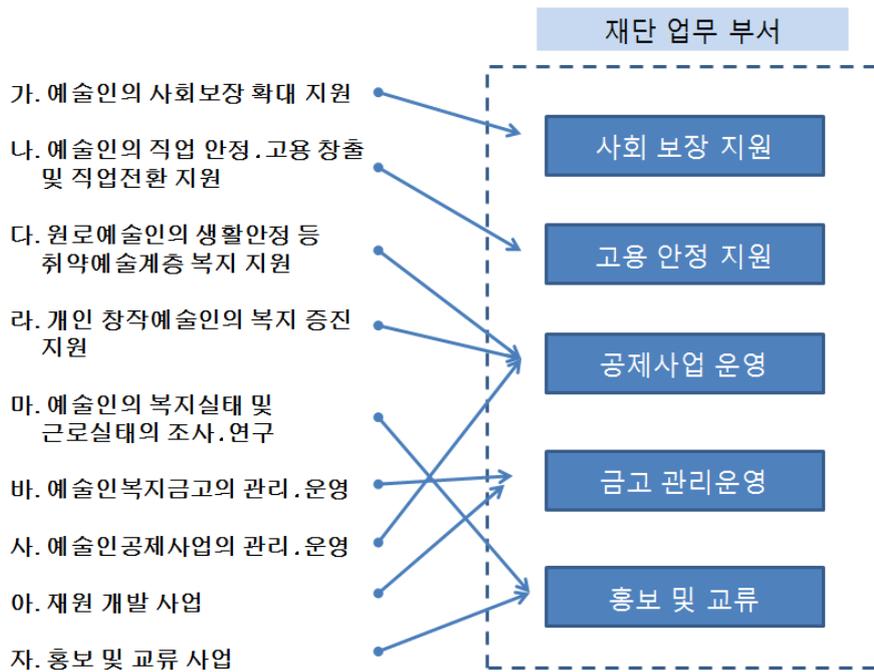
- 조직 설계에 앞서 앞에서 살펴본바 향후 재단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정리해 보면 9개 영역에 모두 36개의 사업이 있음.

〈표 4-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일람

구분	사업	비고
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가-1]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산재보험료 보조, 고용보험료 보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보조
	[가-2]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도입	
	[가-3]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가-4]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가-5]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나. 예술인의 직업 안정·고용 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나-1]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	
	[나-2]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나-3] 경력관리 지원 사업	
	[나-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5]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다. 원로예술인의 생활안정 등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다-1]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다-2] 예술인 명예의전당 제도 도입	
	[다-3]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구분	사업	비고
라.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라-1]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라-2] 창작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라-3]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마.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마-1] 예술인 복지 및 직업 실태 조사	
	[마-2]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마-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방안 연구	
바. 예술인복지금고의 관라운영	[바-1] 소액 대출 서비스	
	[바-2]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바-3] 금고 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바-4]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설계 연구	
사. 예술인공제사업의 관라운영	[사-1]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적립형 공제상품, 보장형 공제상품
	[사-2] 소액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사-3] 의료 및 건강 지원	건강검진 지원, 원로 예술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재활 서비스 지원
	[사-4]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	문화예술시설 이용 지원,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 예술인 여행 지원 및 '예술희망캠프' 운영, 예술인 문화복지카드 제도 도입
	[사-5]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예술인 자녀 보육 지원,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사-6] 생활 부조금 지원	
아. 자원 개발 사업	[아-1]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의 조성	
	[아-2] 기부금품 모금을 통한 재원의 조성	
	[아-3] 제휴사업 적극 개발	
자. 홍보 및 교류 사업	[자-1] 홍보 및 출판 사업	
	[자-2]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지원사업	
	[자-3] 국내외 예술인 복지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	
	[자-4] 예술인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 사업	

○ 9개 영역이 각기 하나의 사업부서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가운데는 창립 직후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실행될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5개로 통합하여 재구성해 볼 수 있음.



[그림 4-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부서별 배치(안)

- 원로예술인 복지 지원과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을 예술인공제사업과 통합하였고,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사업과 자원 개발 사업을 통합하였으며, 조사연구 사업과 홍보 및 교류 사업을 통합하여 9개 영역을 5개의 사업부서로 재편해 보았음.
 - 이는 하나의 예시로 시행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화, 이용자 편의성,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재구성해 나갈 수 있음.
 -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사업과 예술인공제사업, 자원 개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음.
- 36개 세부사업 단위로 업무 분석을 통해 사업부서를 재구성해 보면, 8개의 사업부서로의 편제가 가능
- 창작예술인 지원사업 가운데 [라-1]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는 고용지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므로 ‘예술인고용지원센터’로 배치하고, 공제사업 가운데 공제상품 등 금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예술인복지금고팀으로 배치하며, [사-3] 의료 및 건강 지원에서 [사-6] 생활 부조금 지원까지는 생활복지지원팀으로 배치하여 재구성

<표 4-24> 세부사업의 배치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서 편제

사업	부서명
[가-1]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가-2]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도입	
[가-3]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가-4]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사업	부서명
[가-5]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나-1]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	고용지원·교육팀(예술인고용지원센터)
[나-2]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나-3] 경력관리 지원 사업	
[나-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5]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라-1]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다-1]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생활복지지원팀
[다-2] 예술인 명예의전당 제도 도입	
[다-3]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라-2] 창작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라-3]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사-3] 의료 및 건강 지원	
[사-4]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	
[사-5]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사-6] 생활 보조금 지원	
[마-1] 예술인 복지 및 직업 실태 조사	
[마-2]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마-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방안 연구	
[바-1] 소액 대출 서비스	예술인복지금고팀
[바-2]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바-3] 금고 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바-4]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설계 연구	
[사-1]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사-2] 소액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아-1]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의 조성	재원개발팀
[아-2] 기부금품 모금을 통한 재원의 조성	
[아-3] 제휴사업 적극 개발	
[자-1] 홍보 및 출판 사업	홍보·출판팀
[자-2]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지원사업	교류·협력팀
[자-3] 국내외 예술인 복지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	
[자-4] 예술인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 사업	

○ 이는 사업 내용상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서 편제를 시도해 본 것이고, 실제 부서의 편제는 사업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업별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치와 부서별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함.

- 담당하는 사업의 개수가 많아도 실제 업무량이 작아서 인원 규모가 작으면 부서의 개수를 축소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인원 규모가 큰 사업은 단위 사업이 하나의 부서로 편제될 수 있음.

다. 부서별 업무 분장 및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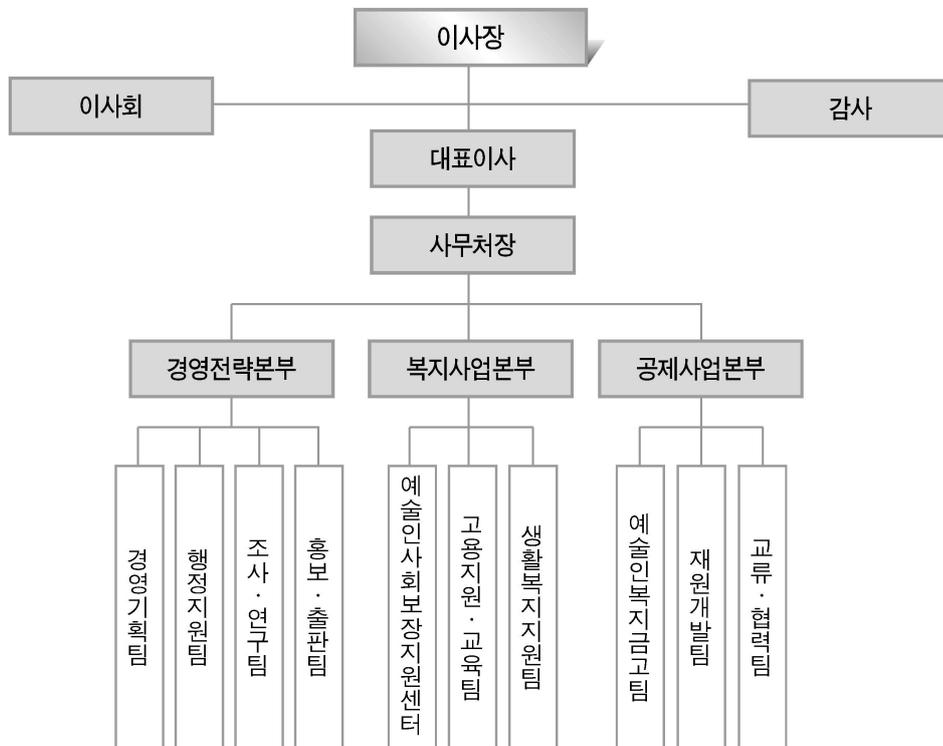
- 이상의 5~8개 사업 부서 외에 행정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지원 및 경영기획 부서를 추가하여 전체 업무 부서를 편제하면 모두 7~10개의 부서가 도출됨.
 - 행정지원팀에서는 총무, 회계, 예산 등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예술인 DB 구축 및 관리 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가 고려되어야 함.
 - 경영기획팀에서는 재단 전반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중기 운영 계획의 수립, 연간업무계획, 재정 관리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
 - 나머지 7팀과 1센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재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
- 각 부서를 팀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면, 팀단위 사업을 조정관리하는 중간관리 조직으로 2~3개의 본부를 필요로 함.
 - 10개의 부서 가운데 조사연구팀, 홍보출판팀은 행정지원팀, 경영기획팀과 결합하여 4개 팀으로 이루어진 '경영전략본부'를 구성
 - 또한 10개의 부서 가운데 사업부서에 해당하는 6개 팀을 각각 두 개의 본부로 구성
 -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고용지원팀(예술인고용지원센터), 생활복지지원팀의 3개 팀으로 '복지사업본부'와 예술인복지금고팀, 자원개발팀, 교류협력팀의 3개 팀으로 '공제사업본부'로 구성
 - 이에 따라 3본부 9팀 1센터의 기본 구성을 설정해 볼 수 있음.



[그림 4-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서 편제(3본부 9팀 1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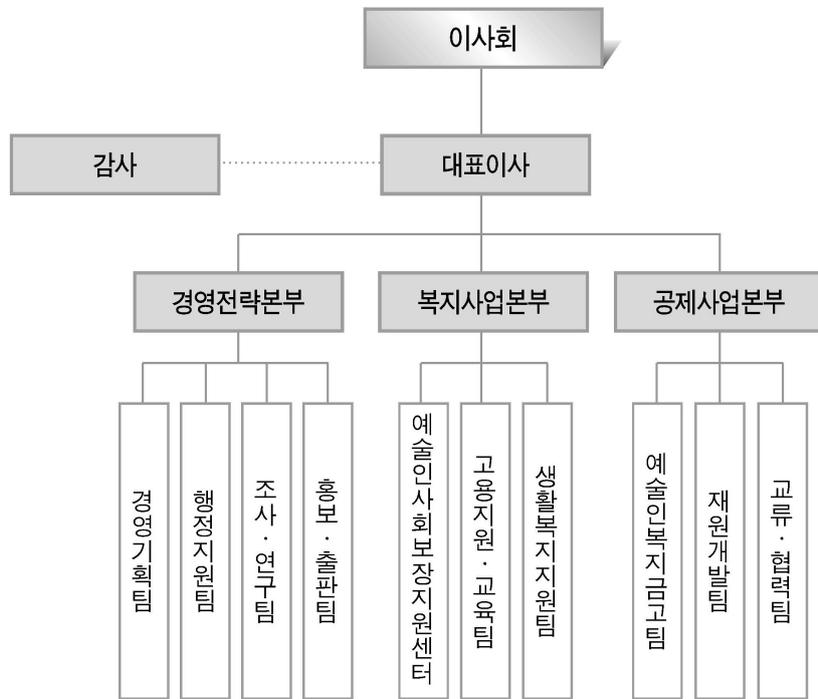
- 한편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4항에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과 별도로 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재단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법인 대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사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 개정 검토 필요
- 따라서 이사장을 대신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대표 직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임.
-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장과 별도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임이사’를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 즉, 재단 정관에 ‘대표이사’직을 설치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상임이사’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법인 등기상 대표자로서 이사회를 주관하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가 되는 것이며, 재단 업무의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사장과 대표이사(상임이사)는 모두 이사회 의 구성원이 되며, 법에 의한 재단 임원에 해당함.
- 또한 대표이사와 각 본부장 사이에 실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함.
- 3본부 9팀 1센터 규모의 조직 및 업무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처장’(또는 사무국장)을 설치하여 재단 내부 제반 실무를 총괄하게 하는 것이 필요
- 사무처장직을 설치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조직(위원장-사무처장-3본부-9부의 4단 구조)과 가장 유사한 조직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상에서 검토해 본 모든 직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A안)

- 그런데 이사장이 재단 업무의 결재 선에 놓일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되어야 함.
 - 비록 법에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상임으로 이사장을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재단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조직도상에서 이사장을 이사회로 배치하고 대표이사를 최상위에 놓을 수 있음.
- 또한 조직 규모를 슬림화하고, 내부 업무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그 기능을 분담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재단의 대표로 하고, 사무처장을 설치하지 않는 슬림화된 조직도를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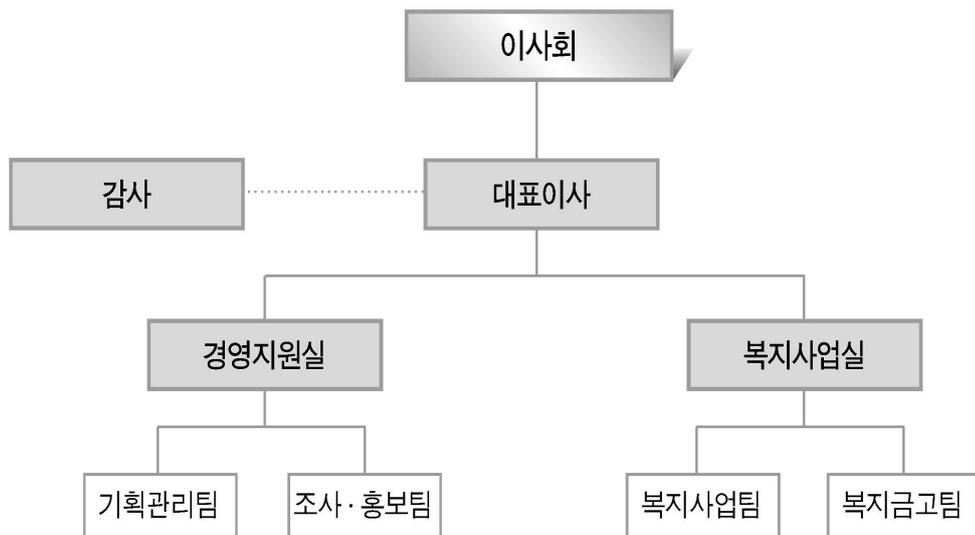


[그림 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B안)

- 여기에서 제시한 조직 구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이 활성화되어 정상 궤도에 올랐을 경우를 고려한 조직도임.
- 창립 이후 5년간은 2실 4팀 정도의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함.
 - 경영지원실에 기획관리팀과 조사·홍보팀, 복지사업실에 복지사업팀과 복지금고팀을 배치
 - 대표이사 아래 곧바로 4개의 팀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
 - 기획관리팀에서는 재단 운영 계획의 수립, 이사회 운영 지원, 제반 규정 관리, 총무 및 인사,

회계 및 경리, 정부 및 국회 대응, 예술계 교류 지원, 예술인 복지 기관 교류 사업,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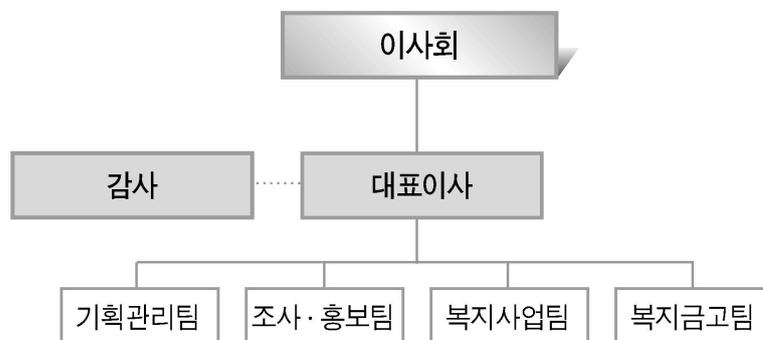
- 조사홍보팀에서는 조사 사업 기획 및 발주 관리, 연구 사업 기획 및 발주 관리, 홈페이지 관리, 웹진 발간, SNS 대응 관리,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 복지사업팀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 업무대행,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창작 준비금 지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담당
- 복지금고팀에서는 예술인 복지 금고 준비 사업, 재원 개발 사업, 공제사업 개발 및 운영 등 담당



[그림 4-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초기 운영 조직(2실 4팀)

○ 기본적인 업무 부서는 동일하게 하고 중간 관리자 조직을 두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대표이사가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됨.
- 결재 단계가 직원-팀장-대표이사의 3단계로 간소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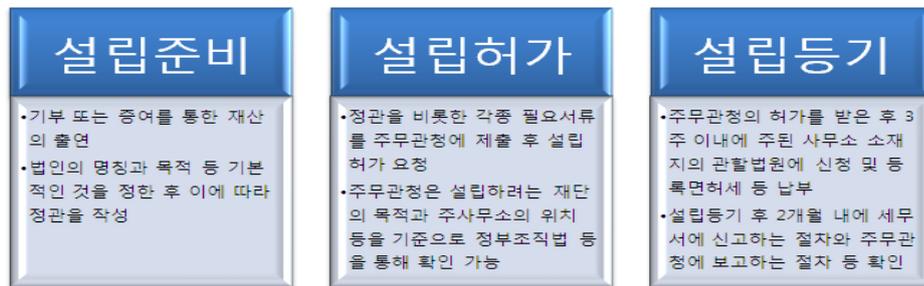


[그림 4-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초기 운영 조직(4팀)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절차 및 정관규정의 제정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절차

- 재단의 설립절차는 재산 출연, 정관 마련 등 설립 준비 단계,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단계, 그리고 법인 등기의 3단계로 이루어짐.
- 구체적인 추진 절차 : 법인 재산의 출연 → 법인의 정관을 작성,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 등 임원을 선임 → 재산 출연의 증빙자료와 정관 등 제출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설립허가 → 정관, 주무관청 허가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 → 법인등기



[그림 4-11] 재단 설립 절차

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1) 정관의 제정 및 주요 내용

(1) 정관의 의미

- 정관의 작성은 재단의 설립 행위를 구성하는 절차의 하나임.
- 정관은 재단의 법률관계를 구속하므로 그 변경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함.
- 정관의 법적 성질과 효력
 - 정관은 재단 조직의 존재방식을 규정하고, 재단 구성원을 구속하는 법규의 일종
 - 정관은 법규성을 지니므로 그 해석을 일반법령의 해석과 같이 하여, 재단의 행위가 정관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무효원인이 될 수 있음.¹⁸⁾
- 정관의 기재 사항
 - 「예술인 복지법」 제9조에 재단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18) 대주회계법인 진강민회계사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km4524>.

〈표 4-25〉 「예술인 복지법」 제9조(정관)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법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도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제시된 재단의 사업,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재단 정관에 관련 조항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됨.

(2) 재단의 목적

- 재단의 설립 목적을 정관에 반영하여 명시하여야 함.
- 「예술인 복지법」 제8조 제1항에는 재단의 목적이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으로 제시되어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이 규정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술인 복지법」 에 제시된 법 제정 목적을 환기하여 유추해 볼 수 있음.
 -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의 설립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규정해 볼 수 있음.

제○조(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재단의 명칭

- 재단의 명칭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제1항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명기되어

있음.

- 다만 영문 명칭 및 약칭에 대해서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제○조 (명칭) 이 법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약칭 KAWF)로 표기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으로 하되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다른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조 (소재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시 다른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13조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정관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장을 만들어 이사회의 구성, 소집, 의결사항, 의결방법, 의사록에 대해서 규정
- 또한 「예술인 복지법」 제13조 제4항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여야 함.
-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제○장 이사회

제○조(구성) ①재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그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조(직무대행 관련 조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출장소, 부설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1.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결한 사항

제○조(의결 방법)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제○조(의결사항) 제9호의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조(서면 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조(소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조(소집)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안건은 예외로 한다.

제○조(의결권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예술인 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이 임원에 해당
-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상임의 이사장이 실제 업무 총괄이 어려우므로 상임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직함을 부여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경우 기관장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이사회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이사장 임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공채할 수 있는 여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후 법 개정 및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임원의 임면, 임기,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반영되어야 함.
- 임원의 임면은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조항을 담아야 함.
 -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도 상임이사에 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

- 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어야 함.
- 당연직 이사를 설정할 경우 이에 관한 규정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함.
- 감사에 대한 임면도 이사에 준하도록 규정
- 임원의 임기는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됨.
 - 다만, 잔여임기의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사장, 대표이사(상임이사), 이사, 감사에 대해 각각의 직무를 명시하고, 직무대행에 관한 조항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함.
- 임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임면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직원의 임면은 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함.
- 여기에서는 임원에 관한 조항만 제시해 보기로 함.

제○장 임원

제○조(임원)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상임이사가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주어진 재단 업무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의 공식 직함을 “대표이사”로 한다.
- ③전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조(임원의 선임)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②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④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⑤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⑥비상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임원의 직무)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대표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 상황 및 결산에 대해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조(임원의 임기)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제청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조(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결위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대표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거나 결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 임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 규정에 정하는 직제 순위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기본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 필요
-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잉여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
- 회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
- 「예술인 복지법」 제14조에 재단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정관에 반영

제○장 재산 및 회계

제○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와 채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재산

②양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출연금

<p>2. 보조금 3. 기본재산의 과실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후원금 7. 기부금 8. 기타의 수입</p> <p>제○조(차입금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조(사업연도) ① 「예술인 복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제○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단은 사업연도의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비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조(결산서 제출 등) 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단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내부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제1항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제○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

(8)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p>제○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의 공고는 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

(9) 예술인복지금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재단 정관에 기본 사항의 규정이 필요함.
- 정관에는 예술인복지금고의 설치, 재원, 사업,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아야 함.
-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규정
- 예술인복지금고는 재단 설립 이후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 설치하여야 하므로 예술인복지금고 세부 설계 연구가 완료된 이후 정관의 개정 등이 있을 수 있음.

제○장 예술인복지금고

제○조(설치) 예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둔다.

제○조(재원) 금고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로부터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4. 금고의 운용 과실금
5. 기타 기부금 등

제○조(사업) 금고는 예술인 복지자금 융자사업을 행한다.

제○조(금고의 관리·운영) ①금고는 재단의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금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이하 “금고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금고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금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조(금고 운용 성과평가) ①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금고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항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금고 운용성과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관련 조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므로 별도 조항 필요 없음.

(1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서는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세부 운영 방안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2) 규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들 가운데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단 규정에는 일반적인 이사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예산회계규정, 여비규정, 위임전결규정 등과 예술인복지재단 운영과 관련 특수한 성격의 규정으로 예술인복지금고 관련 규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보화관리규정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음.
- 재단 운영 초기에는 기본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이 발전하고 조직 규모가 확대될 때 추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재단 운영 초기에 필요한 규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규정 목록(안)

규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소집 절차, 의결 방법 및 절차, 권한 위임, 수당, 의사록 등	
직제 규정	직제, 정원, 부서별 업무분장, 보직 등	
인사 규정	직원의 임용, 승진, 퇴직, 포상 및 징계, 인사위원회 운영, 교육 훈련 등	
복무 규정	근무시간, 근태관리, 출장, 휴가, 휴직 및 복직 등	
보수 규정	보수의 종류와 산정 기준, 보수 지급 방법, 성과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예산회계 규정	예산 및 자금 계획, 금전회계, 증빙, 결산 및 회계 보고, 계약, 물품, 고정자산 등	
여비 규정	여비의 종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예술인복지금고 용자 규정	금고의 용도, 용자 방법 및 절차, 용자 제한 등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위원회 규정	금고관리위원회 구성, 임기, 심의사항, 회의, 의사록, 회의비 지급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수당 지급, 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절 운영 예산 및 자원 조달 방안

1. 중장기 운영 방향 및 로드맵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중장기 운영 방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 추정을 위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재단 사업과 조직 운영의 중장기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함.
- 특히 복지 사업의 속성상 일회적 이벤트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프로그램이 위주가 되므로 일단 시작되면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초장기 운영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프랑스의 앙페르미당 제도의 경우 1936년에 시작되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50년이 지난 1986년까지 수혜 대상 예술인이 5만 명 수준이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야 10만여 명으로 늘어난 것임.
 - 독일의 경우 1982년 「예술인 사회 보험법」을 제정하여 예술인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로 30년을 맞이하고 있음.
 - 즉,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다발로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튼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가다가 중지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곧 복지 사업 분야임.
-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추진되는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은 국가가 예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독일의 경우 ‘예술인연금’, 프랑스의 경우 실업급여제도, 캐나다의 경우 예술인 단체 협상 제도화 등 특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은 전방위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4대보험)가 제도적으로는 전 국민이 수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취약계층이 많고, 특히 예술인의 경우 그 대부분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술인 복지’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한 두 개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예술인 복지의 실질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것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이 약속하고 있는 제반 예술인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예술인 복지법」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작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순차적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
 - 기본 방향 및 성격은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설정하더라도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순차적 단계적 실행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전제 위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술인 복지법」이 약속하고 있는 제반 복지 사업을 종합적인 지원 체계로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
-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라고 하는 직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형 예술인 복지 정책 모형’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세부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동시다발형 사업 추진보다는 순차적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현실 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국고)의 투입과 관련된 부분이며, 국고 지원에 한계가 주어진다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도 제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
 - 고용보험제도와 같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그 도입과정에 다른 부처의 정책 의지나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지만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예술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공제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예술인의 전반적 경제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재정 여건, 제도 여건, 예술계 내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프로그램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셋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해야 할 예술인 복지사업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재원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추진 전략과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인 대상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과 같이 국고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출범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되, 그 성과를 확인해 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일단 시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 등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 고용보험 제도의 경우 충분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설계한 후 「예술인 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함.
 - 재단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제후형 복지 프로그램은 재단 차원에서는 초기부터 적극적 추진을 해야 하나 출범 초기에는 재단의 인지도 등이 취약하므로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5년 이후는 되어야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가장 ‘예술인연금’ 등 예술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제상품의 경우 종자돈에 해당하는

수백억원대의 재정 투입과 예술인의 인식 전환, 예술인의 경제 능력 향상 등 3박자가 맞아야 본격화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예술인 복지법」에 명기된 ‘예술인복지금고’ 사업을 먼저 안착시킨 후 다른 공제 상품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재원 확보나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장기 불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제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설립 초기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조기 안착, ‘예술인복지금고’ 조기 출범 등 몇 가지 사업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

○ 넷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수가 늘어나는 부분과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모두 갖추어야 함.
- 사회보장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일단 산재보험 업무 대행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 업무담당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게 됨.
- 예술인복지금고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의 부서 수준의 새로운 업무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며,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정도에 따라 증원을 필요로 하게 됨.
- 공제 상품 관련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도 금고 수준의 조직 규모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임.

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중장기 운영 로드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말에 출범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계획을 단기와 중기로 나누어 로드맵으로 작성해 봄.
- 주요 사업의 경우 일단 시작되면 종료 시점이 없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이 장기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로드맵에서는 재단 출범 초기에 시작해야 할 사업과 중기에 시작해야 할 사업으로 나누어보는 것일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이 ‘약속’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은 일단 이 10년 동안에 출범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 출범 초기에 시행이 시작될 수 있는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이 시기에 시행이 어렵지만 늦어도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시작되어야 할 사업을 ‘중기사업’으로, 충분한 여건 성숙이 이루어져야 추진 가능한 사업을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사업’으로 분류함.
- 먼저 <표 4-24>에 제시된 바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36개 사업을 단기사업과 중기 사업, 장기사업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단계별 추진(안)

구분	단기추진사업	중기추진사업	장기추진사업
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가-1]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가-3]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가-2]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도입 [가-4]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가-5]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나. 예술인의 직업 안정·고용 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나-1]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 [나-2]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나-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3] 경력관리 지원 사업	[나-5]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다. 원로예술인의 생활안정 등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다-1]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다-2] 예술인 명예의전당 제도 도입 [다-3]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라.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라-1]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라-3]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라-2] 창작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마.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마-1] 예술인 복지 및 직업 실태 조사 [마-2]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마-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방안 연구	
바. 예술인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바-1] 소액 대출 서비스 [바-2]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바-3] 금고 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바-4]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설계 연구		
사. 예술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사-3] 의료 및 건강 지원 [사-4]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 [사-5]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사-6] 생활 부조금 지원		[사-1]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사-2] 소액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
아. 자원 개발 사업	[아-1]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의 조성 [아-2] 기부금품 모금을 통한 재원의 조성 [아-3] 제휴사업 적극 개발		
자. 홍보 및 교류 사업	[자-1] 홍보 및 출판 사업 [자-2]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지원사업 [자-3] 국내외 예술인 복지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 [자-4] 예술인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사업수 계	24개	10개	3개

- 단기사업에 배치된 24개 사업의 경우 일단 적은 규모일지라도 초기 3년 안에 시작되어야 할 사업들을 제시하여 사업 개수가 많음.
 - 처음에는 소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본격화는 것은 중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각 개별 사업마다 초기, 중기, 장기 계획의 수립이 있어야 함.
- 중기사업에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다른 사업과 다르지 않으나 재정 소요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사업에 배치함.
- 장기사업에는 여러 가지 여건 성숙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배치함.

2. 재정 소요 추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제반 사업비와 재단 운영 경상비를 추산해 보아야 함.

가. 사업비 추계

- 사업비에 있어서는 재단 운영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비와 외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함.
 - 재정 사업 중 일부를 재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비의 경우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정 소요 추계에서 일단 배제해야 함.
 - 장기 소요 추계이므로 연차적 요소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화하여 산출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2013년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산출
- 추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10년간 사업비 예산을 추계해 보면 3,836억원으로 산출됨.

〈표 4-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비 추계

사업	소요 예산 (백만원)	1년 세부 내역(만원)
[가-1]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0	산재보험 자원 활용
[가-2]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도입	0	국고 지원 프로그램
[가-3]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5,000	100×500건×10년
[가-4]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5,000	100×500건×10년
[가-5]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0	비에산 사업(인건비에 반영)
[나-1]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	5,000	100×500건×10년
[나-2]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000	100×3개월×100명×10년
[나-3] 경력관리 지원 사업	3,500	100×500건×7년
[나-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5,000	100×3개월×2,500명×10년
[나-5]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0	비에산 사업(인건비에 반영)

사업	소요 예산 (백만원)	1년 세부 내역(만원)
[다-1]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25,200	360×1,000명×7년
[다-2] 예술인 명예의전당 제도 도입	3,500	500×100명×7년
[다-3]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7,000	1,000×100건×7년
[라-1]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75,000	100×3개월×2,500명×10년
[라-2] 창작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7,000	1,000×100건×7년
[라-3]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0	비에산 사업(협력 사업)
[마-1] 예술인 복지 및 직업 실태 조사	1,000	5,000×2건×10년
[마-2]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1,000	5,000×2건×10년
[마-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방안 연구	200	10,000×2건
[바-1] 소액 대출 서비스	0	금고 자체 운영
[바-2]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0	금고 자체 운영
[바-3] 금고 재원의 조성 및 관리	30,000	기본 출연금
[바-4]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설계 연구	200	10,000×2건
[사-1]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30,000	기본 출연금
[사-2] 소액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0	공제상품 연계 운영
[사-3] 의료 및 건강 지원	33,000	(건강검진) 30×10,000명×10년 (재활치료) 300×100명×10년
[사-4]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	40,000	제휴협력사업으로 추진 (복지카드) 20×50,000명×4년
[사-5]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0	제휴협력사업으로 추진
[사-6] 생활 보조금 지원	20,000	10×20,000건×10년
[아-1]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의 조성	0	별도 추계
[아-2] 기부금품 모금을 통한 재원의 조성	1,000	10,000×10년
[아-3] 제휴사업 적극 개발	1,000	10,000×10년
[자-1] 홍보 및 출판 사업	5,000	50,000×10년
[자-2] 예술계 내부의 교류·연대 지원사업	5,000	5,000×10건×10년
[자-3] 국내외 예술인 복지 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	1,000	10,000×10년
[자-4] 예술인의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1,000	10,000×10년
계	383,600	

○ 이를 시기별 소요 계획으로 재구성하여 보면, 2013년~2015년에 1,020억원, 2016년~2018년에 910억원, 2019년~2022년에 1,9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단기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동일한 규모로 10년간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중기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동일한 규모로 7년간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장기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동일한 규모로 4년간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마-3]은 2016-2018년에 1건, 2019-2022년에 1건, 총 2건의 사업으로 가정
- [바-4]는 2013-2015년에 1건, 2019-2022년에 1건, 총 2건의 사업으로 가정
- [바-3]은 2013-2015년에 1건, [사-1]은 2019-2022년에 1건으로 가정

〈표 4-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사업비 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2015	2016-2018	2019-2022	계
단기사업	가-3	1,500	1,500	2,000	5,000
	가-4	1,500	1,500	2,000	5,000
	나-1	1,500	1,500	2,000	5,000
	나-2	900	900	1,200	3,000
	나-4	22,500	22,500	30,000	75,000
	라-1	22,500	22,500	30,000	75,000
	마-1	300	300	400	1,000
	마-2	300	300	400	1,000
	바-3	30,000	0	0	30,000
	바-4	100		100	200
	사-3	9,900	9,900	13,200	33,000
	사-6	6,000	6,000	8,000	20,000
	아-2	300	300	400	1,000
	아-3	300	300	400	1,000
	자-1	1,500	1,500	2,000	5,000
	자-2	1,500	1,500	2,000	5,000
	자-3	300	300	400	1,000
	자-4	300	300	400	1,000
중기사업	나-3	0	1,500	2,000	3,500
	다-1	0	10,800	14,400	25,200
	다-2	0	1,500	2,000	3,500
	다-3	0	3,000	4,000	7,000
	라-2	0	3,000	4,000	7,000
	마-3	0	100	100	200
장기사업	사-1	0	0	30,000	30,000
	사-4	0	0	40,000	40,000
계		101,200	91,000	191,400	383,600

○ 이를 다시 연간 소요 사업비로 환산해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337억원 정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303억원 정도로 소요되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478억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사업비 안에는 국고에 의한 정부 부처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재단 직접 사업비를 별도로 산출해 보아야 함.

- 국고 사업으로 진행될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작준비금 제도,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등을 제외
- 금고 출연금 조성, 공제상품 출연금 조성 등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일시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외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는 1,349억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135억원 정도로 추산됨.
- 시기별로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84.3억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99.3억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간 199.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표 4-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직접사업비 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2015	2016-2018	2019-2022	계	
단기사업	가-3	1,500	1,500	2,000	5,000
	가-4	1,500	1,500	2,000	5,000
	나-1	1,500	1,500	2,000	5,000
	마-1	300	300	400	1,000
	마-2	300	300	400	1,000
	바-4	100	0	100	200
	사-3	9,900	9,900	13,200	33,000
	사-6	6,000	6,000	8,000	20,000
	아-2	300	300	400	1,000
	아-3	300	300	400	1,000
	자-1	1,500	1,500	2,000	5,000
	자-2	1,500	1,500	2,000	5,000
	자-3	300	300	400	1,000
	자-4	300	300	400	1,000
중기사업	나-3	0	1,500	2,000	3,500
	라-2	0	3,000	4,000	7,000
	마-3	0	100	100	200
장기사업	사-4	0	0	40,000	40,000
계	25,300	29,800	79,800	134,900	

나. 경상비 추계

- 경상비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례를 참조하여 산출하였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약 5,000만원이고, 운영비는 4,100만원으로 나타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새로 설립하는 기관이므로 초기에 사무실 임차료, 자산취득비, DB 시스템 구축비 등의 추가 소요 발생

〈표 4-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현황(2012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	인건비	운영비
금액	26	1,322	1,070

* 인원은 2012년 7월 기준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상비중 인건비는 [그림 4-10]과 [그림 4-8]의 조직구조를 초기와 중기 조직 규모로 설정하여 추계
 - [그림 4-10]은 2018년까지 유지 가능한 모형으로 대표이사 1인 아래 4개의 팀단위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조임.
 - 한 부서에 평균 5~7명(팀장 포함)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21명에서 최대 29명까지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인건비 평균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추산해 보면, 최소 10.5억원에서 최대 14.5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그림 4-8]의 경우 2019년 이후 확대된 조직 모형으로 대표이사 1인 아래 3개의 본부, 9개의 팀단위 부서로 구성된 구조임.
 - 한 부서에 평균 5~7명(팀장 포함)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49명에서 최대 67명까지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인건비 평균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추산해 보면, 최소 24.5억원에서 최대 33.5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상 운영비도 앞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례를 적용하여 추산
 -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운영비는 최소 8.6억원에서 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2019년 이후 운영비는 최소 20.1억원에서 최대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사무실 임차료는 기본적인 사무공간 외에 심의위원회 등의 활동이 가능한 회의실,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교육실, 전산실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무공간의 면적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기준 정보를 적용하면 직원 1인당 소요 면적은 38㎡임이므로 직원 21명의 사무공간은 38㎡×21명=798㎡ 정도임.
 - 2019년 이후 최소인원 49명이 사용하게 될 사무실 면적은 1,862㎡로 늘어남.
 - 또한 재단에는 회의실과 교육실 등이 최소한 3곳 이상 필요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공간은 165㎡×3실=495㎡임.
 - 따라서 소요 면적 1,293㎡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는 3.2억원 정도로 추산됨.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빌딩 임대료’에 따른 서울지역 사무공간 임차 단가 월 20,600원/㎡(2012년 2분기 기준)을 적용하여 임차료를 산출하면, 1,293㎡×20,600원×12월=319,629,600원이 됨.
 - 2019년부터는 사무공간 확대로 2,357㎡×20,600원×12월=582,650,400원이 됨.
- 또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억원 정도 소요 예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전산시스템 외에 예술활동 증명 DB 시스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의 구축과 관련 서버를 비롯한 전산장비 구입비에 10억원 소요 예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초기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개최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회의비가 적정 수준에서 확보되어야 함.

- 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추가하여 산정
 - 회의 참석 수당 1회당 150,000원을 기준단가로 하여 심의위원 10명이 월 2회, 연간 20회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3,000만원 소요
 - 심의소위원 60명이 연간 10회 참석을 가정하였을 때 연간 9,000만원 소요
 -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연간 회의비는 1.2억원 정도 소요 예상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상비 추계를 해 보면 총 355억원 정도로 추계됨.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 3년간은 연간 27.2억원 정도 소요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22.9억원 정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5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2013년에서 2018년까지의 인건비는 [그림 4-10]의 조직 모형을 적용하되, 최소인원인 21명의 연간 인건비 10.5억원을 적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건비는 [그림 4-8]의 조직 모형을 적용하되, 최소인원인 49명의 연간 인건비 24.5억원을 적용
 - 경상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도 인건비와 조직 규모를 적용하여 산출
 - 심의위원회회의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은 초기 3년간의 50%로 적용

〈표 4-3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경상비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2015	2016-2018	2019-2022	계
인건비	3,150	3,150	9,800	16,100
운영비	2,580	2,580	8,040	13,200
사무실임차료	958	958	2,330	4,246
사무실 인테리어비	100	0	100	200
전산장비 구입비	1,000	0	0	1,000
심의위원회회의비	360	180	240	780
계	8,148	6,868	20,510	35,526

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정 소요 추계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요 재정 추계를 해 보면 총 1,704억원 정도이며, 연평균 170억원 정도로 추계됨.
- 재단 사업비는 〈표 4-30〉의 직접 사업비를 적용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초기 3년간은 연간 112억원 정도 소요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122억원 정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2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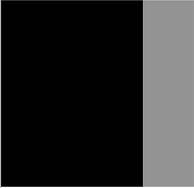
〈표 4-3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기별 재정 소요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2015	2016-2018	2019-2022	계
사업비	25,300	29,800	79,800	134,900
경상비	8,148	6,868	20,510	35,526
합계	33,448	36,668	100,310	170,426
연평균	11,149	12,223	25,008	17,043

3. 재원 조달 방안

- 〈표 4-33〉에 나타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요 예상 재정 가운데 경상비는 전액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함.
 - 그 금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27.2억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2.9억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5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표 4-32〉 참조)
- 재단 직접 사업비 또한 초기에는 국고 보조를 통하여 사업을 개발,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자체 재원의 발굴을 활용하여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재단 사업의 기본 특성이 ‘복지 사업’이므로 기본적으로 국고 등 공적 재원의 투입이 필수적임.
 - 다만 재단 출범 이후 재단에서는 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하여 자체 수입액의 목표를 정하여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 등을 전개
- 자체 재원은 기부금과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
 - 유명 예술인 등의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하여 재원 조성
 - 실연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자선 공연 등 활용한 수익금
 - 화가, 조각가, 사진가 등 시각예술인들에게는 작품을 기부 받아 보존 관리 후 적정시점에 시장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50%는 원작자에게 제공하고 남은 50%를 기부금으로 처리
 - 인세, 저작권료 등의 일부를 출판사에서 직접 전달 받는 ‘원천징수형’ 기부금 모금 개발
 -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수입 확대
 - 재단이 직접 기획한 모금 공연 및 전시회의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 예술인 애장품 기부 바자회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 장기적으로는 독지가(대기업 등)의 수익사업체를 기부 받아 운영 수익을 재단에 전입
 -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체 재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에 재기부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 조성 계획
 - 기본 출연금 : 초기 3년간 국고에서 300억 조성
 - 국고 출연금을 토대로 금고를 운영하면서 이후에는 금고 운영 수익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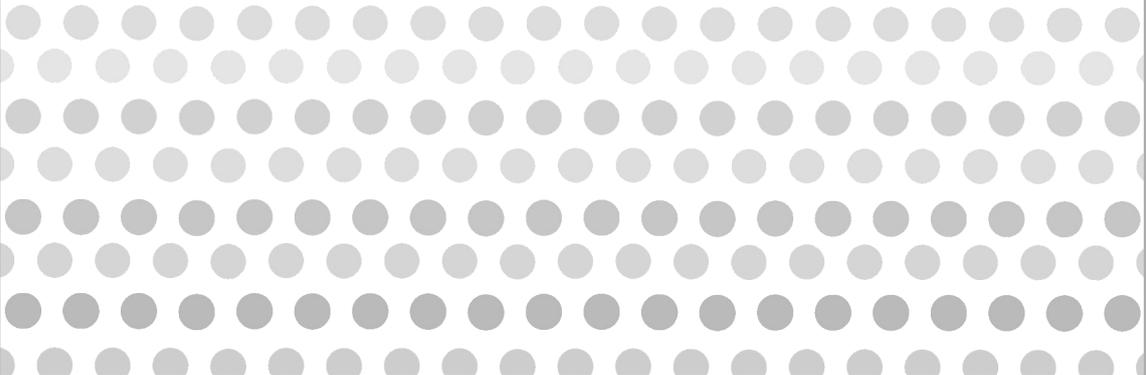
제5장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제1절 예술인 DB 시스템 개요

제2절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구성 및 운영 체계

제3절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체계

제4절 예술인 DB 시스템 추진 계획



제1절 예술인 DB 시스템 개요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술인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안)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반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시스템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온라인 신청 체계 및 예술 활동 증명이 이루어진 예술인들의 목록을 구성하는 DB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서는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지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안) 제3조에서는 그 조치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1〉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관련 3단 비교

(2012.8.10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시스템운영과 관련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타 분야에 비해 활동 방식이 다양하여 활동 경력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활동 실적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DB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예술인 복지법」 의 시행을 위해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관련 DB 시스템과 제6조 관련 예술인 경력 정보 DB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됨.
 -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DB 시스템을 통칭하여 ‘예술인 DB 시스템’이라 명명함.
- 앞의 것을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이라 하고, 뒤의 것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기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5-2〉 예술활동증명시스템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비교

구분	예술활동증명시스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시행령 제2조(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 제2조(예술활동증명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법」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시행령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행령 제4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책무)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온라인 절차 시스템 및 그 자료의 축적 관리 산재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대상 등을 확인하는 용도(예술인 복지 업무 DB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개인의 경력 증빙 및 인정을 위한 활동을 돕는 지원도구 예술인의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을 촉진 예술인의 채용과 선발, 보상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기여(예술인 개인 경력 관리 지원용도)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에 따른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증빙 자료 첨부 가능(필수사항 아님)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처리 절차에 따른 정보 등록 (제출→심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등록, 수정, 삭제 가능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산재통합도탈서비스시스템(업무 효율화 차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기금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예술자료원의 'DA-Arts' (예술활동 내역의 신뢰성 확보 차원) 	
기타 비교 항목	인적사항	◎	◎
	활동장르	◎	◎
	기관단체 취업경력	-	◎
	예술 활동 실적	◎	◎
	예술 외 활동 실적	-	◎
	예술수입 실적	◎	-
	저작권접권 등록 실적	◎	-

○ 또한 앞의 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 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운영하고, 뒤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는 이 시스템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은 모두 시스템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이 시스템에 등재된 예술인만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제반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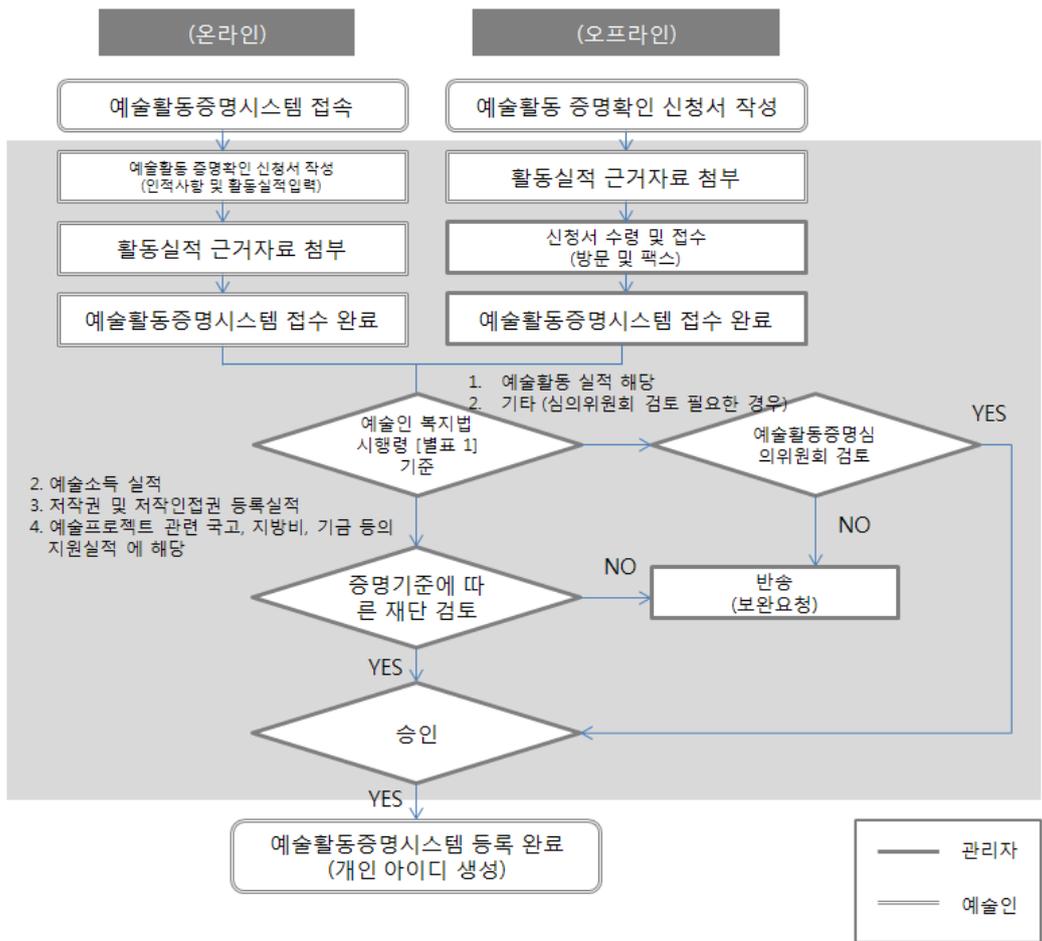
○ 반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이용을 원하는 예술인에 한하여 자율적 개방적으로 운영되

는 것이 바람직함.

- 이처럼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인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

제2절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구성 및 운영 체계

1. 예술 활동 증명의 신청 절차



[그림 5-1] 예술활동증명시스템 신청 절차 개념도

가.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 개인 아이디를 활용한 체계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1인 1 계정을 원칙으로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RP의 모듈중 하나로 구성하여 회계시스템 및 사업관리시스템 등과 연동 가능하도록 구축
 - 예술활동 증명 신청에서 접수 및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예술활동증명시스템' 페이지 이용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 제출이나 우편, 그리고 팩스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며,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재단에 관련 업무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함.

나.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온라인)

- ① 온라인의 경우, 시스템 접속 후 예술활동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종 증명자료들을 첨부한 후, '최종 접수'를 클릭하여 접수 완료
 - * '최종접수'를 거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중간저장' 기능을 사용해 작성 가능
 - * 처리기간: 신청 즉시 수분 내 처리
- ②-1. 접수된 예술인의 실적 정보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별표1>의 기준 2, 3, 4 일 경우, 재단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재단 대표의 승인을 거쳐 등록이 완료됨.
- ②-2. 접수된 예술인의 실적 정보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별표1>의 기준 1과 관련된 활동 실적을 제출한 예술인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인 후 등록을 결정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4가지 기준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함.
예) 저작권 1건, 활동실적 2건의 경우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③ ②의 과정에서 활동증명을 위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승인 및 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예술인은 다시 반송하여 보완을 요청하여 다시 심의 및 검토 후 등록

〈표 5-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별표1〉의 예술 활동 증명 기준별 승인 방법

no.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재단 확인	심의위원 심의
1	예술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	○
2	예술소득에 따른 기준	○	-
3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	-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에 따른 기준	○	-

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오프라인)

- ①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재단홈페이지에서 다운(HWP, DOC, PDF)받아 자필 혹은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 * 오프라인의 경우 작성 후 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여, 재단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한 후 ‘최종접수’ 처리됨.
- ②-1. 접수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실적 정보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별표1〉의 기준 2, 3, 4 일 경우, 재단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재단 대표의 승인(내부결재)을 거쳐 등록 완료
- ②-2. 접수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실적 정보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별표1〉의 기준 1과 관련된 활동실적을 제출한 예술인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등록을 결정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예술활동 증명 기준 4가지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함.

예) 저작권 1건, 활동실적 2건의 경우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③ ②의 과정에서 활동증명을 위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승인 및 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예술인은 다시 반송하여 보완을 요청
- ④ 등록이 완료되면 예술인의 개인아이디가 생성되고, 필요에 따라 경력을 입출력하여 활용 가능

2.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의 구성 체계

가. 기본 사항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일반 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필명/예명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현 주소		(우 : -)		

- 성명을 입력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입력해 실명인증을 하되, 예술인의 경우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기입함.
- 연락처는 즉시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기입함.
- 주소의 경우 각종 자료와 사업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 활동지를 기준으로 기입

예술활동유형	<input type="checkbox"/> 창작예술인 <input type="checkbox"/> 실연예술인 <input type="checkbox"/> 기술지원
주요활동분야	※직접 작성
예술분야	<input type="checkbox"/> 문학 <input type="checkbox"/> 미술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건축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국악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연극 <input type="checkbox"/> 영화 <input type="checkbox"/> 연예
세부장르	※직접 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분야 :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분야 중 선택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별표1>을 기준으로 활동장르별 세부 직종을 선택 작성

〈표 5-4〉 예술장르별 세부 직종 분류

장르 1	장르2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문학	문학	소설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번역가	
시각 예술	미술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사진	사진작가	
	건축	건축가	
	(공예)	공예가	
	(디자인)	디자이너	
공연 예술	연극	극작가, 무대미술가, 무대조명 디자이너, 무대음향 디자이너, 무대소품 디자이너, 무대의상 디자이너	연출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음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소리꾼
	무용	안무가	무용가
대중 예술	영화	시나리오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애니메이터
	연예	방송작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안무가	성우, 탤런트, 대중가수, 코미디언, 만담가, 대중무용수, 모델

*출처: 박영정 외,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나. 예술 활동 실적

○ 예술활동 실적에는 공연, 전시, 출판, 수입, 저작(인접)권이 있음.

〈표 5-5〉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의 예술 활동 실적 정보 입력 형식

가. 예술활동 실적				
번호	발표일사기간	발표작품제목	주최, 주관 출판사, 발행처 제작사, 방송사	신청자의 역할
1				
2				
3				
나. 예술 수입 실적				
번호	지급일시	지급내역	지급처	
1				
2				
3				
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번호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제호(제목 또는 명칭)	
1				
2				
3				
라. 예술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				
번호	발표일사기간	발표작품제목	지원기금 및 지원사업명	신청자의 역할
1				
2				
3				
마. 기타				
번호	내용			
1				
2				
3				

○ 예술수입실적(〈표 3-2〉 참고)

- 예술인의 개인 수입은 ‘예술활동 수입’과 ‘예술 관련 수입’, 그리고 ‘비예술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증빙방법으로는 국세청 소득신고는 근로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과 사업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을 해 증빙가능

○ 저작(인접, 인격)권 등록 실적

- 저작권과 관련하여 예술활동 증명과 관련 있는 것은 저작(인접, 인격)권 등록 실적이 있음.
- 저작(인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야 하며, 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가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에서 관리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표현물에 ‘창작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음. 이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음.(법 제2·4·5조)
- 그러나 아래 예시에 포함된다고 해서 예술활동 증명의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으며, 아래 저작물중 예술저작물로 인정을 받아야 함(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김).

〈표 5-6〉 저작물의 종류

①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 악곡 등,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③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연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즉, 동작의 형(型), 안무)
④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美的)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⑤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⑥ 사진저작물	●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⑧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모형은 ⑤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⑩ 편집저작물	●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저작인접물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다음 3가지가 있음.

〈표 5-7〉 저작인접물의 종류

①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설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 (가창·연주·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으로 CD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이에 수록된 콘텐츠 자체
③ 방송	●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 저작(인접, 인격)권 등록 실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하여 그 실적을 증빙 가능함.
- 예술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 실적을 입력
 - 인정되는 공공지원금에는 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예기금(지역문화재단), 국고보조금(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보조금(광역자치단체), 지자체보조금(기초자치단체), 기타국고 및 공공기관지원금, 해외기관 및 단체지원금 등이 있으며, 민간재원의 경우 향후 논의가 필요

3. 제출 자료

가. 신청 서식

-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한 양식사용[붙임 1 참고]
 - 온라인을 위한 신청서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예술활동증명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입력 및 신청가능
 - 오프라인을 위한 신청서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다운가능하며, 출력 후 작성가능

나. 증빙자료

- 본인이 입력한 경력에 대해 스스로 소명하는 자료 제출하여 증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우에 따라 사본 제출 가능
 - 온라인 시스템 내 파일 첨부 가능(HWP, DOC, JPG, BMP, PDF 등)

〈표 5-8〉 분야별 증빙 자료 예시

구분	분야별 증빙자료 예시 (이중 하나는 필수 제출)
1. 예술활동 실적자료	●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계약서, 신문·잡지 스크랩 등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참여 여부가 드러나는 자료의 원본 혹은 사본
2. 예술소득관련 자료	●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자료	●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지원실적 자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의 경우에도 일정한 형식의 소명방식 및 자료제출이 필요

※ 인정되는 공공지원금에는 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예기금(지역문화재단), 국고보조금(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보조금(광역자치단체), 지자체보조금(기초자치단체), 기타국고 및 공공기관지원금, 해외기관 및 단체지원금등이 있으며, 민간재원의 경우 향후 논의가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 공연·무대 예술인 1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히 공연·예

술 분야 예술인의 경우, 경력증빙 보관 자료 형태는 공연팸플릿이나 프로그램 북이 94.8%로 가장 높았음.

- 그리고 영상음향자료, 신문잡지기사 스크랩이 각각 38.5%, 34.5%로 그 뒤를 이었고, 공연출연계약서에 의해 증빙되는 비율은 27.6% 수준이었으며, 공연출연확인서, 세금영수증, 수당영수증 등은 10%대에 지나지 않았음.
- 따라서 대부분 제출되는 증빙자료들은 <표 5-8>의 '1. 예술활동 실적자료'로 제출되는 부분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됨.

<표 5-9>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 증빙 보관 자료의 형태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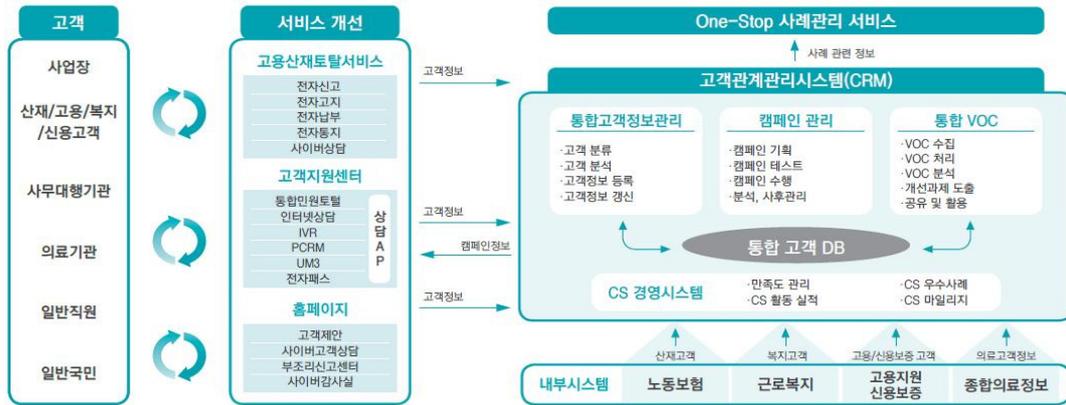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팸플릿/프로그램북	165	94.8
공연출연계약서	48	27.6
공연출연확인서	25	14.4
세금영수증	26	14.9
수당영수증	20	11.5
영상음향자료	67	38.5
신문잡지기사스크랩	60	34.5
응답사례 계	174	100.0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중복응답

4. 타시스템 연계 운영 방안

- 산재가입을 위한 근거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통합토탈서비스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통합토탈서비스시스템을 중심으로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신뢰, 그리고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 이번 예술인복지법의 핵심사업인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핵심적인 연계시스템
 -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료의 검색과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검토



*출처: 『2010 근로복지공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근로복지공단, 2010.

[그림 5-2] 근로복지공단 고객관리 통합체계

○ 국고지원 수혜실적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card, most, go, kr)」

-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 보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



[그림 5-3] 국고지원사업비 카드 특징

- 저작권 실적확인: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DB(http://db.copyright.or.kr)」
 - 저작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방대한 양의 저작권 정보를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종합적인 정보로 변환하여 능동적으로 제공하며, 권리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축
 - 구축자료에는 어문저작물(15만여 건), 음악저작물 (5만여 건), 사진저작물(7만여 건), 저작인접물(1만여 건),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정보 등 총 30여만 건의 저작권 자료가 있음.

〈표 5-10〉 저작권 정보 DB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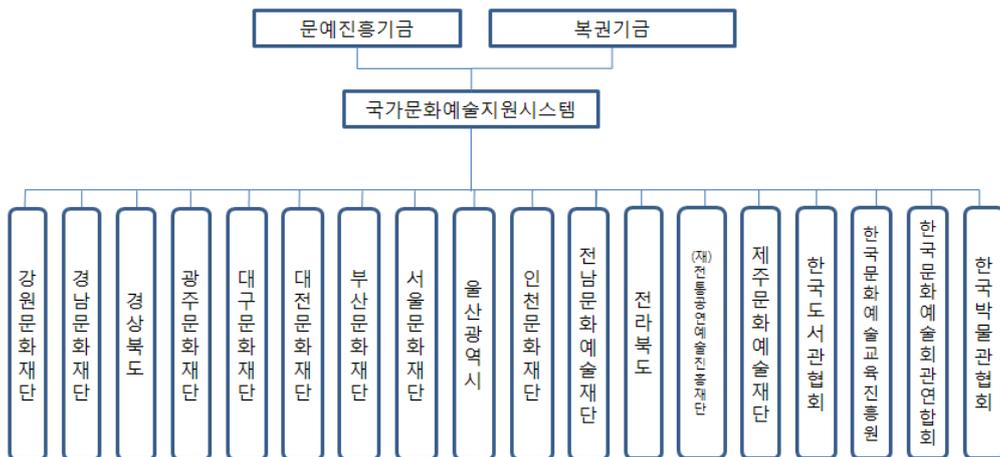
No.	구분	연계 협회 및 내용
1	어문저작물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15만여 건의 저작물
2	음악저작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5만여 건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
3	사진저작물	-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학회, 한국여성사진가협회 등의 사진 관련 단체, 그래픽카, 타임스페이스 등의 사진대리중개업체가 자료를 제공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7만여 건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
4	저작인접물	-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실연지단체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등의 저작인접권 관련 단체들이 자료를 제공한 저작인접물을 중심으로 1만여 건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
5	기타	-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다수 수록

* 출처: 저작권DB 홈페이지

- 복권·문예진흥기금수혜 실적 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artskorea.or.kr)」

[그림 5-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화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시·도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의한 운영기관이 함께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속한 정보와 편리한 지원신청 환경을 제공하며, 보조금 지원행정기관을 위해 지원행정업무의 전국 표준화와 각종 지원사업의 통계 및 공유 환경을 제공
- 2012년 8월 말 현재 운영기관은 강원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경상북도,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울산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전라북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이상 18개 시도 및 기관이 있음.
- 현재 단체 21,538개, 개인 35,531명이 등록 후 이용 중¹⁹⁾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의 수혜 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나 단체 실적의 경우, 그 실적에 대한 예술인 개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약점임.



*출처: '201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서 재구성, 2012.8 기준

[그림 5-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추진체계

5. 활용 방안

가. 산재보험 가입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전통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대체하는 제도로 형성되었는데, 최근 들어 근로자 외에도 일부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음.²⁰⁾

19) 2012.0917 시스템담당자 전병호 차장 인터뷰 중에서 발췌.

2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방안', 2012.4.b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경우(전속성), 보험료를 1/2씩 부담
 - * 레미콘기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4개 분야의 1인 사업자, 보험료를 본인 부담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 예술인의 산재보험가입 관련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예술인의 기본정보와 예술활동증명의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기본적으로 산재는 고용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 예술인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극소수에 불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 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예술인’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
 - 따라서 예술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가 가능한 자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
 - 여기서 말하는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시스템을 근거로 활용함.

나. 체계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활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술인 정보의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재단에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대상군을 한정하거나 관련 사업계획의 근거로 사용함.
 -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복되는 서류제출 및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한 서비스접근을 가능하게 함.

다. 예술인 DB로 구축하여 활용

- 예술인이 예술인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예술활동 실적과 내용을 예술인DB로 구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예술인 개인에겐 경력정보로, 문화예술계 전체에겐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정보로서 가치 있게 활용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개발 초기에는 예술인 경력 관리로 시작하여, 향후 축적된 자료를 신뢰도 높은 예술인전문DB로 개발하여 활용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9.6% 비율의 예술인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함.(본 보고서 제2장 참조)

제3절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체계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특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Artist Career Information System)’은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예술인의 경력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지게 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임.
-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예술활동증명시스템과 연계
 -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된 후, 필요할 때마다 경력을 입력 및 출력하여 관리가능
 - 중복된 자료를 줄이고, 반복되는 입력 작업을 방지
- 타 문화예술DB와 연계
 - 연구업적, 공연·전시·출판 업적 등 국공립문화예술 DB와 연계하여 풍부한 자료와 신뢰성을 확보
 - 현재 국공립 문화예술계의 국공립 및 민간에서 개발 및 운영중인 다양한 DB와 아카이브, 그리고 박물관들이 존재함.
 - 특히, 민간차원에서 운영중인 DB시스템을 통해 정부통제의 개념이 아닌 민간 시장에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
 -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목적과 기능을 파악하여,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구성되도록 설계
 - 다양한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시스템개발비용의 중복을 막고, 향후 시스템연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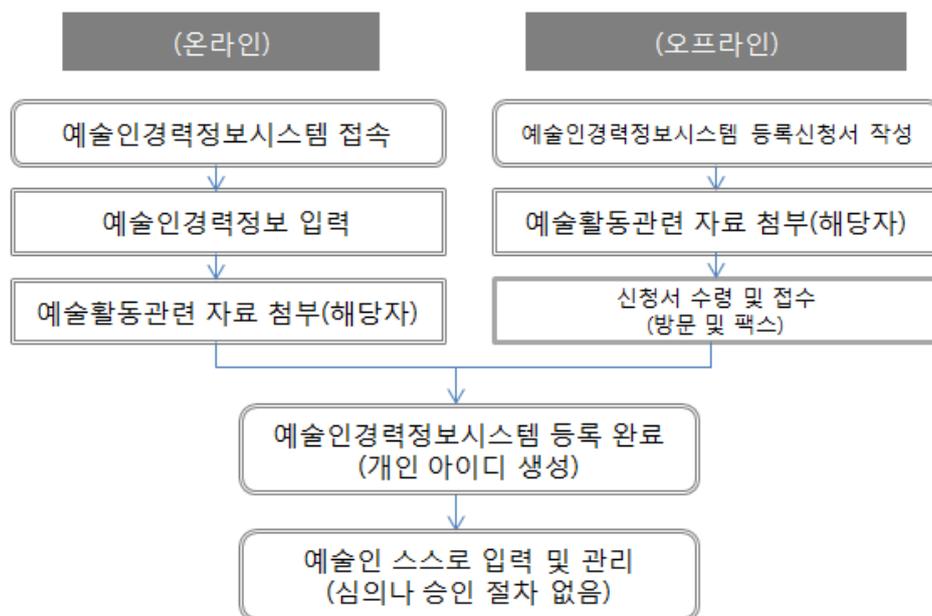
〈표 5-11〉 국립기관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DB

DB명	설립년도
국립예술자료원(구 아르코예술자료관)	2010(구 아르코예술자료관은 1979년 설립)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2010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199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2007

〈표 5-12〉 공립기관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DB

DB명	운영주체	설립년도
아츠넷	서울문화재단	2009
문화예술DB	인천문화재단	
대전문화아카이브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인DB	부천문화재단	2004
영화아카이브	한국영상출처	
KCDF 아카이브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09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프로그램 DB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추진 체계



[그림 5-6]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절차 개념도

3. 구성 체계

가. 인적사항 및 활동장르와 직종

-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된 실적(개인 아이디)이 있는 경우,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계
 - 성명(예명과 필명 포함)과 이메일을 기본으로 한 인적 사항을 입력
 -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새로이 입력

나. 예술 활동 실적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는 공연, 전시, 출판의 경우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입력
 - 공연, 전시, 출판 등과 같은 활동실적에 대하여 장르로 검색하여 입력
 - 등록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그리고 등록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원·공연장·출판사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여 입력(민간사업체도 고려)
 - 예술활동 시작일과 마감일, 일자를 입력하면 원하는 시간기준으로 환산 가능

장르 명		검색
↓		
기관/단체/출판사 명		검색
↓		
작품/공연/전시 명		검색
↓		
작품/공연/전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력
작품/공연/전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력
작품/공연/전시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력
↓		
총 경력기간(자동계산)	년 월 일	입력
↓		
세부업무내역		입력

- 입력한 예술 실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첨부 가능
 - 영상이나 사진, 글 등 입력한 예술경력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다. 교육훈련경력

- 교육훈련경력이란 정규교육과정인 학력이 아닌,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경력을 입력

라. 기관단체 취업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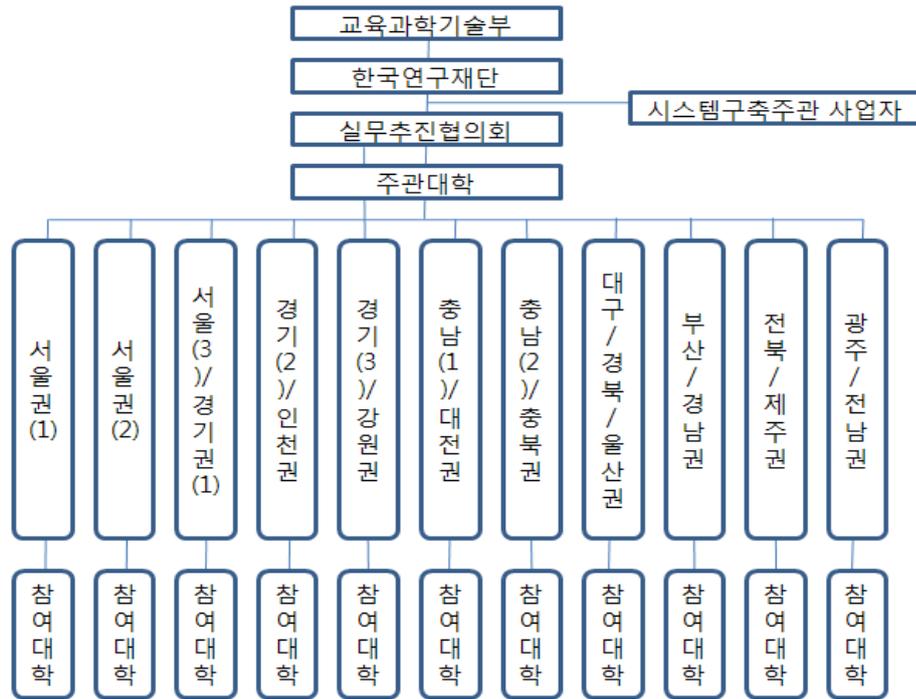
- 문화예술관련 단체 취업경력에 대한 것으로 정규직이아니더라도 입력가능
 - 행정이나 교육과 같은 활동도 관련 기관단체 취업경력으로 입력

마. 예술 외 활동 경력

- 예술장르로 정의되기 어려운 활동경력이나 국내외봉사나 연수와 같은 활동들을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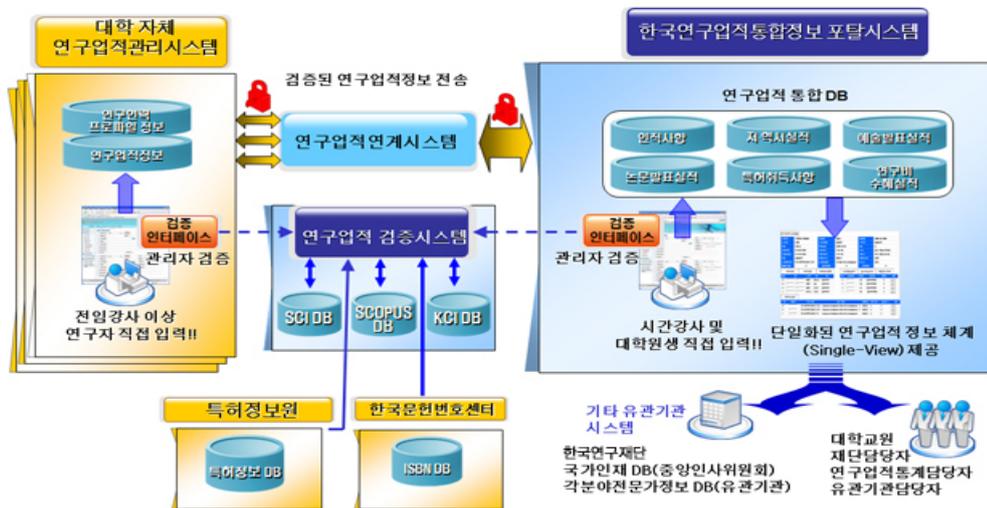
4. 타시스템 연계 운영 방안

- 학술연구 및 예체능계 교수강사 실적 :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www.kri.go.kr)」
 - 그동안 각 대학별로 관리되었던 연구업적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예산과 정보의 중복투자를 막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업적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함.
 - 또한 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논문정보(KCI DB), Thomson 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우수학술지 논문정보 (SCI/SCIE/SSCI/A&HCI DB), Elsevier 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우수학술지 논문정보(SCOPUS DB),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연계를 통한 연구업적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된 연구업적을 기반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 이상의 학력과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예술인의 경력이 연구업적인 경우가 드물어 직접 연계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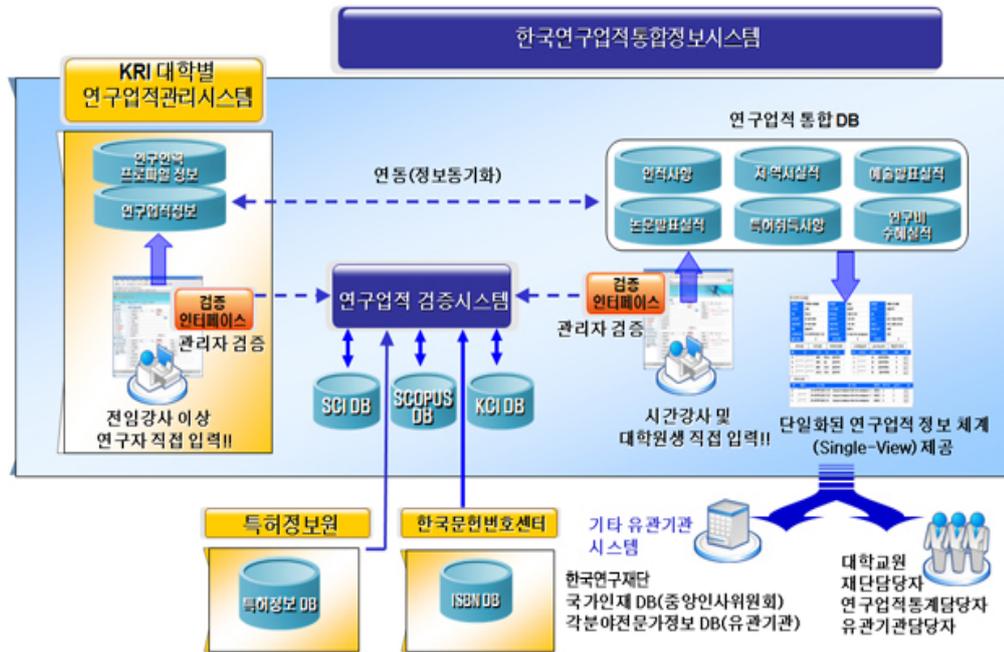
*출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 홈페이지

[그림 5-7]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출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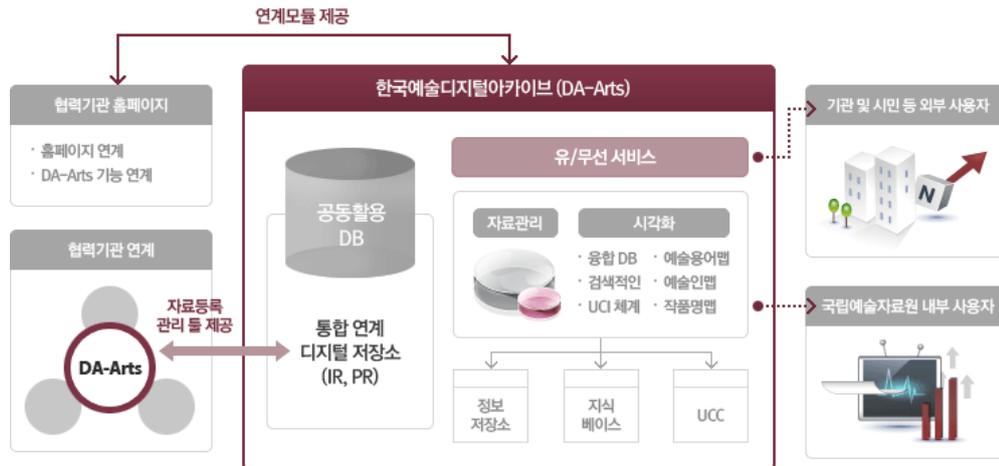
[그림 5-8] 대학에 자체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출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 홈페이지

[그림 5-9] 대학에 자체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 공연 및 전시 실적 : 국립예술자료원 「다이츠(DA-ARTs, <http://da.knaa.or.kr/>)」
 - DA-ARTs는 국립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로서 2011년에 구축하여 시스템과 데이터를 시범서비스하고 있음.
 -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DB시스템을 제공하여 예술관련 기록 자료의 수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음.
 - 2012년 8월 말 현재 13개의 예술단체와 125건의 공연정보, 그리고 7,615명의 예술인이 등록되어 있음.
 - DA-ARTs의 DB는 아카이브자료로서 신뢰도가 높아 외부에서 활용하기 좋음.
 - 다만, 초반에 공연계 위주로 자료가 수집된다는 점과 자료 축적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단점임.
 - 향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DA-ARTs와 협력기관이자 외부 사용자로서 DA-ARTs의 자료 검색 및 공유를 통해 연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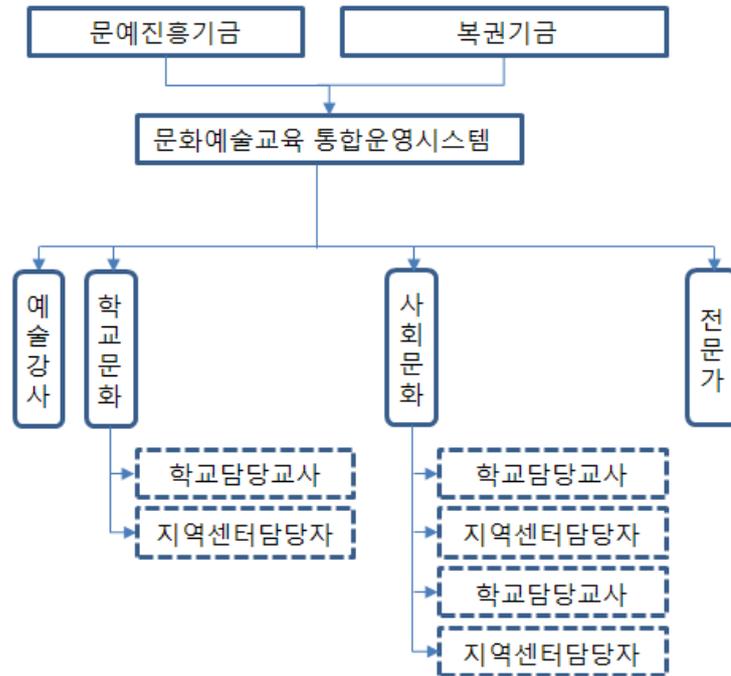
*출처: 다아트(DA-ARTs, <http://da.knaa.or.kr/>) 홈페이지.

[그림 5-10] DA-ARTs 목표 시스템 구성도

- 예술교육 관련 경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프로그램 DB(<http://db.arte.or.kr/>)」, 「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http://ums.arte.or.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통합운영시스템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운영시스템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예술 강사와 관련하여 접수, 선정, 배치, 연수, 교육활동관리, 평가, 강사료지급, 민원처리, 발급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온라인화 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림 5-11] 2012 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 이용 현황



*출처: 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 홈페이지(<http://ums.arte.or.kr/action>)에서 재구성

[그림 5-12] 문화예술교육 통합운영시스템 추진체계

-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프로그램 DB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전국 문화예술교육 단체 정보 DB로, 지역별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을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각 단체들의 연혁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도 파악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 가입한 후, 단체 정보를 기입하고, 담당자 승인 후 이용하게 되는 방식임.

5. 활용 방안

가. 예술인 구인·구직활동에 활용

- 2008년 취업통계분석자료집을 토대로 재정리한 ‘문화예술분야 인력 취업경로’(〈표 5-13〉)를 비교해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체에 비해 개별취업과 지인소개를 통한 취업률이 2~3배 이상 높음.
 -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구인구직과정에 비해 예술계는 온라인으로 취업하기 어려움.
 - 예술인경력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이력사항을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하고, 클릭한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표 5-13〉 문화예술분야 인력 취업경로 비교

(단위: %, 명)

분야	공개채용	개별취업	지인소개	고용관련 센터	고용지원 기관	자원봉사 / 동아리	자영	기타	전체 사례 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전체	24.7	16.5	7.1	24.7	2.1	-	5.0	17.3	387,487
문화예술분야 인력	34.1	31.1	22.9	2.3	0.9	2.4	-	6.3	1,987
비교	1순위		문화 예술 ↑	문화 예술 ↓					

* [2008취업통계분석자료집]의 취업경로 항목 중 유사한 항목은 [2009성별문화인력통계] 기준으로 재정리하였으며, 비조사 항목은 '-'로 표시함. (인터넷, 신문방송 → 개별취업, 학교 → 고용관련 센터, 취업지원기관 → 고용지원기관)

*출처: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김효정, 2011)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정보이용자는 예술인 및 예술인을 고용하려는 민간사업체, 그리고 예술인에게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하려는 국공립 민간사업체 및 기관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된 기관 아이디를 통하여 예술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수준까지 정보이용이 가능
 - 그 외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활동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들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기관들임.
- 따라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인 구직활동경로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활용

나. 문화예술계 인적 네트워크 구성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의 문화예술계 인적네트워크를 구성
 - 기존의 문화예술계는 학연과 지연, 협회 등을 통한 수직형 인적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에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학연이나 지연, 협회 등에 얽매이지 않은 수평적 구조의 인적네트워크를 표방하여 보다 자유롭고 넓어진 문화예술계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기여

다. 경력 관리 컨설팅 자료로 활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통해 예술인 개인에 대한 경력 관리 컨설팅 지원시 자료로 활용

라. 경력 증빙 자료로 활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객관적인 경력 증빙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 입력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인 개인의 전체 활동 실적 및 경력을 ‘이력서’ 형식으로 산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상 예술 활동 실적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해 주는 제도화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

〈표 5-14〉 공연무대 예술인 대상 경력 증빙 용도

(단위: 건, %)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취업	35	21.5
기관단체취업	39	23.9
작품출연	50	30.7
지원신청*	73	44.8
기타	49	30.1
응답사례 계	1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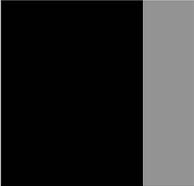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 49.

제4절 예술인 DB 시스템 추진 계획

-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조기에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
 - 재단 홈페이지 구축과 동시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구축
 - 재단 업무시스템과 연계성을 높여 자료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
- 반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ISP 수립 등 중장기적 운영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선구축하여 재단사업운영에 이용하고, 예술인경력시스템은 그 이후 오픈하여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
- DB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을 상정해야 함.
- 예술인 DB 구축 사업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5〉 예술인 DB 시스템 구축 로드맵(안)

구분	기간	구축기	성장기	고도화기
		2012-2014	2015-2018	2019-2022
홈페이지 구축	3개월			
DB서버 구축	12개월			
재단 홍보 및 가입 독려	6개월			
예술활동증명시스템 구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계속			
관련 DB와 연동	계속			
시스템 인프라 개선, 보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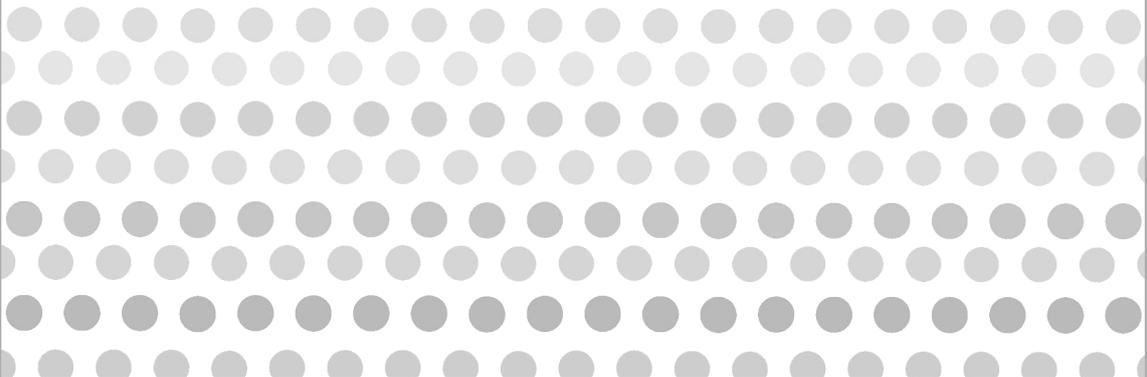


제6장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1절 「예술인 복지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분석

제2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제3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절 「예술인 복지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분석

1.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경과 및 내용 체계

가.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 2009년 10월 정병국 의원과 서갑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①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를 통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편입 방안, ② 예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술인 복지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예술인 복지법제화가 공식화되었음.
- 2009년 10월 정부 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2010년 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부정적 의견 등으로 인해 2010년에는 법 제정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음.²¹⁾
- 그러한 상황에서 2011년 초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법 제정에 급진전이 이루어짐.
 - 앞서 발의된 두 개의 법안 외에 2011년에는 전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과 최종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모두 네 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2011년 10월 28일 네 개의 법안 내용을 수정·대체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1월 17일자로 공포되었음.²²⁾
- 이 법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필요로 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²³⁾

나.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법 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된 「예술인

21) 이 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법체계 문제, 재정 문제 등을 사유로 한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22) ‘예술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은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법」(1992)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사례에 해당한다.

2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속 조치로 준비중인 정책 내용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예술분야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 방안, 예술인 경력 증명 방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등이다.

복지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를 규정(법 제4조), ②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정(법 제7조), ③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법 제8조~제15조), ④ 예술
 영역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규정(법 제5조), ⑤ 예술인의 경력 증명 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법 제6조) 등임.
- 이 법의 제정으로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2. 「예술인 복지법」의 하위 법령 위임 조항 분석

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위임 조항

-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은 ① 예술인 정의(제2
 조)와 ② 사업계획서 제출(제14조), ③과태료(제17조)의 세 조항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그 세부 기준에 대해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법에서는 “예술인”에 대해 ①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한다는 점, ②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다는 점,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④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전제 위에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하는 세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제17조에서는 제1항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방식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위임 조항

-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① 표준계약서의 보급(제5조)이며, 그 외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에서는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서는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영역과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대한 위임 규정은 없음.
- 다른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나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에의 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6조의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기타 행정 조치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다른 법령에의 위임 조항

- 「예술인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서는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세부 사항을 다른 법에 위임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고용노동부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예술인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 대상으로 설정함.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임의 가입) 적용 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예술인’을 추가
 -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면서 단가중복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용자 특정 없이 예술인 스스로가 선택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또한 사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음.
 - 다만 대상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가운데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표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생략) 1.~ 2. (생략) 가.~라. (생략) <신 설>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사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 보험가입 대상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퀵서비스기사(비전속, 2012.5.1)

○ 산재보험 적용방법 : 임의가입

○ 보험료 부담 :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 부과기준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 적용

○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

제2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14조, 제17조에서 위임한 시행 방안, 그 외에 법 제6조의 시행 방안을 추가하여 마련하였음.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은 전체 6조와 별표로 구성되어 있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 활동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명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 ② 재단은 제1항제5호의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예술인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리자는 예술인 경력정보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책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제3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관련한 위임 조항(시행규칙 제3조)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예술 활동의 증명 기준’에 관한 사항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9.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10.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라·의무의 승계금지
11.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 기준(제2조 관련)

1.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준
문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잔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잔건축 작품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잔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잔건축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잔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출판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p>4.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p> <p>5.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무용	<p>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p> <p>2.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p> <p>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연극	<p>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p> <p>2.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p> <p>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p> <p>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영화	<p>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p> <p>2.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p> <p>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p> <p>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연예	<p>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였거나 1편 이상 감독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p> <p>2.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p> <p>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기술지원	<p>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전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p>

2. 예술소득에 따른 기준

기 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간 120만원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직업활동 수입의 50%를 넘는 자

비고:

※ 예술 활동 수입의 종류 :

1. 각종 활동 수당 및 예술품 판매대금 : 원고료, 인세, 작곡료, 연출수당, 출연수당, 지휘수당,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미술품 판매대금, 녹음공연 연주료 등(강연료 등은 제외)
2. 임금 :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면서 받은 임금 또는 용역 비용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구 분	기 준
저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저작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저작자 : 소설가, 시인, 평론가,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화가, 조각가, 만화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실연자'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실연자 : 배우, 연주가, 성악가, 무용수, 가수 등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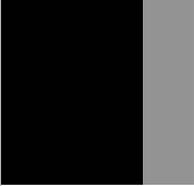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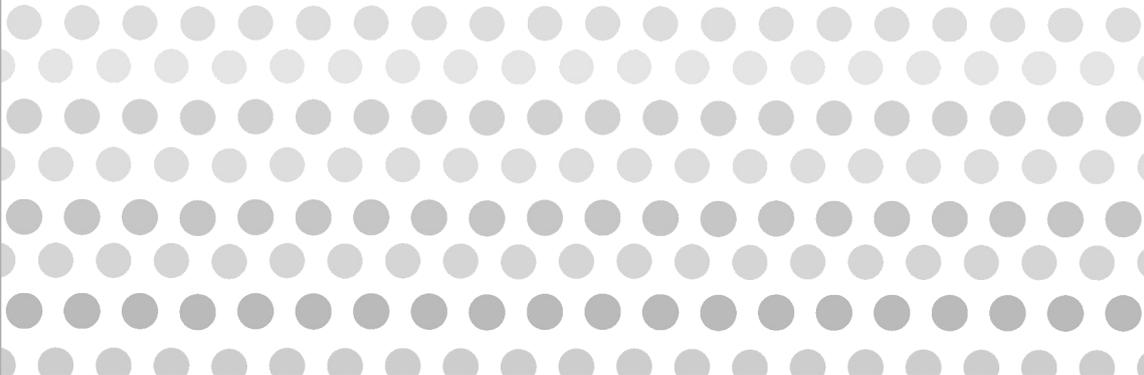
구분	기 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고: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



제7장 결론 및 전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9월 26일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 법제처 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후 10월 중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오는 11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 자체로서 예술인 복지정책의 종착점이 아닌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체계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계의 참여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예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는 조건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불투명한 것이 사실임.
- 어떻게 보면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예술인 복지법」을 발판 삼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새롭게 끌어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음. 법의 제정으로 일단 예술인 복지 정책 법제화의 방향이 확고하게 설정된 만큼, 향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기만 하면 성과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기본 틀거리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전반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일정 기간 후에는 상당히 안정된 예술인 복지 제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임.
 -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원이라 할 수 있음.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예술인 복지법」의 실질적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계의 협력을 얻어 기부금과 수익사업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임.
 -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장은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재원의 투입을 필요로 함.
 - 정부는 물론이지만 국회에서도 예산 배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예술인 관련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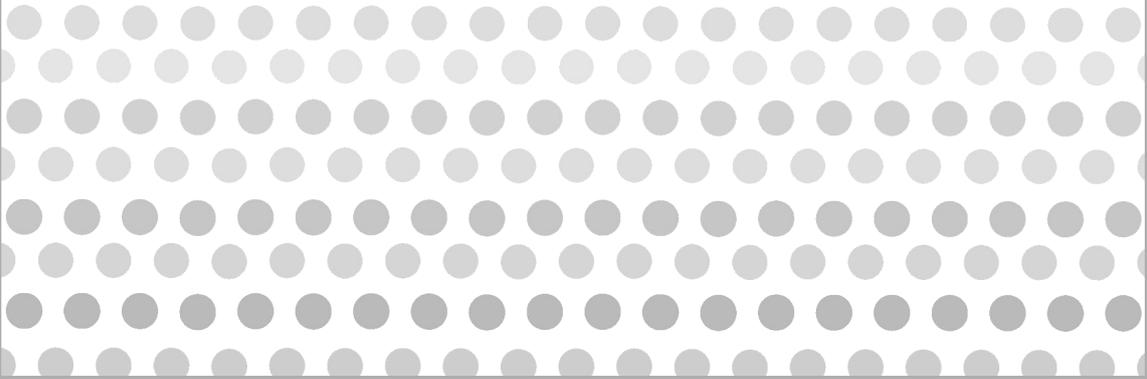
- 인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가능하면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예술계의 의식 변화는 물론 관련 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셋째,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에서 의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술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된 연금 프로그램 도입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예술인공제회’ 설립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가칭 ‘예술인연금’(적립형 상품)을 설계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 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문길,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가을호, 2008.
- 김태완, 원종욱, 이태진, 박영정, 김문길, 전지현,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 박영정, 「예술인 복지실태 및 복지환경 개선 방안」, 계간 『사회복지』, 2011.봄.
- 박영정, 공혜영,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 수요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박영정, 백기영, 심규범, 이승엽, 최진욱, 류유선,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박영정, 우주희, 양효석, 이승엽,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박영정,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이규석, 이승엽, 박영정, 오혜경, 임정기,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관광부, 2007.
- 정갑영, 조현성, 김영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조성한, 김용하, 석재은, 류건식, 신종각, 김진수, 박영정,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방안 연구-예술인 공제사업 모델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부록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관

제정 2012.11.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약칭 KAWF)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시 다른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예술인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재단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재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상임이사가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주어진 재단 업무 총괄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의 공식 직함을 “대표이사”로 한다.

③전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비상임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표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못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 상황 및 결산에 대해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예술인 복지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제청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신분 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 경우
5.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6.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7. 기타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직무청령에 관한 계약 또는 서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대표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 임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의 직제 규정에 정하는 직제 순위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4조(구성) ①재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그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2조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기본재산의 편입, 변경,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출장소, 부설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1.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결한 사항

제17조(의결 방법)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제16조 제9호의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서면 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안건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의결권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 술 인 금 고

제21조(설치) 예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에 예술인복지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재원) 금고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로부터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4. 금고의 운용 과실금
5. 기타 기부금 등

제23조(사업) 금고는 예술인 복지자금 융자사업을 행한다.

제24조(금고의 관리·운용) ①금고는 재단의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금고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이하 “금고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금고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금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금고 운용 성과평가) ①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금고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금고 운용성과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와 채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재산

②양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출연금

2. 보조금

3. 기본재산의 과실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후원금

7. 기부금

8. 기타의 수입

제29조(차입금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사업연도) ① 「예술인 복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자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은 사업연도의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비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단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내부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제1항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6 장 조직 및 직원

제36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직원 등) ①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재단 직원의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재단과 직원 사이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대표이사는 필요한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또는 임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8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 등에 관한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광고)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의 광고는 일간신문,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 ①직제, 인사, 보수, 복무, 이사회 운영 및 기타 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 규칙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3조(저작권의 귀속) 재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재단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4조(경영공시) 재단은 일반현황, 사업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유지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법인의 해산) ①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출연한다.

제47조(청산인) 재단을 해산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산인을 지정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정관 제8조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위	성명	주소	날인

제4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 등기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는 설립 당해 연도 초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되, 예술인복지법추진준비단의 사업계획을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1〉

기본 재산 목록

구 분	계 좌 명	종 별	규 모	금 액 (원)
기본재산		예금	-	
재 산 총 계				

2. 「예술인복지법」 시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예술인복지법」 시행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2012년 11월 시행 예정인 ‘예술인복지법’의 시행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본 조사지 기재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 : 02-○○○○-○○○○)

연구보조원 ○○○ (☎ : 02-○○○○-○○○○)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2. 다음은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와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열거해 본 것입니다. 각 과제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분에 체크 하십시오)

내 용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① 낮은 보수 수준					
② 과도한 노동시간(작업시간)					
③ 작업 중 상해 위험					
④ 고용(취업) 상태 불안정					
⑤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					
⑥ 적절한 경력 불인정					
⑦ 노후 대비 부족					
⑧ 실업 후 생계 곤란					
⑨ 은퇴 후 생계 곤란					
⑩ 주택, 자녀교육 등 생활 곤란					

문3. 다음은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와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열거해 본 것입니다. 각 과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부분에 체크 하십시오)

내 용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중간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1	2	3	4	5
① 낮은 보수 수준					
② 과도한 노동시간(작업시간)					
③ 작업 중 상해 위험					
④ 고용(취업) 상태 불안정					
⑤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					
⑥ 적절한 경력 불인정					
⑦ 노후 대비 부족					
⑧ 실업 후 생계 곤란					
⑨ 은퇴 후 생계 곤란					
⑩ 주택, 자녀교육 등 생활 곤란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내용 및 시행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도입, 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문4’ 부터는 첨부된 「예술인 복지법」 전문을 읽어보신 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4. 선생님께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① 이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 ③ 「예술인 복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대략적이거나 알고 있다.
- ④ 「예술인 복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문5. 선생님께서는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6. 선생님께서는 향후 3~5년 사이에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삭제, 추가, 수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개정이 필요한 조항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체크) ()

- ① 예술인 정의(범위, 기준 등) 조항(법 제2조)
-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법 제3조)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법 제4조)
- ④ 예술인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법 제5조)
- ⑤ 예술인 경력 증명 관련 조항(법 제6조)
- ⑥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관련 조항(법 제7조)
- ⑦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조직 운영 관련 조항(법 제8-15조)
- ⑧ 기타()

문7. 2012년 하반기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제시된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1	2	3	4	5
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②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③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④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⑤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⑥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⑦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⑧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문8. 2012년 하반기에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제시된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시급하지 않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	중간	약간 시급함	매우 시급함
	1	2	3	4	5
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②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③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④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⑤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⑥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⑦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⑧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문9. 위의 문7과 문8에 제시된 사업 외에 추가하였으면 하는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문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이 우리나라 예술인의 복지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① 전혀 기대하지 않음 ② 거의 기대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약간 기대 ⑤ 매우 기대

문11. 「예술인 복지법」 제6조 ‘예술인 경력 증명’ 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활동 및 경력 관련 DB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예술인의 활동 및 경력 관련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인 복지 제도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을 위해 DB 구축 및 활용은 필요하지만, 입력 정보 항목은 최소화해야 한다.
③ 전체 예술인을 하나의 DB로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별로 DB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든 예술인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⑤ 기타 ()

문15. 선생님께서는 예술인 복지 관련 재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

체크	내 용
	① 국고나 지방비 등 공적 자원
	② 예술인 및 예술단체/기업 스스로의 기부로 만들어진 자원
	③ 기업 등 민간부문의 기부로 만들어진 자원
	④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자원
	⑤ 기타 ()

문16. 앞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SQ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2. 선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SQ3. 선생님의 현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4. 선생님께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문학 ② 미술 ③ 사진 ④ 건축 ⑤ 연극 ⑥ 무용
- ⑦ 음악(국악) ⑧ 음악(양악) ⑨ 영화 ⑩ 대중예술(연예) ⑪ 기타 ()

SQ5. 선생님께서 주로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직업의 유형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 ① 창작예술가(작가, 시인, 화가, 조각가, 작곡가, 안무가, 비평가 등)
- ② 실연예술가(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수, 연출가, 지휘자, 감독 등)
- ③ 기획스태프(공연기획가, 전시기획가,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등)
- ④ 기술스태프(조명, 음향, 무대기계, 분장, 의상 등)
- ⑤ 관리 및 경영자
- ⑥ 교육자(교사, 강사, 교수)
- ⑦ 기타()

SQ6. 선생님께서는 ‘직업 예술가’로서 예술계 ‘입문’ 이후 현재까지 종사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년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진

연구책임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소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연구보조	민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김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임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발행인	최광식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Tel : (02)3704-9114, Fax : (02)3704-9154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일	2012년 9월
인쇄처	크리홍보주식회사
